

제410회국회  
(정기회)

##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조세소위원회)

제 4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3년11월22일(수)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01)
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00)
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18)
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86)
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02)
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77)
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12)
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36)
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86)
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71)
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14)
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63)
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13)
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62)
1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54)
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79)
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33)
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55)
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32)
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16)
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84)
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35)
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43)
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70)
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64)
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04)
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07)
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06)
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59)
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73)
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44)
3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85)
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01)

3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08)
3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12)
3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14)
3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24)
3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29)
3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01)
4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49)
4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40)
4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44)
4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51)
4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33)
4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58)
4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93)
4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22)
4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45)
4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01)
5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14)
5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76)
5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69)
5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28)
5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26)
5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62)
5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50)
5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93)
5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53)
5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19)
6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81)
6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21)
6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78)
6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79)
6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10)
6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53)
6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44)
6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35)
6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73)
6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18)
7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25)
7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65)
7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55)
7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41)
7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744)
7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16)
7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84)
7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86)

7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82)
7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71)
8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23)
8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62)
8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69)
8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80)
8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57)
8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04)
8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52)
8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19)
88.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85)
89.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49)
90.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19)
9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17)
92.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55)
93.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05)
94.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70)
95.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58)
96.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99)
97.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49)
98.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54)
99.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98)
100.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44)
1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197)
1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679)
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25)
1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669)
1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92)
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14)
1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76)
1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08)
1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89)
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10)
1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99)
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48)
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46)
1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92)
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19)
1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92)
1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97)
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51)
1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45)
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48)
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25)

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25)
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30)
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66)
1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67)
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95)
1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02)
1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05)
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74)
1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78)
1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59)
1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98)
1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04)
1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11)
1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27)
1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35)
1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20)
1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44)
1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40)
1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67)
1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91)
1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53)
1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13)
1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67)
1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40)
1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45)
1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50)
1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91)
1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07)
1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35)
1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37)
1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56)
1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61)
1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68)
1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89)
1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98)
1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30)
1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85)
1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92)
1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40)
1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45)
1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51)
1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69)
1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71)
1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83)

1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33)
1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39)
1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15)
1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66)
1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41)
1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69)
1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61)
1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69)
1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44)
1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73)
1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94)
1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98)
1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08)
1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39)
1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44)
1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59)
1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74)
1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00)
1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52)
1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61)
1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87)
1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90)
1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96)
1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22)
1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66)
1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92)
1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93)
1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04)
1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20)
1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74)
1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80)
1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93)
1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26)
1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01)
2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09)
2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47)
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53)
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64)
2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22)
2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24)
2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71)
2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70)
2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77)
2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23)

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37)
2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56)
2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64)
2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82)
2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85)
2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10)
2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12)
2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86)
2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88)
2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06)
2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43)
2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68)
2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75)
2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82)
2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03)
2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18)
2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31)
2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02)
2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38)
2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60)
2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58)
2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70)
2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73)
2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94)
2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12)
2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44)
2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60)
2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11)
2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22)
2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61)
2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65)
2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86)
2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97)
2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71)
2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63)
2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75)
2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60)
2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19)
2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21)
2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23)
2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43)
2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49)
2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67)
2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82)

2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91)
2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75)
2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20)
2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43)
2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71)
2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05)
2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96)
2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25)
2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32)
2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36)
2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63)
2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88)
2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90)
2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91)
2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98)
2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09)
2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14)
2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20)
2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32)
2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33)
2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35)
2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40)
2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43)
2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47)
2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51)
2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92)
2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98)
2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16)
2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26)
2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32)
28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48)
28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03)
28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44)
28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88)
28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92)
28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50)
29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85)
29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79)
29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29)
29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41)
29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49)
29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42)
296.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91)
297.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77)

298.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80)  
 299.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67)  
 300.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28)  
 301.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84)  
 30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45)  
 30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39)  
 30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2348)  
 30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06)  
 30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34)  
 30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32)  
 30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36)  
 30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71)  
 31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48)  
 31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88)  
 31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43)  
 31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04)  
 31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95)  
 31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02)  
 31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47)  
 31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51)  
 318. 국가관세정보화진흥원법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71)  
 31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60)  
 32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87)  
 32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60)  
 32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22)  
 32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29)  
 32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68)  
 325.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59)  
 326. 조세법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66)  
 327.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55)

### 상정된 안건

1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197) ..... 13  
 1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679) ..... 13  
 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25) ..... 13  
 1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669) ..... 13  
 1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92) ..... 13  
 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14) ..... 13  
 1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76) ..... 13  
 1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08) ..... 13  
 1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89) ..... 13  
 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10) ..... 13

|                                                       |    |
|-------------------------------------------------------|----|
| 1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99) ..... | 13 |
| 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48) ..... | 13 |
| 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46) ..... | 13 |
| 1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92) ..... | 13 |
| 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19) ..... | 13 |
| 1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92) ..... | 13 |
| 1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97) ..... | 13 |
| 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51) ..... | 13 |
| 1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45) ..... | 13 |
| 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48) ..... | 13 |
| 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25) ..... | 13 |
| 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25) ..... | 13 |
| 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30) ..... | 13 |
| 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66) ..... | 13 |
| 1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67) ..... | 13 |
| 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95) ..... | 13 |
| 1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02) ..... | 13 |
| 1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05) ..... | 13 |
| 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74) ..... | 13 |
| 1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78) ..... | 13 |
| 1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59) ..... | 13 |
| 1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98) ..... | 13 |
| 1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04) ..... | 13 |
| 1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11) ..... | 13 |
| 1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27) ..... | 13 |
| 1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35) ..... | 13 |
| 1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20) ..... | 13 |
| 1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44) ..... | 13 |
| 1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40) ..... | 13 |
| 1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67) ..... | 13 |
| 1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91) ..... | 13 |
| 1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53) ..... | 13 |
| 1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13) ..... | 14 |
| 1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67) ..... | 14 |
| 1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40) ..... | 14 |
| 1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45) ..... | 14 |
| 1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50) ..... | 14 |
| 1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91) ..... | 14 |
| 1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07) ..... | 14 |
| 1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35) ..... | 14 |
| 1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37) ..... | 14 |
| 1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56) ..... | 14 |
| 1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61) ..... | 14 |
| 1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68) ..... | 14 |

|                                                        |    |
|--------------------------------------------------------|----|
| 1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89) .....  | 14 |
| 1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98) .....  | 14 |
| 1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30) .....  | 14 |
| 1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85) .....  | 14 |
| 1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92) .....  | 14 |
| 1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40) .....  | 14 |
| 1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45) .....  | 14 |
| 1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51) .....  | 14 |
| 1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69) .....  | 14 |
| 1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71) .....  | 14 |
| 1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83) .....  | 14 |
| 1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33) .....  | 14 |
| 1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39) .....  | 14 |
| 1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15) ..... | 14 |
| 1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66) .....   | 14 |
| 1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41) .....  | 14 |
| 1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69) .....  | 14 |
| 1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61) .....  | 14 |
| 1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69) .....  | 14 |
| 1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44) .....  | 14 |
| 1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73) .....  | 14 |
| 1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94) .....  | 14 |
| 1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98) .....  | 14 |
| 1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08) .....  | 14 |
| 1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39) .....  | 14 |
| 1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44) .....  | 14 |
| 1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59) .....  | 14 |
| 1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74) .....  | 14 |
| 1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00) .....  | 14 |
| 1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52) .....  | 14 |
| 1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61) .....  | 14 |
| 1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87) .....  | 14 |
| 1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90) .....  | 14 |
| 1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96) .....  | 15 |
| 1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22) .....  | 15 |
| 1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66) .....  | 15 |
| 1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92) .....  | 15 |
| 1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93) .....  | 15 |
| 1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04) .....  | 15 |
| 1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20) .....  | 15 |
| 1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74) .....  | 15 |
| 1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80) .....  | 15 |
| 1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93) .....  | 15 |
| 1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26) .....  | 15 |

|                                                       |    |
|-------------------------------------------------------|----|
| 1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01) ..... | 15 |
| 2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09) ..... | 15 |
| 2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47) ..... | 15 |
| 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53) ..... | 15 |
| 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64) ..... | 15 |
| 2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22) ..... | 15 |
| 2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24) ..... | 15 |
| 2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71) ..... | 15 |
| 2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70) ..... | 15 |
| 2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77) ..... | 15 |
| 2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23) ..... | 15 |
| 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37) ..... | 15 |
| 2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56) ..... | 15 |
| 2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64) ..... | 15 |
| 2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82) ..... | 15 |
| 2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85) ..... | 15 |
| 2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10) ..... | 15 |
| 2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12) ..... | 15 |
| 2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86) ..... | 15 |
| 2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88) ..... | 15 |
| 2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06) ..... | 15 |
| 2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43) ..... | 15 |
| 2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68) ..... | 15 |
| 2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75) ..... | 15 |
| 2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82) ..... | 15 |
| 2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03) ..... | 15 |
| 2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18) ..... | 15 |
| 2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31) ..... | 15 |
| 2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02) ..... | 15 |
| 2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38) ..... | 15 |
| 2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60) ..... | 15 |
| 2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58) ..... | 15 |
| 2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70) ..... | 15 |
| 2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73) ..... | 15 |
| 2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94) ..... | 16 |
| 2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12) ..... | 16 |
| 2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44) ..... | 16 |
| 2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60) ..... | 16 |
| 2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11) ..... | 16 |
| 2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22) ..... | 16 |
| 2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61) ..... | 16 |
| 2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65) ..... | 16 |
| 2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86) ..... | 16 |
| 2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97) ..... | 16 |

|                                                       |    |
|-------------------------------------------------------|----|
| 2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71) ..... | 16 |
| 2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63) .....       | 16 |
| 2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75) ..... | 16 |
| 2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60) ..... | 16 |
| 2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19) ..... | 16 |
| 2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21) ..... | 16 |
| 2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23) ..... | 16 |
| 2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43) ..... | 16 |
| 2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49) ..... | 16 |
| 2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67) ..... | 16 |
| 2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82) ..... | 16 |
| 2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91) ..... | 16 |
| 2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75) ..... | 16 |
| 2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20) ..... | 16 |
| 2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43) ..... | 16 |
| 2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71) ..... | 16 |
| 2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05) ..... | 16 |
| 2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96) ..... | 16 |
| 2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25) ..... | 16 |
| 2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32) ..... | 16 |
| 2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36) ..... | 16 |
| 2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63) ..... | 16 |
| 2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88) ..... | 16 |
| 2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90) ..... | 16 |
| 2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91) ..... | 16 |
| 2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98) ..... | 16 |
| 2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09) ..... | 16 |
| 2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14) ..... | 16 |
| 2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20) ..... | 16 |
| 2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32) ..... | 16 |
| 2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33) ..... | 16 |
| 2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35) ..... | 16 |
| 2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40) ..... | 16 |
| 2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43) ..... | 16 |
| 2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47) ..... | 16 |
| 2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51) ..... | 17 |
| 2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92) ..... | 17 |
| 2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98) ..... | 17 |
| 2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16) ..... | 17 |
| 2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26) ..... | 17 |
| 2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32) ..... | 17 |

(10시36분 개의)

니다.

○소위원장 류성길 오늘 회의를 정시에 시작하지 못해서 위원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기획

재정위원회 제4차 조세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회의에 이어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197)
1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679)
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25)
1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669)
1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92)
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14)
1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76)
1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08)
1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89)
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10)
1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99)
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48)
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46)
1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92)
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19)
1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92)
1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97)
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51)
1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45)
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48)

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25)
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25)
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30)
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66)
1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67)
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95)
1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02)
1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05)
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74)
1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78)
1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59)
1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98)
1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04)
1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11)
1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27)
1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35)
1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20)
1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44)
1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40)
1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67)
1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91)
1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53)

1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13)
1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67)
1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40)
1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45)
1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50)
1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91)
1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07)
1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35)
1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37)
1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56)
1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61)
1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68)
1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89)
1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98)
1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30)
1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85)
1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92)
1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40)
1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45)
1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51)
1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69)
1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71)
1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83)
1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33)
1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39)
1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15)
1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66)
1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41)
1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69)
1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61)
1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69)
1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44)
1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73)
1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94)
1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98)
1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08)
1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39)
1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44)
1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59)
1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74)
1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00)
1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52)
1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61)
1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87)
1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90)

1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96)
1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22)
1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66)
1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92)
1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93)
1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04)
1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20)
1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74)
1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80)
1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93)
1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26)
1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01)
2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09)
2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47)
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53)
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64)
2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22)
2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24)
2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71)
2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70)
2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77)
2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23)
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37)
2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56)
2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64)
2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82)
2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85)
2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10)
2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12)
2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86)
2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88)
2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06)
2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43)
2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68)
2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75)
2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82)
2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03)
2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18)
2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31)
2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02)
2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38)
2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60)
2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58)
2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70)
2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73)

2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94)
2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12)
2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44)
2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60)
2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11)
2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22)
2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61)
2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65)
2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86)
2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97)
2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71)
2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63)
2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75)
2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60)
2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19)
2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21)
2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23)
2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43)
2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49)
2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67)
2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82)
2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91)
2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75)
2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20)
2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43)
2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71)
2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05)
2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96)
2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25)
2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32)
2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36)
2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63)
2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88)
2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90)
2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91)
2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98)
2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09)
2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14)
2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20)
2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32)
2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33)
2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35)
2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40)
2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43)
2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47)

**2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51)

**2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92)

**2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98)

**2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16)

**2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26)

**2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32)

○**소위원장 류성걸** 의사일정 제101항부터 제283항까지 이상 183건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소위 자료 순서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소위 자료 3권 146쪽입니다.

전기·수소전기 버스에 대한 부가세 면제 특례 대상 확대하고자 하는 정부안입니다.

현행은 25년 말까지 부가세가 면제되는 전기·수소버스 대상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지만 개정안은 여기에 농어촌버스를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7쪽입니다.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은 시내버스 운송사업,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마을버스 그다음에 시외버스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148쪽입니다.

개정안 관련해서, 현재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노선버스를 대·폐차하는 경우에 저상버스로 도입하도록,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우선 도입하도록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에 따라서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하는 노선버스 운행 형태를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로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부가세가 면제되는 전기·수소버스의 대상을 시내버스, 마을버스뿐만 아니라 농어촌버스까지 확대함으로써 법률 및 정부 정책 간 정합성을 제고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경유차량이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 농어촌버스 2075대 중에서 97.3%인 2020

대가 경유차량임을 감안할 때 농어촌버스용 전기·수소버스의 보급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만 현재 시외버스도 노선버스에 포함되고 전체 시외버스 5265대 중에서 99.3%인 5229대가 경유차량임을 고려할 때 부가세 면제 대상에 농어촌버스뿐만 아니라 시외버스도 포함하는 방안을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농어촌버스를 도입하려는 정부안의 취지는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을 주셨고요.

검토보고 중에 시외버스까지도 좀 포함을 하자는 검토의견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미세먼지 저감이나 탄소중립 차원에서 시외버스도 넣어야 된다는 방향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현재 시외버스의 경우에는 운영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전기차라는 게 아직까지도 길게 가는 것에 대해서는, 버스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추후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은 공감을 합니다만 당장의 실효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해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해진 위원** 시외버스에 전기나 수소·전기차량이 도입될 전망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산업계 동향하고 언제쯤 도입이 시작되고 추이가 어떻게 진행될 것 같다는 그런……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제가 정확하게는 언제쯤 도입이 가능할 거다라고 판단을, 그러니까 정보를 가진 것은 솔직히 지금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에 대해서 공급되는 단계고 버스가 한 번 충전을 하면 최대 한 200km 정도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시외버스는 거리에 따라서 조금 더 움직여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기술개발이 조금 더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전망입니다. 당장 언제, 단기간 내에 도입이 될 거다 안 될 거다라고 지금

판단하기는 조금 이른 상황이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해진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그것은 산업계 쪽에 파악하는 것은 금방일 테니까 오늘내일 중으로라도 한번 알아 보시고.

그다음에 시외버스까지 추가시켰을 경우에 시외버스의 수소·전기차 도입 유인으로서 작용을, 당기는 유인으로서 작용을 할 가능성 여부 그것도 같이 한번 짧게 파악을 해서 가지고 최종 정리할 때 감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나중에 관련되는 것을 자료 정리해 주십시오.

정태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태호 위원 조해진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저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소위원장 류성걸 예, 나중에 전체 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알겠습니다.

○정태호 위원 그리고 수소경제가 지금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의 하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수소경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수소를 생산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수소의 활용 시장을 넓혀 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수소를 생산하는 업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업계 입장에서 보면 활용 시장에 대해서 신뢰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활용되는 부분을 어떻게 넓혀 줄 거냐가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모빌리티 부분에 있어서는 전기차 보다는 수소·전기차가 훨씬 더 장거리를 뛸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시외버스 같은 경우가 장거리를 뛰기 때문에 여기에는 수소·전기차가 들어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지요.

이렇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활용되는 시장을 넓혀 주는 것과 장거리 모빌리티 부분에서 그쪽은 수소 쪽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는 판단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검토보고처럼 시외버스를 넣어 주는 게 오히려 시장을 넓혀 주는 데 유인 효과가 훨씬 크다는 거지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번 나중에, 조해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를 한번 찾아보시지만 그런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알겠습니다. 조사

를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조사해서 관련 자료를 가지고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회귀·난치성질환자 의약품 수입에 대한 부가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김태년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회귀병 치료 등을 위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가세 면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조특법 시행령에 따라서 세제자입 등 고세병 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등 총 11개의 면세 품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면세조항은 적용기한이 없이 영구면세 항목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152쪽입니다.

개정안은 회귀·난치성 등의 질환 치료를 위해서 환자가 한국회귀·필수의약품센터에 수입해줄 것을 요청해서 센터가 그 환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의약품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국회귀·필수의약품센터는 약사법에 따라 설립된 식약처 산하기관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김태년 의원님께서 부가세법과 같이 이 약품에 대해서 관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관세법 개정안도 같이 내신 바가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긍정적인 취지가 있겠습니다. 한국회귀·필수의약품센터는 회귀·난치성질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치료용 의약품을 해외에서 수입해서 환자에게 원가로 공급하고 있지만 이 원가에는 관세와 부가세가 포함되어서 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3년 8월 기준으로 국내 회귀·난치성질환자 수는 약 80만 명 수준이고 22년 기준으로 환자의 요청으로 센터가 자가치료용 의약품을 수입하여 공급한 실적을 살펴보면 수입금액은 56억 2000만원 그리고 이에 따른 관세와 부가세가 각각 2억 8000만 원, 7억 8000만 원 규모고 의약품 종류는 75품목, 공급 건수는 1703건 그리고 이를 요청한 환자 수는 999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154쪽입니다.

개정안에 따라서 센터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부가세 면제를 허용할 경우에는 동일한 물품을 수입하는 단체와의 과세 불형평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관세와 부가세 면제 대상인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의 범위가 동일하므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서 부가세 면제 대상인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 현재 11개인데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이 있습니다.

기재부는 센터 등의 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동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이 희귀·난치성질환자 의약품 수입에 대해서 관세나 부가세나 이런 부분을 더 넓게 면제를 해 줘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지금 조문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을 하는 품목의 경우는 다 해 주자, 그러니까 품목이 지정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고, 그러면 같은 품목인데 다른 방식으로 수입되는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할 때 저희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번 기회에 요청을 확실히 받아 가지고 시행령·시행규칙에서 대상을 좀 넓혀 주고 빨리 조치해 주는 방법으로 이 필요성을 수용하는 게 집행 측면이나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결국은 희귀·난치성질환에 관련된 사항은 국가가 어떤 형태든지 지원을 해 드려야 된다는 그 취지에는 공감하시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소위원장 류성걸 그러면 꼭 이렇게 법을 고쳐서 하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저희들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해진 위원 그것 검토……

○소위원장 류성걸 조해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해진 위원 검토하실 때 그 요청기관을 희귀·난치병센터 이렇게 특정 또는 고정하는 것도 한번 제고해 볼, 그 기관에만 한정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도……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좀 폭넓게 한

번 필요한 물품들 수요를 받아 보겠습니다.

○조해진 위원 시행령·시행규칙으로 물품도 좀 확대할 수 있는 탄력성을 부여하고 그다음에 그 전제조건이 특정 센터가 요청할 경우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 국한할 필요가 있는지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제실장 정정훈 저희들은 특정 센터에 국한해 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조해진 위원 현재는 그렇게 돼 있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제실장 정정훈 그러니까 의원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그렇게 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는 입장이고, 차관 말씀은 복지부 또 병원 협회, 센터까지 포함해서 광범위한 기관으로부터 건의를 받아서 필요한 물품들을 최대한 반영을 하겠다, 그래서 깔끔하게 다 정리를 하면 되지 특정 기관이 수입하는 물품만 해 주는 방식은 세법 체계에 좀 안 맞다, 어쨌든 국민이 필요하신 부분은 최대한 반영을 하는데 그 절차나 방식은 일반적인 세법 체계에 맞춰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그건 나중에 정리해서 다시 보시고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등에 제공하는 명칭사용용역에 대한 부가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유동수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명칭사용용역에 대해서 부가세를 면제함으로써 금융지주회사 자회사의 세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일반 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지주회사가 자회사에게 명칭사용을 허락하면 자회사는 명칭사용료와 이에 따른 부가세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가세 과세사업자인 자회사는 납부한 부가세를 매입세액공제로 환급받을 수 있어서 명칭사용료에 따른 추가적인 부가세 부담이 없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하지만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의 경우에는 금융용역이 면세 대상이기 때문에 부가세 면세사업자인 자회사는 납부한 부가세를 매입세액공제로 환급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농협과 수협의 경우에는 정부 정책에 따라 중앙회의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분리해서 경제지주와 금융지주를 신설하거나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수협은행을 설립하는 등의 구조개편을 하면서

중앙회가 자회사에 공급한 명칭사용용역에 대해서는 부가세 납부의무가 발생하였지만 이 납세의무가 정부가 주도로 한 구조개편으로 인해서 발생된 점을 감안해서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158쪽입니다.

개정안과 관련해서,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 간 명칭사용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세 납부의무는 지주회사 제도 도입 및 금융감독 당국의 수수료 수취 지시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명칭사용료에 대한 부가세 면제가 필요한 측면이 있겠습니다.

다음 둘째, 일반지주회사는 지주사 전환에 따른 추가적인 부가세 부담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셋째, 농협·수협 금융지주회사는 명칭사용료 뿐만 아니라 전산용역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면제 받고 있는데 금융과 관련해서는 농협·수협이 금융지주회사의 공정경쟁 대상이라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60쪽입니다.

다만 금융지주회사의 명칭사용용역은 모든 분야의 지주회사·모회사가 공급하는 것으로서 본질적인 금융용역이 아니며 그 대가인 상표권 사용료는 공시 대상으로서 구분 가능하므로 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동일한 용역에 대해서 금융지주회사에게만 면세할 경우에 금융회사 간 과세 불형평이 발생해서 공정경쟁을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금융지주그룹이 아닌 금융그룹 내에서의 명칭사용용역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과세되므로 금융회사 간 과세 불형평이 발생하고 금융지주그룹은 일반지주그룹이 아닌 다른 금융그룹과 경쟁하므로 금융사 간에도 과세 형평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농협이나 수협 같은 경우는 또 과세가 안 되고 있는 부분 감안할 때 일반금융지주회사도 과세를 면제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취지로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원칙은 과세고 농협·수협이 예외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지주회사의 경우에도 사실은 과세가 됩니다. 되는데, 설명드린 대로 일반지주회

사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공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세가 되기 때문에 매입세액공제로 환급을 받는 방식이지 이 명칭사용료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금융지주회사의 경우는 금융용역이 면세 대상이기 때문에 환급을 못 받게 돼서 과세가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건대는 원칙적으로 과세를 하는 게 맞고 농·수협의 경우에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또 법을 바꿔서 신경분리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분리되는 과정에서 비용이 덜어 준다는 차원이었기 때문에 일반금융지주회사와 동일한 선상에서 놓고 보는 건 적절치 않다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유동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동수 위원 금융지주회사가 탄생하는 과정에서 보면 이게 정부 주도적 측면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처음의 히스토리를 보면 이거를 과세한다는 게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 신한은행이다 그러면 신한은행이 금융지주 거냐? 은행도 태생적으로, 우리 머릿속에는 신한은행이 신한지주게 아니라 은행 쪽에 더 가깝다 그거지요.

그러니까 스토리를 보면 그걸 꼭 과세사업으로 볼 필요가 있나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원칙으로 따지면 그 용역에 대해서 과세용역이니까 과세하고 매입세액 불공제받으면 된다 이게 지금 정부 입장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스토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걸 과세사업으로 분류하는 게 조금 문제가 있는 거지요, 처음부터. 왜냐하면 외환위기 때부터 여러 은행들이 사업 구조조정 개편도 하고 이러면서 지주로 전환했지 않습니까, 정부에 굉장히 호응한 부분도 있고. 이게 농협이나 수협이나 이런 부분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태생적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와 마찬가지로 만약에 은행의 명칭 등이 서로 공유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걸 꼭 과세사업으로 분류할 필요가 뭐 있냐, 형평성 측면에서도 그렇고 태생적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이걸 과세사업으로 보겠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소위원장 류성걸 차관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소위원장 류성걸 그러면 양경숙 위원님 말씀하시고 답변 함께 해 주십시오.

○양경숙 위원 이 법안대로 하면 세수 감소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분석해 보셨나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예정처 분석에 따르면 1년에 한 300억 나옵니다.

○양경숙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농협과 수협 때문에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를 제기한다는데 농협과 수협을 이런 법안에 넣기보다 조세특례로 전환하면 그런 형평의 문제가 사라지지 않나요? 한번 검토해 볼 의향 없습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현재도 조세특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양경숙 위원 분류돼 있습니까, 이미?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예.

○양경숙 위원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지키면 되는 거 아닌가?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저희들 입장은 농·수협조차도 과세로 전환을 하는 게 원칙에 맞다라는 게 입장인데 다만 현실적으로 그 시기를, 언제쯤 그걸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부도 판단을 하고 국회하고 논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다, 따라서 농·수협이 하고 있다는 이유로 일반금융지주를 다시 면세까지 보내 놓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고요.

물론 유동수 위원님 말씀대로 태생적인 문제나 또 성장성,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 조금 일반적인, 자발적인, 순수하게 그 그룹의 판단에 의한 지주사 전환 또 거기에 따른 자율적인 수수료의 명칭 사용용역의 제공 이런 부분들하고 조금 역사적인 배경은 다르다는 것은 인정은 되지만 그렇다 해가지고 그 역사적 배경에서 과연 농·수협만큼 그런 특별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느냐, 그것까지는 아니라고 보고요.

저희들은 그런 현실의 문제가 있더라도 일반적인 과세원칙을 지키는 게 맞고 좀 문제가 된다면 오히려 금융위 쪽에서 명칭사용료에 대한 적절한 대가가 어느 정도 되는 건지, 부담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건지 그쪽에서도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양경숙 위원 농·수협의 과세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는 그냥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추상적으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로드맵을 구상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계속 똑같은 얘기만 하

고 있을 수는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제기되는 거 아니에요. 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건 없어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이 부분은 이런 기준으로 보면 또 저런 기준에 어긋나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세제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세제 차원에서 보면 원칙을 지켜 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기준에 맞춰서 할 것인가 이야기인데 부가가치세는 농협뿐만 아니라, 수협뿐만 아니라 사실은 신경분리는 신경분리, 정책적으로…… 그러면 어느 정도 지나면 그때 신경분리가 어려웠을 때의 보상 차원이다 아니면 지원 차원이다 하면 그 어느 정도 페이드아웃시키는 방법도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세 등 간접세 면제제도를 환급제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양기대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162쪽입니다.

현행법은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세, 개별소비세 등 간접세를 23년 말까지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면세유 공급 실적을 살펴보면 경유가 166만 7000kl로 면세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등유, 휘발유 순이 되겠습니다.

164쪽입니다.

현행 간접세 면제제도는 농어민 등이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농협조합 등으로부터 발급받은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사용해서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자에게 면세가 적용된 가격으로 유류를 공급받고 석유판매업자가 관할 세무서에 환급을 신청하여 정산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165쪽입니다.

개정안은 면세유 구입 시 감면액을 환급받는 주체를 현행 석유판매업자에서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으로 변경함으로써 농어민 등이 조합으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석유판매업자에게 과세된 가격으로 유류를 구입하고 조합을

통해 세무서장에 환급을 신청해서 결과적으로는 유류세 감면액을 농어민 등에게 직접 환급하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안 관련해서, 면세유의 간접세 환급제도는 면세유 제도의 본래 취지를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경기도청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도내 일부 주유소가 면세유의 정의에 맞게 가격을 책정하지 않고 임의로 이중 마진을 수취하는 문제가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 9월에 조사한 부분인데 전체 판매 주유소 164개 중에서 149개소가 면세유 적정가 대비 휘발유는 평균 10.9%, 경유는 평균 6.3% 더 높은 추가 마진을 붙여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면세유에 과도한 이중 마진을 책정해서 판매할 경우에는 농어민 등에게 돌아가는 면세혜택이 줄어들게 되고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자가 아닌 조합을 통해 농어민 등에게 유류세 감면세액을 직접 환급하게 되면 면세유 제도 본연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168쪽입니다.

다만 개정안과 관련해서, 사후 환급제도를 도입하더라도 면세유를 판매하는 석유판매업자가 가격을 결정하는 구조는 변하지 않으므로 농어민의 실제 유류비 부담은 현행 제도하에서와 큰 차이가 없을 가능성이 있으며 오히려 전산시스템 마련 등으로 인한 정세비용과 농어민 등의 납세 협력비용이 크게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일부 주유소의 이중 마진은 주유소가 면세가격 보고 및 표시규정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로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으로서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점과 부정확한 가격 표시는 면세액 계산 방법 등 관련된 규정에 미숙해서 단순 계산오류로 잘못 표시한 주유소도 많은 만큼 사업자의 교육이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현장 지도를 통해서 현행 면세유 제도 본래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간접세 면제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유소가 약간의 부정확한 방법 이런 부분을 쓰고 있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서는 이 제안된 법안 내용이 상대적으로 더 효과가 있을 거다 하는 측면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이거를 집행을 하려고 보면 전산도 깔아야 되고 농협이나 이런 데서 일일이 그걸 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집행비용이나 납세 협력비용 측면에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농협하고도 상의를 해 봤는데 농협에서 굉장히 하기가 어렵다 하는 의견을 강하게 지금 표출하고 있는 상황인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조해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해진 위원 농민들의 의견은 들어 보셨습니까, 어느 걸 선호하는지?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농민들도 지금 그냥싼 값으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지금은.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일반가격으로 샀다가 환급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농민들도 적극적으로 이 방식으로 바꾸자 하는 의견까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해진 위원 그러니까 농협도 별 수요가 없고 농민들도 별 수요가 없는데, 판매업자들의 부정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한 건데 그것도 결국은 마음만 먹으면 가격 올려서 받는 거는 크게 변동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니까 실익에 좀 문제가 있네요, 실익에.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일몰 관련해서 나중에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부가세 매입자납부 특례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세금계산서 작성·제출 관련 보전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정부안입니다.

171쪽입니다.

현행 부가세법은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세를 징수하는 거래징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특법에 따라서 금 관련 제품, 구리, 철스크랩 등 재화를 공급받는 매입자가 직접 부가세를 지정금융기관을 통해 국세청에 납부하는 매입자납부 특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172쪽입니다.

개정안은 매입자납부 특례 적용 대상에 비철금속류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을 추가하고 국세청장으로 하여금 부가세 보전을 위해서 금 관련 제품, 스크랩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3쪽입니다.

매입자납부 특례 적용물품의 거래 시에 비적용 품목인 비철금속을 같이 취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용계좌 사용대상 물품을 비대상품목으로 기재해서 전용계좌 개설 및 입금을 회피함으로써 부가세를 탈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세관청 입장에서도 전용계좌 대상품목 여부를 사업자가 제출한 서류에만 의존하고 있어서 세금계산서 품목을 허위로 작성·발행하여도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가 곤란하므로 구리와 철을 제외한 비철금속 거래 시에도 매입자납부 특례를 도입함으로써 부가세 탈루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174쪽입니다.

부가세 매입자납부 제도 시행 이후에 금 관련 제품, 구리·철 등 부가세 납부세액과 전용계좌 개설 건수가 증가하는 등 매입자납부 제도가 시장 양성화에 기여한 측면을 고려할 때 비철금속류 스크랩의 경우에도 세원의 양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75쪽입니다.

참고로 EU에서도 매입자납부 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할 경우 부가세의 상호검정 기능이 약화되어 사업자의 소득 파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과 상당한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역효과 등을 감안해서 회원국에 따라서는 부가세 탈세 위험이 높은 건설용역, 재생원료 및 폐기물 등 일부 거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매입자납부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그 적용 대상 품목을 넓혀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176쪽입니다.

개정안은 국세청장으로 하여금 매입자납부 특례 관련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작성, 제출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가세법에 따라서 일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명세 및 세금계산서합계

표의 제출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자납부 특례 관련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매입자납부 특례 적용 품목을 세금계산서에 허위·거짓으로 작성해서 매입자납부 특례 적용을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하기 위함인 것으로서 법정 품목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부가세 과세자료를 양성화하기 위한 제도라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이 제도는 위원장님께서 제안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가지고 시작이 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투명성을 제고하는 부분에 대해서 효과들이 조금씩 확인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 대상을 비철금속까지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좀 전에 차관님 말씀대로 그런 취지고 또 이렇게 됐을 때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전문위원님, 175쪽의 각주 45번을 좀 봐 주세요. 이게 과거의 내용을 그냥 그대로 쓴 건가, 아니면 진짜 이런 게 실질적으로 검증이 된 건가, 혹시 자료가 있나요?

이론적으로 이거는 안 맞는 이야기예요. 마치 그냥,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되는 자료를 좀 찾아서 주시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부가가치세 매출자납부 제도를 매입자납부 제도로 전환해야 될 시기가 됐다는 걸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45번처럼 막연하게 이런 식의 풋노트를 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관련되는 자료를 주시고요. 앞으로 그러면 어떤 품목까지 확대할 건가를 정부에서 검토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경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경숙 위원 지금 깜짝 놀랐는데요. 스크랩 매입자납부 거래현황을 보면 2022년에 구리 스크랩은 12조 8112억이고요. 철 스크랩은 44조 7708억이거든요. 그래서 세액만 해도 지금 1조 8000억이 넘는데 이 법을 통과시키게 되면 세수효과는 어떻게 발생할 거라고 구체적으로 분석한 내용이 있나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지금 구리하고 철은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요. 시행을 하고 있어서 실제로 들어왔던 실적만 잡은 거고요.

비철금속에 대해 시행을 하게 되면 들어올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추정이 어렵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양경숙 위원** 아예 안 됩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정말 가정의 가정의 가정을 들어가면 개략적으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경숙 위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는 안 했습니까? 이 분야의 사업 규모가 굉장히 큰 것 같은데, 그러면 세율을 찾지 못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당연히 찾아서 부과를 하고도 남았어야 될 사업 분야인 것 같은데 왜 지금까지는 이게 방치되었나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지금까지 저희들이 도입했던 그 순서가 쪽 있듯이 가장 탈세가 많고 거래 금액이 큰 순서부터 저희들이 지금 도입해 오고 있는 과정입니다. 당연히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는 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산업부라든지 관계 부처, 또 제일 잘 아는 곳은 국세청이고요. 국세청하고 관계 부처하고 지속적으로 여러가지 제도개선을 이런저런 논의 하는 과정에서 금지금이 제일 먼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 단계적으로 쪽 넓혀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구리나 철이 굉장히 금액이 많은 편이고요. 비철금속은 그거에 비해서는 비중은 좀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양경숙 위원** 그러면 실태 파악은 한 상태입니까? 실태 파악을 하고는 있습니까, 어느 정도라도?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큰 틀에서는 국세청하고 같이 실태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이 부분은 추가적인 확대가, IT뿐만 아니라 우리 과세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제주도 지정면세점 판매 품목 및 구매 횟수를 확대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제주도 지정면세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품목과 구입 횟수를 확대하고 있는데 품목과 관련해서는 두 안 모두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

는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품목 17개를 관세법상 보세판매장에서 판매 가능한 품목으로 확대하면서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이고, 구매 횟수와 관련해서는 김정재 의원님 안은 6회에서 연 12회로 확대하는 것이고 한병도 의원님 안은 구매 횟수 한도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9쪽입니다.

현재 제주도 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구입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인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품 특례 규정에 위임하고 있는데 동 대통령령에서는 주류, 담배, 시계 등 총 17개 품목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181쪽입니다.

작년 세법 개정을 통해서 금년부터 지정면세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개별 면세물품의 금액한도와 구매할 수 있는 면세물품의 1회 금액한도가 각각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되었습니다. 하지만 구입 횟수는 2008년부터 연 4회에서 연 6회로 확대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 지정면세점은 제주도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JDC) 그다음에 제주관광공사, 2개사가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매출액은 7117억 원, 이용객 수는 575만 명 수준입니다.

182쪽입니다.

개정안은 지정면세점 이용을 촉진해서 제주 여행 활성화 및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2년도 제주도 관광객 수는 1388만 9000명 수준으로 전년 대비 15.7%가 증가하였지만 코로나 19 발생 전인 19년도에 비해서는 9.1%가 감소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올해 8월 말 누계 기준으로도 관광객 수는 896만 5000명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 감소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184쪽입니다.

한편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설립된 JDC는 매년 순이익의 8~15%를 제주도민의 복리 증진과 국제화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지출하고 있는데 설립 이후부터 22년 말까지 총 1463억 원의 예산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개정안과 같이 제주도 지정면세점 판매 품목과 구매 횟수를 확대함으로써 면세점 쇼핑 등 제주도 관광 유인을 제고하고 JDC 매출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회복과 제주도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둘째, 주변 경쟁국인 중국, 일본, 대만의 내국인 면세점의 경우에 제주도보다 더 많은 면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하이난의 싼야 면세점과 일본 오키나와 특정 면세점의 경우에는 구매 횟수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대만의 진먼 면세점은 구매 횟수를 연 12회로 제한하고 있고 판매 품목의 경우에도 우리나라보다 많거나 제한이 없어서 내국인 면세점의 면세 한도가 높은 수준입니다.

다만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제주도 지정면세점의 판매 품목과 구매 횟수는 제주 지역 내 일반 과세사업자들에게 매출 감소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제주 지역 상인과 타 관광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186쪽 둘째, 연간 제주도 여행객 1인당 지정면세점 방문 빈도를 고려할 경우에 지정면세점 구매 횟수 상향 조정의 실익이 낮을 수가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제주 지정면세점을 연간 6회 이용한 제주도 여행객 비율이 1%대로 나타난 반면에 연간 1회 이용자 비율은 80% 이상인 점을 감안할 때 연간 구매 횟수를 확대하더라도 연 7회 이상 이용자의 비율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셋째, 제주도 지정면세점은 일정 한도 내 국내 소비물품에 대해 면세하는 것으로 소비지국 과세원칙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예외적인 제도로써 외국 반출을 조건으로 하는 관세법상 면세점 대상 물품과 차별성을 둘 필요가 있다는 기재부의 의견이 있습니다.

넷째로, 현재 그 밖에 제주도 조례가 정하는 물품을 면세물품으로 지정할 수 있으므로 대통령령 또는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면세물품을 추가하여 입법 취지를 구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조례 개정의 경우에는, 지정면세점이 제주지역 상인들과 경쟁 관계임을 고려할 때 조례 개정을 통한 면세물품 확대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제주도에 면세를 해 주는 목적을 한번 생각을 해 보면 결국은 외

국 관광객들을 유치해 가지고 전체 파이를 키우자 하는 취지로 이 제도가 도입이 되었고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안된 법안은 오히려 제주도 안의 파이를 어떻게 나누어 먹을 거냐의 문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품목을 넓히면 결국은 제주도 내에서 같은 품목을 팔고 있는 상인들과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관광객이면 연 6회면 거의 다 소화가 됩니다, 보고도 있었지만. 그러면 그 이상 하는 거는 결국 제주도를 자주 왕래를 하게 되는 주민들이 주로 혜택을 보게 될 텐데 그게 과연 이 제도의 목적에 맞는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우려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조해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해진 위원 이 제도를 통해서 외국 관광객,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다른 경쟁 국가들, 대만이나 중국이나 일본 오키나와 이쪽하고 경쟁의 측면은 저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경쟁력을 높이는 데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외국 관광객들을 더 많이 오게 만들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동안에 제주도 관광객들이, 외국 관광객들이 최근에 와서 계속 떨어진 요인이 뭔지, 이거하고 관계있는 요인인지, 다른 요인이라면 그 요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거 한다고 해서 갑자기 또 줄어드는 게 늘어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그 요인에 대한 면밀한…… 저도 듣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이런이런 이유로 인해서 줄어든다, 점점 안 찾게 된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효과 분석을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검토보고에는 조금 우려 사항이 담겨 있지만 실제로 효과가 있어 가지고 관광객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늘어난다, 많이 늘어난다고 하면 늘어난 외국 관광객들이 면세점 물품만 구입할 것인가, 지역의 일반 물품들은 구입을 안 할 것인가.

통상적으로 보면 면세점 물품도 구입하지만 또 다른 것도 구입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게 제 살 깎아 먹기는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그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데, 문제는 검토보고에 조례로 이걸 확정하려고 그러면 60만 제주도민들 또 그

상인들을 대표하는 제주도의회 의원들이 안 할 거라는 이야기잖아요. 안 한다는 것은 그 주민들이 그걸 반대한다는 의미잖아요. 늘려 놔도 우리한테 도움 안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조례로는 안 된다고 해서 억지로 이렇게 법으로 한다는 건데, 실제 그렇다면 이건 법으로 강제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원인 분석, 효과 분석을 좀 면밀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조해진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아주 명쾌하게 정리를 해 주셨고, 그 부분을 파악을 하고 난 뒤에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세제실장 말씀하세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저희들도 조해진 위원님의 의견하고 전적으로 동일하고요. 기본적인 구조를 간단하게만 생각을 해도 외국인 관광객은 제주도 시내에도 면세점이 있고 거기에 또 사후 환급뿐만 아니고 즉시 환급을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결국은 나중에 공항을 나갈 때 또 공항에서 면세점을 이용하실 수도 있고, 외국인 관광객은 어쨌든 들어오셔서 가지고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는 루트는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양한 루트가 있는 상태에서 제주도 시내면세점의 물품이 조금 늘어난다? 그거 가지고 과연 외국인 관광객이 얼마나 증대될 것이냐라는 것에는 단숨에 생각해도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이 들고요.

아마 국내 관광객한테는, 많은 물품과 가격 경쟁력이 있다면 국내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는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은 드는데 국내 관광객의 유치를 위해서 우리가 제주도 면세점이라는, 아주 예외적인 국내 면세점에 대한 지원을 더 강화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에 대해서는…… 특히 하이난이나 오키나와, 진먼 같은 경우에는 각국에서 굉장히 소외된 오지 지역입니다. 진먼 같은 경우도 대만 본토하고 떨어져 있는, 아예 중국하고 딱 붙어 있는 지역이고요.

그래서 제주도의 위치나 위상이나 국내 이용객의 현황이나 이런 것과는 조금 다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신 것 포함해서 분석을 하고 해야 될 사항입니다.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인지세 분야입니다.

청년 농어업인 인지세 면제한도를 상향하고 농·수협 조합원의 용자 서류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13건의 의원안과 정부안이 되겠습니다.

현행법은 농어민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농·수협 등으로부터 용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의 인지세 면제와 관련해서 동일인이 받는 용자금액의 합계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면제하고 있습니다.

4건의 개정안은 농협 등으로부터 금전소비대차 관련 증서의 인지세 면제와 관련해서 용자금액의 합계액 상한을 청년 농어업인인 경우 현행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하고, 나머지 정부안과 여러 의원님들 개정안은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청년 농어업인의 면제한도를 상향하고자 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청년층의 귀농 등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고 청년 농어업인의 세부담 완화를 통해서 가처분소득의 증대 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영주가 청년 농어업인인 경우의 비중이 높지 않아서 개정안의 실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2년 기준으로 경영주가 40대 미만인 경우의 비중은 농가 0.7%, 어가 1.7% 수준에 불과합니다.

둘째, 농가부채의 규모, 즉 21년 기준으로 농가가 3502만 원, 어가가 5978만 원의 수준이 현행 인지세 면제 기준인 1억 원을 하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인지세 면제기준 상향의 필요성이 크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또한 1억 원 이상의 대출에 대해서도 인지세 면제 혜택을 부여할 경우에 영세한 농어민 지원이라는 조세특례의 당초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동 조세특례는 꾸준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어 동 조세특례를 유지할 경우 농어민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이 계속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결과에서도 일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차관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일몰 연장과 관련해서는 저희들 나름 기준 원칙으로 잡고 있는 3년 안을 제안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면제한도를 청년에 대해서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가는 것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전문위원이 말씀을 다 해 주셨고요.

제가 하나 첨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필요해서 대출을 받는 거기는 하겠습니까만 대출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세까지 깎아 주면서 지원을 해야 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세 분이 상향 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해진 위원님 혹시 말씀하시겠습니까?

○조해진 위원 일정한 취지가 있어서 상향 조정까지도 개정 내용에 포함을 했는데 정부 측 의견도 나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몰 연장하는 것 말고 상향 조정하는 건 합리적으로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의 의견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양경숙 위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양경숙 위원 아닙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배준영 위원님.

○배준영 위원 농어촌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하여튼 청년층의 귀농 활성화를 위한 강력한 세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평균 세수 감소 폭이 110억 정도로 낮아서 제도 유지에는 큰 부담이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상환 담보능력이 부족한 청년농의 금융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상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취지를 알겠고요, 그래서 연장하는 쪽으로 뜻을 모으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그러면 이 사항은 정부안대로 연장을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권의 마지막 항목입니다.

관세 분야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 감면 업종요건을 완화하고자 하는 정부안이 되겠습니다.

193쪽입니다.

개정안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 감면 특례를, 현재 업종요건을 세분류와 동일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조문과 달리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동 관세 특례를 소득·법인세 감면 조문과 동일하게 시행령에서 일괄 규정하는 방식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재부에 따르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기준으로 동일하지 않더라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에서 업종의 유사성을 확인받는 경우에는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을 통한 국내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2013년 동법 개정과 함께 신설되었습니다.

동 특례는 2년 이상 경영한 국외사업장을 국내로 이전·복귀하는 기업이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증설하기 위해서 자본재를 수입하는 경우에, 완전 복귀하는 경우에는 100% 관세를 감면하고 부분 복귀하는 경우에는 50%의 관세를 감면합니다. 이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 기준으로 이전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하여야 합니다.

개정안은 세분류상 동일 업종은 기술혁신으로 사업구조 선진화가 빈번한 산업현장에 탄력적 대응이 곤란하다는 현실을 감안해서 업종요건 완화를 통해 해외진출기업의 사업구조 전환을 수반한 국내복귀를 촉진하겠다는 입법 취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상속·증여세법에서도 가업상속공제의 경우에 중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중분류 내 업종변경이 아니라 할지라도 국세청의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종변경을 승인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가업유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서 공제혜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기업의 국내 이전·복귀 전후의 업종이 동일하여야 한다는 것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 지원이라는 특례를 제공하는 근거가 되는 핵심적인 사항 중 하나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요건을 시행령이 아닌 현행과 같이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해서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하는 조특법 조항의 업종요건도 이와 같이 시행령에 규정할 것이 아니라 법률에 상향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하고 정부의 제안하고 서로 다른 견해입니다.

차관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산업이 굉장히 빨리 바뀌고 하기 때문에 업종분류 부분에 대해서 조금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된다는 취지에는 전문위원께서도 어느 정도 공감할 한 걸로 이해를 하고요.

다만 규정 방식과 관련해서, 다른 유관 법률들도 시행령에 있다 보니까 시행령에서 한 건데, 제안하신 취지를 감안해서 법률에 근거를 두되 일부는 시행령에서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조문을 협의해서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정리해서 주시고요.

양경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경숙 위원 지금 해외로 나갔다가 다시 국내로 돌아온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까? 최근의 실적은 어느 정도 되나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유턴기업을 신청한 기업이 연간 한 20개 내외 됩니다.

○양경숙 위원 왜 그것밖에 안 되나요?

22년도에는 13건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고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해외에 나갈 때도 그 나라의 세제 혜택을 받고 가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그렇습니다.

○양경숙 위원 그러면 그것보다 조건이 더 낮거나 사업 비전이 더 높아야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적이 낮은 거 아닌가요?

아니면 여러 가지, 인건비도 우리나라가 지금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 아시아나 중국, 동남아시아로 나갔던 기업들이 다시 들어오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런 실태조사를 면밀하게 해서 대응합니까?

정부에서는 계속 굉장한 효과가 있고 실적이 있는 것처럼 리쇼어링 대책이 이렇다 저렇다 정

책을 많이 발표하고 있는데 정작 실적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아주 미미한 수준이잖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정정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제대로 실태를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 총괄적인 기능을 산업부에서 기업의 리쇼어링, 국내복귀에 대한 총괄적인 법률과 정책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중의 일환으로 세제 지원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좀 더 강력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법안을,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 지원 폭도 확대를 하고…… 지금은 조특법이 아니다 보니까 관세법에서는 업종요건 맞추는 법률 구조상의 논의를 하시는 거고 다음 4권에 가면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또 구체적인 업종요건 완화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고요.

그 외에도 국내에 복귀했을 때 보조금 지원 또 입지와 관련된 규제완화 등등에 대해서 산업부에서 관계 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외로 나갈 때 뭔가 세제 혜택을 받는 부분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최근에는 WTO와 EU의 규제에 의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 특별히 우대하는 제도는 다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나가든 국내에 나가든 일반적인 법인세를 내는 것이고 일반적인 각종 투자세액공제나 R&D 공제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말씀드리는데, 우리 세제의 경쟁력이 중요하다, 그게 기본적으로 안 나가게 하고 돌아오게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근본적인 경쟁력이 중요한 것이고 거기에 더 붙여서 지방이전, 해외복귀 이런 것에 대해 좀 더 파격적인 지원이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세제를 운영해 나가려고 그러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문 정리를 해서 안을 가지고 다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권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4권 시작하겠습니다.

관련되는 사항을 순서대로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소위 자료 4권 1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관련된 정부안

이 되겠습니다.

현행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는 업종별·규모별·지역별로 차등하여 중소기업이 납부할 세액의 5~30%를 감면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 관련 지원세제 중 가장 일반적이고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 업종 중 하나인 ‘그 밖의 과학기술 서비스업’의 경우에 한국표준산업분류상에서는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으로 서술하고 있어서 좀 혼란이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쪽 아래 표에 보시면 표준산업분류상에는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과 ‘그 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특법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것은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현행 규정에 있는 ‘그 밖의 과학기술 서비스업’을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5쪽, 기술혁신형 M&A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된 김주영 의원님과 정부안이 되겠습니다.

현행법에서는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기술가치를 고려하여 순자산시가의 130% 이상의 대가를 지급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 합병·인수하는 경우에는 그 기술가치금액의 10%를 내국법인의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김주영 의원님 안은 세액공제율을 현행 10%에서 15%로 상향하고, 정부안은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피인수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 주식 등의 취득기간을, 현재는 최초취득일부터 사업연도 말까지인데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말까지로 시행령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세액공제율 상향과 관련해서, 기술혁신형 합병·인수를 통해서 추가적인 실물투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다만 세액공제율 15%는 다른 세액공제들과 비

교할 때 다소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정부는 세액공제율을 현행 10%로 유지하되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기술가치금액을 상향시켜 민간의 벤처투자 촉진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식 등 취득기간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부안에 관련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준지분비율, 즉 50%를 초과하여 피인수법인의 지분을 취득하여야 하는데 21년 세법 개정을 통해서 해당 지분을 해당 사업연도까지 분할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은 최초취득일부터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로 보다 완화하는 것으로서 짧은 기간 내 순차취득이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사업연도가 바뀌는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과세 형평성의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길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15%가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세액공제를 높이는 데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고요.

다만 정부는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조금 더 혜택이라 그럴까요, 인센티브를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발표했고 지금 시행령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식 등 취득기간 확대 문제는, 예를 들어서 12월 달에 주식 취득을 시작했는데 마치는 게 1월 달일 경우는 지금 세제 혜택을 못 받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돼 가지고 그걸 좀 해소하려는 차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태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태호 위원 저는 우리나라의 경제가 지속 성장하는 데 또 청년들 일자리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창업국가를 실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창업국가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벤처에 대한 정책이고 벤처 정책 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게 저는 엑시트라고

봐요. 그러니까 투자를 해 가지고 회사를 만들어서 언제든지 인수합병을 통해 가지고 나갈 수 있어야 결국 창업에 대한 열기를 살릴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국내 혁신형 중소기업 수가 올해 6월달로 보니까 7만 4000여 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인수·합병에 따른 법인세 세액공제 사례를 보니까 2017년이 두 곳, 2018년이 세 곳 정도 되는데 최근 통계는 어떤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혹시 그 통계가 있으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엑시트 과정에서 인수·합병을 통한 엑시트가 11%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기업공개(IPO)를 통해서 하는 게 거의 90% 가까이 돼요. 거꾸로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 한 50~60%가 인수·합병을 통해서 엑시트가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또 IPO를 통해서 엑시트하는 경우가 창업해 가지고 평균 11년 반 정도 걸린다 그래요. 상당히 길다라는 거지요. 이런 걸 놓고 보면 인수·합병을 통한 엑시트가 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인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점에 있어서 저는 정부가 과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제2벤처분 정책이라는 걸 청와대 있을 때 입안한 적이 있었는데 벤처 업계에서 제일 요구하는 것 중의 하나가 뭔가 인수·합병이 좀 원활하게 해 달라는 거예요. 물론 그게 논쟁이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이걸 문어발 확장을 위한 수단으로 또는 대기업 오너들의 편법 상여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벤처생태계가 더 활성화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M&A 시장을 어떻게 활성화하느냐의 문제고 정책적으로 보면 과감한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그런 생각이예요.

실제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보면 인수 금액의 25%를 세액공제로 하고 있는 걸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번 다른 나라하고의 정책도 비교를 해 보시고 실제 지금 M&A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통계적인 부분도 한번 살펴보고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아까 차관님 말씀이 이미 발표도 했고 시행령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는데, 지금 정태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그 부분을

나중에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이 사항은 자료를 가지고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11쪽,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출자에 대한 세제 지원의 홍정민 의원님과 정부안이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정부 모태펀드를 통한 대규모 예산 지원으로 벤처투자의 생태계 외연은 계속 확장되어 왔지만 벤처펀드의 약 2/3가 모태펀드 등 정책금융의 출자를 받아 결성되는 등 아직까지 민간자본의 자생적 유입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16쪽입니다.

2022년 민간자금의 벤처투자시장 유입이 가속화되면서 순수 민간자금으로 결성된 벤처펀드 결성액이 4조 3651억 원으로 모태자펀드 결성액인 3조 8572억 원을 넘어서는 등 벤처투자시장이 민간자금 중심으로 조금씩 변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정부안은 민간 출자금을 모집하여 창업·벤처기업 투자 목적의 개별 자펀드에 출자하는 민간형 재간접펀드인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및 회수 단계별 세제 지원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홍정민 의원님 안은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 제도의 도입을 전제로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에 대한 출자 및 회수 단계별 세제 지원을 규정하는 것이지만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라는 명칭으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앞부분, 정부안과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9쪽입니다.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서 벤처시장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벤처투자생태계에서의 민간 역할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겠습니다. 정부 모태펀드 출자를 받은 벤처펀드의 경우에는 청년창업, 여성기업, 소재·부품·장비 등 정책 목적의 각

주요한 분야에 최소 60% 이상 투자해야 되는 의무가 있으나 민간 벤처 모펀드의 경우에는 정부채권 없이 조성되고 투자 의무 규제가 없으므로 자펀드 포트폴리오의 자율적 구성으로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민간 출자자 모집이 모태펀드에 비해 훨씬 용이할 수 있겠습니다.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출자로 취득한 주식·지분의 양도차익을 비과세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 모험자본이 창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 등에 직접 또는 벤처펀드를 통해서 투자해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개정안은 민간재간접벤처펀드에 대해서도,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로 취득한 창업·벤처기업 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비과세 특례 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으로서 운용사의 벤처모펀드에 대한 출자를 증가시키고 벤처기업으로의 자금 유입 증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겠습니다.

21쪽 두 번째,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입니다.

중소기업창투자 등 전문창투사가 아닌 일반 내국법인이 창업자 등에게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신규 취득하여 출자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 취득가액의 5%를 세액공제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민간재간접펀드 출자에 대해서도 같이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세 번째,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조합이 조합원에게 배당소득 지급할 경우에 조합의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 부과, 조합이 조합원에게 소득 지급 시 조합의 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 의무 부과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개인 출자로 취득한 벤처기업 등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특례 대상에 민간재간접펀드에 대한 출자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4쪽 네 번째,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입니다.

현행법에서는 거주자가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투자하는 경우에 그 투자금액의 10%를 소득공제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개정안은 개인투자자가 민간재간접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출자하는 경우에 출자금액의 10%를 소득공제에 추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이 내용은 먼저 용어하고 또 개념 관련되는 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던 것에 추가하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닌데 기존의 사항들을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해 주시면서 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아까 정태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벤처와 관련해서는, 벤처의 선순환 구조 전 단계…… 그러니까 출자 단계, 운용 단계, 회수 단계, 전 단계에 있어서 굉장히 강력한 나름의 세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 부분은 출자 단계, 초반 투자 단계에 대한 이야기고요.

투자 단계에 있어서 간단하게 큰 틀에서 설명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투자의 주체는 당연히 개인하고 법인이 됩니다. 개인하고 법인이 직접 벤처기업의 주식을 살 수도 있고 아니면 개인이나 법인이 창투사나 조합을 통해서 벤처기업의 주식을 사게 될 겁니다.

그러면 법인의 경우나 개인의 경우나 최초에 그걸 출자를 할 때, 주식을 살 때 아니면 조합에다가 돈을 낼 때 어쨌든 그 돈이 결국은 벤처기업으로 흘러갈 거니까 그 부분 대해서 법인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해 주고 개인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해 줍니다. 일단 투자한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투자다, 그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일단 세금에서 빼 줍니다. 그리고 나서 조합을 통해서 샀건 아니면 직접 벤처기업의 주식을 바로 샀건 거기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이건 개인이건 다 비과세를 합니다. 중간에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일부 부과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결국 다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개인·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벤처기업 주식을 살 때는 일단은 세금의 일부를 공제해 주고 나중에 이익이 났을 때도 과세하지 않는다는 게 현재의 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지원이고요. 그 부분을 이번에 새로 법안을 가져온 것은, 민간재간접벤처

투자조합이라는 게 하나 새롭게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벤처조합에 투자하는 모펀드입니다. 이제 중간에 조합이 두 단계가 된 거지요. 개인이든 법인이든 재간접조합을 통해서 투자를 하고 그게 다시 또 벤처펀드로 가고 그게 다시 또 벤처기업으로 가니까 결국은 큰 돈이 모여 가지고 운용을 하면서 좀 더 많은 벤처기업에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고요.

다만 지원 내용은 기존하고 똑같습니다. 일반 조합에 투자를 하건 재간접 펀드에 투자를 하건 투자할 때는 똑같이 세액공제를 하거나 소득공제를 해 주는 것이고, 마지막에 결국은 투자된 벤처기업이 주식을 팔 때는 그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도 물리지 않고 개인의 경우에는 양도세를 물리지 않고, 지원의 내용은 동일하고요. 다만 중간에 큰 재간접투자조합이라는 하나의 도관이 더 생겼다, 투자기구가 하나 더 생겼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태호 위원 모태펀드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소위원장 류성걸 잠깐만요.

제가 좀 전에 용어하고 개념이라는 게, 여기도 지금 전문위원이 설명을 하실 때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해 주는 펀드를 모태펀드라 하고 그다음에 지금 법이 개정되고 하는 사항은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이라고 해서 이것은 순수하게 민간에서 민간이 자금을 가지고 했던 것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모태펀드, 모태자펀드, 자펀드 그다음에 창투자 등 이렇게 순서대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모태펀드라고 했던 것은 정부가 예산으로 출자를 해서 운용되고 있는 펀드를 얘기합니다. 그 모펀드가 자펀드한테 돈을 나눠서 쏘 주고 자펀드는 또 운용사를 하이어(hire) 해 가지고 기업에 투자를 하는 구조로 운용이 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모태펀드가 어쨌든 재정자금을 통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여기에 의존하는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이번에 법이 하나 새로 제정된 게 기능은 지금 모태펀드랑 같이하는데 조성을 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완전히 민간에서 조성하는 자금으로 펀드를 만들자. 그래서 민간 모펀드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아까 복잡한 용어로, 법률 용어가 되었습니다만.

그러면 이 민간 모펀드가 지금 자생적으로 생길 수도 있는데 안 생긴 이유가 뭔가 인센티브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재정을 넣어 가지고 투자를 하는 구조가 아니라 민간이 민간 모펀드에 돈을 출자하거나 투자를 유인하도록 세제상의 지원을 좀 해 주자 하는 취지로, 민간 모펀드의 근거법은 중소기업부에서 만들었고 이번에 그 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지원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제가 이해하기로는 어쨌든 이제까지 모태펀드라고 했던 것은 예산을 통해서 공공 부문에서 자금이 일부라도 들어갔을 때 그것은 모태펀드라고, 모펀드라고 하고 그다음에 새로이 법이 만들어졌던 것은…… 이름이 너무 길어요. 복잡해요. 어쨌든 이것을 민간 모펀드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그래서 모펀드가 자펀드에, 모태펀드가 자펀드에 투자를 하면 그 자펀드는 다시 창투사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직접 벤처기업에다가 투자를 하는 형태인데, 민간의 자금을 활용한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하는 건데 기존에 있던 관련되는 세제 지원은 똑같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양경숙 위원님.

○양경숙 위원 지금 취지에는 동의하는데요. 세제 혜택의 수준이 문제인 것 같거든요. 정부안하고 홍정민 의원안하고 괴리가 상당히 크잖아요. 지금 홍정민 의원안은 투자금액인 경우에는 15%를 세제 혜택을 주자는 거고 증가분에 대해서는 10%를 주자는 건데 정부는 지금 투자금액은 5%, 증가분은 3%를 주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게 적정하다고 보는 겁니까? 지금 정부안대로 그대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활성화가 안 될 수 있잖아요. 취지가 살려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소위원장 류성걸 답변하십시오.

○기획재정부제실장 정정훈 기본적으로 모펀드하고 자펀드, 지금 있는 일반적인 펀드하고 어쨌든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기능은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좀 더 큰 돈이 모여 가

지고 제대로 투자할 수 있는, 아까 차관이 설명한 정부 자금에 기대지 않는, 그래서 1000억 단위의 펀드가 지금 막 결성 단계, 준비 단계에 있고요. 기본적으로 큰 차이 중의 하나가 출자금이 1000억 이상이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큰 금융기관들이 직접 또는 두세 개가 모여 가지고 일단 1000억을 만들어서 출발을 할 계획이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세제 지원을 어느 정도까지 할 거냐의 문제인데 저희들이 판단을 했을 때는 어쨌든 개인이 내든 법인이 내든 여기에다가 또 너무 높은 금액으로, 높은 수준으로 여기만 더 큰 특혜를 주면 당연히 다른 쪽으로는 안 가고…… 일반 벤처펀드라 해 가지고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좋은 역할을 하고 거기도 충분히 육성을 해야 되는데 이 둘 차이가 너무 커서는 안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다 똑같이 지원을 하는데 다만 한 가지 조금 차이가 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증가분에 대해서도 여기는 시행 초기니까 조금 해 주겠다 그 차이만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공제율은 일반 펀드하고 동일하게 하는 게 저희들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길 정태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태호 위원 잘 이해가 안 돼서 제가 물어보는데요.

모태펀드는 정부가 출자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모태펀드에 있는 돈을 가지고 50% 하고 민간 50% 합해서 자펀드가 만들어지잖아요.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는 건데 지금 이것은 누가 돈을 내는지는 모르지만 민간이 돈을 만들어 가지고 일종의 민간 모펀드를 만드는 거잖아요, 모태펀드를.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자펀드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나는 그걸 뭘 복잡하게 가는 지……

왜냐하면 민간들이 투자한, 출자한 다양한 펀드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들이 직접적으로 다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 민간 모태펀드를 만들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것도 세제 혜택까지 주면서?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이런 겁니다. 지금 정부가 재정을 넣어 가지고 하는 모태펀드도 사실은 같은 게 있는 거지요. 무슨 말씀이나 하면 재정을 넣는다는 것은 다르지만 거기다 그냥 펀드가 개별적으로 자펀드에다가 넣어 주면 되는데

왜 모태펀드가 필요하냐 하는 이슈가,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비슷한 이슈가 나올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자펀드들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어떤 특성, 섹터에 투자를 하거나 어떤 특정한 분야에 투자를 하는 특성을 가진 자펀드로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투자하는 운용사들이 어느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데다가 그걸 맡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정부가 재정을 넣느냐 민간이냐를 떠나 가지고 모펀드·자펀드 구조는 시장에서 그 니즈가 있습니다. 모펀드는 그 섹터들의 수익을 어느 정도 다 평균을 낸다고 그럴까요, 그것을 향유하고자 하는 수요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거고, 다만 그동안은 자금의 기본 소스를 정부가 넣어 주는 구조였다면 이제는 우리도 시장이 조금 더 민간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취지에서 민간에서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펀드가 만들어질 수 있는, 시장에서 만들어지고 있고요. 여건은 분명히 되어 있는 거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굳이 왜 민간에서 직접 할 수 있는데 모펀드를 만드냐? 시장에서 그걸 원합니다. 그런 니즈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유로.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조금 차이를 말씀드리면 금액을 크게 해야 된다는, 어떻게 보면 1000억 이상이라는 허들이 하나 있고요. 거기서 조금 더, 혜택은 아니고 규제 완화된 측면을 보면 기존의 자펀드들, 일반 펀드들은 창투사만이 운용할 수 있는데 1000억 이상 되는 큰 펀드들은 자산운용사나 증권사가 직접 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태호 위원 저거는 있어요. 뭐냐 하면 스케일업 펀드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금융기관들이 돈을 모아 가지고 펀드를 만들어서 그 목적에 특별하게 투자를 하는 그 펀드가 일종의 정부 정책에 의해서 만들어졌지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이미 다양한 펀드들이 조성돼 있고 그 펀드들에 의해서 민간에 투자가 되는 건데 이 위에 또 뭘가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세제 혜택까지 주면서 한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하여튼 그런……

○전문위원 김경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개별 자펀드에 투자하면 그 투자자의 포트폴리오 관리를 투자자가 직접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에

대한 모펀드가 있다고 하면 그 모펀드가 개별 자펀드들의 포트폴리오 관리를 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포트폴리오 관리에 대한 위험성을 줄이면서 모펀드가 그 역할을 하니까 거기에 투자하는 게 위험 관리를 할 수 있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정태호 위원 취지는 뭔지는 알겠는데 2개의, 옥상옥을 만들어 가는 것 같은 느낌, 차라리 기존에 있는 펀드들을 세제 혜택을 잘 주는 게 낫지. 하여튼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제가 왜 우려하는 거냐 하면 지금 모태펀드를 소위 민간투자 중심으로 간다라는 논리로 모태펀드 출연을 계속 줄여 왔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시기상으로 보면 지금의 벤처 시장에 있어서 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투자가 잘 안 되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 오히려 모태펀드가 마중물 역할을 해 주는 게 더 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는데 그냥 시장 논리라는 것의 도그마에 빠져 가지고 기존의 모태펀드가 하던 긍정적 역할을 점점 줄이면서 새로운 걸 뭔가를 억지로 만들어 내려고 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모태펀드에 대한 예산 출자 규모가 올해는 전에 비해서 조금 줄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정태호 위원 4500으로 는 것은 알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늘어났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차관님, 실장님, 지금 이게 기본적으로는 모태펀드에서 자펀드로 가고 자펀드에서 창투사를 통하든지 또는 바로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는 이런 형태는 좋은데 이런 형태의 간접투자가 계속되면, 물론 모태펀드가 직접투자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 세제가 중복으로 계속 지원이 되는 겁니다, 동일한 이론에 대해서. 바로 투자를 하면 세제 혜택을,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 주식 또는 출자금 양도 이익에 대해서, 양도차익에 대해서 한 번만 세제 지원을 하면 되는데 이게 여러 번 겹칠수록,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도 두 번 세 번씩 지원해 주는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정정훈 그건 그렇지는 않

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들어 보십시오. 지금 현재 개념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전에 정태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어차피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건데 왜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물론 시장의 니즈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지금 워낙 금융기법이 금융공학적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맞는데 세제 지원 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지만 사실은 단순한 거예요, 그게 확대만 된다 이런 것뿐이기 때문에. 그런데 세제 지원의 경우에도 두 번 세 번 세제 지원을, 똑같이 투자했을 때에 최종적으로는 세제 지원은 한 번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정정훈 위원장님 취지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 현행 규정도 그래서 투자 단계에서의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는 처음에 투자할 때, 그게 조합이 됐건 모태가 됐건 펀드가 됐건 창투사가 됐건 벤처기업이 됐건 어쨌든 처음에 돈이 한 번 나갈 때 그때 한 번 딱 해 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돈이 중간 단계를 거치면 바로 직접 벤처에 가든 그 단계에서는 추가적인 혜택은 전혀 없고요. 그리고 양도차익도 결국은 마지막 주식이 팔릴 때 딱 한 번 해 줍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루프를 봐서는 단계별로 계속 비과세도 되고 세액공제도 되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최종적인 투자는 창업기업이나 창업자 또는 신기술 사업자에 투자되는 게 중요한 거지 중간에 있는 건 전부 다 하나의 도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도관을 거칠 때마다 세제 지원을 해 줘서, 중복 세제 지원 형태는 안 된다는 게 제 말씀이라는 겁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정정훈 저희도 유념하고 제도 운영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기획재정부제1차관 정정훈 전혀 문제없이 잘 돼 있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하여튼 문제없이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정정훈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그래서 민간의 자본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취지에서는 모태펀드, 그

러니까 공공자금이 들어가는, 예산이든지 또는 다른 우리 국책금융기관이든지 했던 것은 관계없는데 그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복잡하지만 사실은 내용에 관련된 사항은, 원리에 관련된 사항은 기존에 있던 것을 확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사항을 추가적으로 확실히 하고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26쪽입니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를 확대하고자 하는 15건의 의원발의안과 정부안이 되겠습니다.

현행법의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프로그램 및 영화의 제작비용의 3~10%를 세액공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 세법 개정에서 OTT에 대해서도 공제 대상으로 추가한 바 있습니다.

30쪽입니다.

16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제율을 상향하고 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적용기한을 연장 또는 삭제하는 내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32쪽입니다.

먼저 공제 대상 확대입니다.

영상콘텐츠를 음악콘텐츠로 확대하거나 문화콘텐츠로 확대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음악콘텐츠나 고위험·고수익 성향을 가진 콘텐츠 산업 전반에 대한 제작비용으로 세액공제를 확대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콘텐츠 생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만화·게임 등은 영상콘텐츠에 비해서 한국 문화에 대한 이미지 제고 효과, 촬영지 관광객 유치 등의 효과가 불명확하며 R&D 세액공제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책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다큐멘터리를 교양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방송법에서는 방송프로그램을 보도, 교양, 오락,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고 방통위는 교양을 세부적으로 시사정보, 다큐멘터리, 생활정보, 토론, 교육·문화예술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교양 분야의 영상콘텐츠 세액공제는 이 중 다큐멘터리로 한정해서 적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개정안은 시사정보, 교육·문화예술 프로그램 등을 포함하는 교양 분야 전반으로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교양 프로그램의 제작을 활성화하고 고품질의 콘텐츠 생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영상콘텐츠를 한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한류를 확산시키고 그로 인한 긍정적 외부 효과를 얻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는데 교양 프로그램이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둘째, 미국 영국 등 주요국에서도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은 뉴스·시사·토론·퀴즈 등의 교양 프로그램 대부분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셋째, 어린이 TV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영국 등의 사례를 비취 볼 때 교양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보다는 파급효과가 있는 교육·문화예술 등의 교양 프로그램으로 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36쪽, 셋째, 영상콘텐츠 제작이 아닌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콘텐츠 플랫폼의 국내 시장 영향력 확대와 고비용 구조의 고착화 등으로 국내 콘텐츠 기업의 자금 부족이 심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콘텐츠 산업 투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프로젝트 투자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변재일 의원님 안의 경우에는 영상콘텐츠에 대한 투자에도 제작과 동일하게 현행보다 상향된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고, 유정주 의원님 안은 OTT를 제공하기 위하여 영상콘텐츠의 제작에 투자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현행과 같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첫째, 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해서는 리스크를 감수하고 투자하는 제작비 투자자들의 역할도 중요하므로 이들의 참여와 확대를 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콘텐츠 산업은 타 업종에 비해서 정책자금의 투자 비중이 높아서 공공 부문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겠습니다.

셋째, 국내 OTT 플랫폼은 글로벌 OTT 대비 규모적으로 절대 열세에 있으므로 내국법인인 OTT 플랫폼사업자의 콘텐츠 제작 투자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영상콘텐츠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가 아닌 문화산업전문회사를 통한 투자의 경우에 3%의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있는 정부안도 있으므로 함께 고려해서 정책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38쪽,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를 상향입니다.

의원안은 기업 규모에 따라서 현행 공제율에서 5~20%가량 공제율을 상향시키고 있고, 정부안은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에서 15%로,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7%에서 10%, 대기업의 경우에는 3%에서 5% 각각 상향 조정하고, 국내에서 발생한 제작비용이 총 제작비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해서 제작비용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 공제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콘텐츠 산업은 고성장 산업으로서 청년 종사자 비율이 타 업종 대비 높아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 현행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는 외국 사례와 비교해 낮은 수준이므로 경제 규모와 물가 상승 및 환율 효과 등으로 인해서 입법 취지에 상응하는 산업적 파급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0쪽입니다.

다만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제도 시행 이후 짧은 기간 내에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했다는 점과 타 산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정책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 삭제 또는 연장과 관련해서는, 해당 특례의 타당성·효과성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주기적 평가를 위해서는 적용기한이 필요하다는 점과 적용기한이 만료되는 25년에 심층평가를 거쳐서 제도 연장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참고로 이 항까지 심사를 하고 오전 회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도입의 취지는 여러 의원님께서 법안을 낸 것 보면 다들 공감하신다고 보고요.

32페이지입니다만 검토의견 중의 하나하나에 대해서 저희들 정부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니다.

공제 대상 확대 관련해서, 음악콘텐츠나 문화콘텐츠를 확대하자는 의원 입법안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문화콘텐츠 중에 특히 제일 이슈가 되고 있는 게임, 만화, 출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영상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한류의 확산 또는 우리 콘텐츠의 경쟁력 제고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떨어지지 않느냐, 파급 영향이 적지 않느냐 하는 측면이 고려됐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게임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게임의 경우는 지금 R&D 세액공제로 상당 부분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영상콘텐츠의 경우는 거의 R&D 세액공제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작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좀 특별히 해 주겠다는 취지인데, 그래서 이걸 일단 시작은 좀 좁혀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정부 입장이고요.

두 번째로 다큐멘터리 부분에 있어서, 교양 프로그램까지 확대하자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취지가 우리 콘텐츠의 경쟁력을 높여서 해외로 나가는 데, 진출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취지로 봤을 때 일반 건강이나 이런 정도까지를 포함하는 교양 프로그램까지 넓혀서 시작하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36페이지에 영상콘텐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관련해서, 세액공제율이 좀 많이 다릅니다. 다른데 사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 수준에서 정부안이나 큰 차이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방법에 있어서 그냥 기본공제율을 많이 주는 것보다는,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에서 제작하는 비중이 높고 국내의 어떤 긍정적인 후방효과, 전방효과가 있는 요건을 갖췄을 때 추가로 더 주는 방식이 더 효과적이고 다른 나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행령에서 그 요건을 정하기 위해서 문체부하고 협의 중인데 그런 방식으로 해서 지원하면 국내에 대한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궁극적인 세액공제 효과는 여러 의원님이 내신 안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 연장·삭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적용기한이 25년에

들어오기 때문에 내년에 심층평가를 해서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정부의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장혜영 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장혜영 위원 차관님, 이 조세특례의 큰 취지는 여전히 콘텐츠에 의한 한류 확대라고 정부는 생각하고 계시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장혜영 위원 그런데 저는 그 취지나 방향성 자체는 좋은데 방법론에 있어서 이견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대부분의 제작사들은 사실 외주 중소기업 제작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런 콘텐츠를 만드는 데 가장 필요한 정부의 지원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말씀해 주십시오.

○장혜영 위원 IP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제작을 열심히 해 봐도 결국에는 그 제작비를 스스로 충당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형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대형 제작사들 아니면 아예 넷플릭스처럼 배급과 제작을 동시에 하는 데들에게 투자를 받아서 만들 수 밖에 없고, 그런데 그렇게 투자를 받는 조건이 IP를 넘기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정말 이름만 대면 다 아는 ‘킹덤’이나 ‘우영우’ 이런 작품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킹덤’은 그렇게 대박을 쳤지만 IP가 제작사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걸 통한 추가 수익은 제작사에게 오지 않았습시다.

‘킹덤’을 만들었던 제작사가 그다음에 ‘우영우’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우영우’를 만들었을 때 ‘킹덤’ 때문에 피 났던 것이 너무나 큰 교훈이 되어서 이분들이 배급은 넷플릭스하고 했지만 IP 문제는 스스로 해결을 했고, 역시 IP 문제 때문에 국내의 내로라하는 채널들하고 계약을 한 게 아니라 채널 ENA라고 하는 비교적 신생의 작은, IP를 제작사가 스스로 소유할 수 있는 곳이랑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작사들이, 특히나 이렇게 영상 콘텐츠에 있어서 한류를 확산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다양성을 보여 주기 위해서는 이런 제작과 배급의 수직계열화를 좀 방지하고 그리고

이 제작사들이 IP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방식의 지원이 지금 콘진원을 통해서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방향의 재정 지원이 사실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아니면 금융 지원이고요.

이렇게 세액공제 제도가 운용된 실상을 보면, 사실 2020년도 기준으로 보면 공제액 절반이 12개 대기업한테 갔고 나머지 15%는 중견기업 2개, 나머지 35%는 중소기업 31개가 다 가져가서 사실상 혜택이 대기업들에게 많이 귀착이 됐습니다. 21년도를 보면 이런 경향이 더 심화돼서 전체 세액공제액의 3분의 2가 대기업, 중소기업에게는 단 10%만 귀착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과적으로 이미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투자 여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대형 제작사들에게 실질적인 귀착이 가는 제도라고 한다면 아무리 이 취지가 좋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그런 대형 제작사들에 의한 중소 제작사들의 수직계열화를 결과적으로 더 촉발할 수도 있는 안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논의 자체가 필요하다고는 봅니다만 저는 좀 더 신중하게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영상 제작자 전력을 가지고 있는 위원으로서 강한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다음은 배준영 위원님 말씀하시고, 그다음에는 양경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배준영 위원 답변 따로 안 받으시고 그냥……

○소위원장 류성걸 같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배준영 위원 차관님, 제가 이 성격을 보니까 일반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설비라든지 투자세액공제를 통해서 혜택을 주는데, 이런 영상콘텐츠 관련해서는 대부분 인건비 아니겠습니까. 인건비니까 같은 형평성의 차원에서 하자라는 취지로 2017년도에 시작된 것 같고 그리고 더군다나 이런 영상콘텐츠 쪽에는 젊은 청년들이 많이 종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을 고용 창출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 장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도 하셨는데 사실은 전체적인 규모를…… 그런데 제가 보면 매출액 10억 원 미만 사업체가 전체 사업체 수의 63.9%고요. 전체 영상콘텐츠 사업 61.4%가 종사자 10인 미만인 반면에 종사자 50인 이상 사업체는 전체 산업의 8.4%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대기업한테

이익도 가지만 분명히 중소 콘텐츠 산업에도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이 영상 콘텐츠가 우리나라만 만들고 자국에서만 소비되는 게 아니라 국제적으로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미국 캘리포니아라든지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우리나라랑 경쟁하는데는 20%, 25%인가요, 심지어는 30%까지 가고 있는데, 물론 아까 말씀하신 국내에서 제작하는 콘텐츠에 한해서 무슨 추가적인 이런 걸 방법을 모색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근본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는 뚜렷한 기동 같은 생각이 있어야지 나중에도 정해지지, 이렇게 소액으로 구색 갖추기만 해 갖고는 우리가 경쟁력을 찾을 수 있나 하는 게 첫 번째 생각이구요.

그리고 이것 지금 25년도에 일몰이 되기로 돼 있는데 26년까지 한 게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영화 제작이라는 게 그냥 식당에서 뭐 만들어 내듯이 하는 게 아니고 기획을 하고 이것을 준비하고 하는 데, 영상콘텐츠 제작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사오 년, 길게는 칠팔 년이 훌쩍 넘어가는데, 이 세액공제를 보고 희망을 가졌던 기업들도 있는데 25년도에 이렇게 일몰하게 되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26년도까지 좀 늘렸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류성길 양경숙 위원님 말씀하시고 정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숙 위원 한류 확산 취지와 관광 수출에, 영상콘텐츠 제작에 세제 혜택을 주는 게 필요하다고는 보는데요. 한류 확산이 왜 영상을 통해서만 돼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구요.

또 영상만큼 효과적인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한류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영상만이 아니고 음악 부분에서 굉장한 성과를 두드러지게 보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쪽에는 전혀 혜택을 주고 있지 않고, 게임 산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장혜영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기본공제를 해 주는 게 거의 대기업에 치중이 되고 있거든요. 그 혜택이 결국에는 대기업에 가장, 50% 이상이 가고 있는데 왜 영상만 이렇게 계속 지원해야 되는가. 오히려 세제는 그대로 놔두고, 왜냐하면 대기업에 치중,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더 그런데요. 세제 비율은, 그 세 비율은 그냥 놔 두고 영역을 확대하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한 한류 확산 아닌가. 그래서 음악이나 게임 쪽으로 확대를 시켜야 되는데 세제 혜택을 계속 높여 주겠다, 대기업은 2% 높이고 중소기업은 얼마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하면 지금의 구조가 더 강고하게 되고 대기업이 영상 부분에서 혜택을 더 많이 받아 가는 것이 더욱 고착화되는 것 아닌가. 그러면 한류의 확산이라는 취지에도 점점 부응하지 못하는 그런 정책적인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오히려 대 전환을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류성길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제가 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상세한 건 또 세제실장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IP 문제는 저도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그건 좀 다른 측면에서 제도개선이나 지원을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마 하고 있을 텐데, 그런데 그거와 함께 세액공제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의 필요성 그리고 다른 나라와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최소한 세제상으로 너무 불공평한 운동장이라 그럴까요, 그렇게 계속 두는 것은 경쟁력 유지 차원에서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는 취지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이 혜택이 주로 대기업이 받는 것 아니냐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통계 기준이 어떻게 되고 하는 부분을 조금 챙겨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가진 기준으로 보면, 최근 3년간 신청 건수로 보면 중소·중견기업이 한 90%입니다, 최근 3년간. 금액은 아무래도 적을 수밖에 없구요. 세액공제액 기준으로는 저희들이 가진 자료로는 중소·중견기업 비중이 한 46% 됩니다. 그러니까 중소·중견기업들이 생각보다는 상당히 많은 혜택을 지금까지 받고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 이번에 세액공제율도 차등을 뒀기 때문에 제도가 바뀌면 조금 더 개선하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배준영 위원님 말씀 주신, 기본공제율을 좀 올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20%, 25% 이렇게 할 경우에도 요건 자체가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 자기

주에서 만들라든지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국내 기준이 기본적으로 있는 상태에서 20%, 25%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제도가 만약에 기본공제율 부분을 빼고 똑같이 기본공제율을 20%, 25%로 가는데 외국처럼 그냥 주로 국내에서 한 것만 혜택을 받게 하는 방법을 택할 거냐, 아니면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보다는 더 혜택을 주면서 또 추가적으로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 입법 기술적인 측면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양경숙 위원님의 ‘대상을 확대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하는 말씀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많이 확대를 할수록 좋지요. 그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한된 재원을 어디다 효과적으로 쓸 거냐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22년에 조사된 겁니다. 문화콘텐츠 한류영향계수라는 게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조사 결과를 받아 봤는데, 이게 높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런데 방송이 85.4, 영화가 73.5 이렇습니다. 그리고 게임이 높기는 한데 65.8, 만화 67.2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선에서 그을 거냐 하는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 영향력에 있어 가지고는 방송·영화 부분이 우선적으로는 크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아까 배준영 위원님 말씀 주신 취지도 마찬가지로인데, 영상 제작과 관련해서는 시설이 있을 수도 없고 R&D 세액공제도 받을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특별히 조금 더 해 줘야, 기존의 제도로 혜택을 못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게임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더니 이게 디지털 콘텐츠 기술을 이용하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리가 세액공제를 더 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게임 이런 부분은 R&D 세액공제로도 상당히 좀 받아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했다는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혜영 위원 차관께서 제가 말씀드린 걸 약간 잘못 이해하신 부분이……

○소위원장 류성걸 아, 그래요?

장혜영 위원님.

○장혜영 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설명을 조금 부족하게 드린 것 같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조세지출을 통한 세액공제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장혜영 위원 그런데 저는 대기업 그리고 상대적으로 소수의 제작사들에게 이런 방식으로 조세지출이 되는 예산이 사실은 직접적인 중소 제작사의 제작 지원으로 가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같은 돈을 지원하더라도 실제로 무엇이 정말 우리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느냐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창의성을 지원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하지만 대형 제작사들의 경우에는, 이미 우리가 영화 산업의 수직계열화를 경험하면서 알게 됐지만 결국에는 감독이 작품에 대한 주도권을 갖는 게 아니라 제작사가 작품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감독의 창의력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생태계를 망쳐 왔던 걸 저희가 이미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OTT 생태계로 바뀌었다고 해도 그 구조는 사실 지금도 여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차피 훨씬 더 대기업들에게 많이 귀착이 되고 있는…… 절반, 40% 정도가 중소기업사들이라고 얘기는 하셨지만 그 말 뒤집으면 절반 이상은 대기업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럴 수 있는 우리의 조세지출 여력이 있다면 저는 그것을 중소 제작사들에게 직접 지원을 하든, 직접 지원이 어렵다고 한다면 제작비 대출 지원을 하든 그런 방식으로 해야 이 정책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데 아마 문체부 쪽에서 비슷한 지원들을 하고는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이번 세법 개정 내지는 정부의 예산안을 통해서 실제로 그런 중소 제작자들을 지원하는 예산과 사업과 그리고 이 예산 사이의 비교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이렇게 합시다.

이것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정리를 하고, 특히 공제 대상 확대와 세액공제율 관련된 사항들은 아마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

고용진 위원님.

○**고용진 위원** 이것은 논의를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소위원장 류성걸** 예,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고용진 위원** 그러면 하나만, 질문만 좀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말씀하시고요.

고용진 위원님 말씀하시고, 아까 차관님 말씀하셨던 영상콘텐츠 투자에 관련되는 세액공제 이것은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으니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거를 자료를 주시고.

고용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용진 위원** 저는 질문 하나……

정부안이 국내 제작비용 비중에 대해서 추가 공제를 한다는 거고, 아까 배준영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답변하신 것 보면 다른 나라들의 공제율이 높은 것은 그런 국내 제작 비중이 들어가 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그 요건으로 높다는 얘기입니다.

○**고용진 위원** 이미 거기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고용진 위원** 우리는 이제 그걸 넣겠다는 건데, 그 기준이 어떻게 좀 마련된 게 있어요? 시행령으로 기준을 정할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지금 문체부하고 협의 중인데요. 조금 좁혀진 안은 있습니다, 확정된 건 아니지만.

○**고용진 위원** 그런 걸 좀 보고해 주세요, 위원님들 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그렇게 하시지요.

양경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경숙 위원** 한류 문화와 관련해서 영향력 지수가 영상 쪽이 높다는 것은 어쨌든 당연하지요.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다른 데는 지원 안 하니까 낮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 다른 데도 지원해 보세요, 다른 분야에도. 영향력이 확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영역을 넓히지 않고 영상에 계속 한정하겠다는 거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영상 쪽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강력하게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나머지 음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정부 쪽에 적극적으로 입장을 개진하지

않으니까 이런 정책을 펴고, 이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어떤 이해당사자들이 와서 민원을 내거나 업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라고 요구하면 그쪽으로 확 쏠리고 나머지 얘기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든지 그러면 아예 무관심하거나 방치하는 이런 방식으로 정책을 펴서는 안 된다 그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양경숙 위원** 뭘 안 그래요, 안 그러기는.

○**소위원장 류성걸** 오늘 열띤 토론으로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 반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류성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다음 항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41쪽, 5번입니다.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특례를 신설하는 정부안입니다.

문화산업전문회사는 문화산업 분야의 특정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는 특수목적회사로서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유치하여 직접 프로젝트를 수행하되 자금 흐름과 회계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프로젝트 부분과 자금관리 부분을 각기 다른 회사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통상 프로젝트 완성과 더불어 해산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 및 사원, 주주에게 배분하는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문화산업전문회사는 기존 투자시스템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프로젝트 투자자금 흐름의 투명화, 자금 및 회계의 독립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되었습니다.

23년 11월 현재 등록된 문화산업전문회사는 725개고 이 중 315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43쪽입니다.

개정안은 중소·중견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금액의 3%를 세액공제하는 것으로 공제 대상, 적용기한 등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동일하고 유인효과에 비해 세수감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대기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개정안은 국내 콘텐츠 기업의 약 90%가 중소기업으로 제작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투자 인센티브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문화산업에 대해서만 세제 지원을 할 경우 다른 업종의 특수목적회사들과의 형평성에 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둘째, 세액공제 대상을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인투자자의 투자까지 세액공제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개인투자자가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 일정 비율에 대해 소득공제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셋째, 최저한세와 관련한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최저한세의 취지에 비추어서 동 특례조항에 대해서도 최저한세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와 함께 이월공제에 관한 규정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앞서 영상콘텐츠에 대한 지원하고 일맥상통하는 내용으로 저희 정부안 준비했구요.

참고로 앞서 논의했던 것 중에 변재일·유정주의원님께서 영상콘텐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자는 안을 제안하셨는데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자금의 투명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화산업전문회사를 통한 투자에 대해서만 우선 세액공제하는 제도를 통해서 콘텐츠에 대한 투자 유인을 좀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수 위원 전문위원이 지적한 대로 개인은 소득공제가 되나요? 세액공제가 되나요, 개인이 투자했을 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정부안에서는 일단 개인은 뺐구요.

○유동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인은 소득세 쪽에서 얘기할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개인은 소득세 쪽에서…… 하여튼 지원 대상에서 지금 빠져 있습니다.

○유동수 위원 뺐습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예.

○유동수 위원 그런 이유는 뭐예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일단 개인의 경우에 지금 실적을 보면 사실 숫자가 거의 없고요.

○유동수 위원 별로 없어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예, 그리고 굉장히 위험이 큰 부분인데 벤처의 경우에는 어쨌든 많은 사람들을 벤처에, 소액이든 거액이든 투자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문화산업전문회사까지, 굉장히 위험성이 큰 산업에 정부가 세제 지원을 하면서까지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유동수 위원 약간 논리가 안 맞네. 그것은 논리가 좀 안 맞기는 한데 어쨌든 비중이 크지 않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21년의 경우에 0명입니다.

그리고 최저한세 부분은 저희들이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최저한세를 어떻게 하려고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최저한세 대상으로 넣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소위원장 류성걸 그러면 최저한세에 걸리도록 하자 이런 이야기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이 부분은 좀 전에 세제실장님 말씀대로, 위험부담이 있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은 또 다른 것이고 판단은 개인이 하실 것이고, 저는 대상에는 개인까지 포함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현재 세제 지원이 없기 때문에 꼭 그렇다고 생각은 안 듭니다만 어쨌든 이 특성상 개인투자는 사실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 한번 저희들이 점검해 보겠습니다. 개인까지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 것인지 한번 점검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이렇게 합시다. 개인은 검토를 하시고.

지금 여기에 이월공제 관련된 사항도 같이 제기를 했습니다. 이월공제 관련해서는 어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최저한세하고 이월공제는 한 세트니까요, 한 세트 다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항은 개인에 관련된 사항을 추가적으로 검토하기로 하고 계속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6번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등 이전 시 법인세 등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의원님 안과 정부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및 세종특별자치시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종전부동산 매각에 따른 양도차익을 5년 거치 후 5년 분할 익금산입할 수 있도록 과세이연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동 제도는 올해 말 일몰 예정이 되겠습니다.

47쪽입니다.

22년 12월 전체 이전 대상 공공기관 151개의 이전이 완료되었습니다. 다만 대규모 종전부동산은 매각전략 이행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해서 이전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부동산 중 매각이 완료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10월 기준으로 미매각된 이전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은 4개소로서 매각예정금액은 약 8431억원 수준입니다.

48쪽입니다.

양도차익 과세이연 특례에 대한 적용기한을 25년 말까지 2년 또는 정부안은 3년 연장하고, 김형동 의원님 안은 도청이전신도시를 특례가 적용되는 공공기관 이전지역에 추가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이전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겠습니다.

다음 49쪽, 도청이전신도시를 추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혁신도시를 제한적으로 지정·육성해서 거점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과도한 거점 확대는 정책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도청 이전은 혁신도시로의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의 취지와는 상이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아직 매각하고 이

전을 완전히 안 한 데가 있기 때문에 적용기한은 한 3년 정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대상 이전지역으로 도청이전신도시까지 넣는 부분은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는 제도의 취지하고 조금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용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의견 없으시면 정부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정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7번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적용기한 연장하고자 하는 의원님 안과 정부안이 되겠습니다.

53쪽입니다.

현재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현행법상의 특례조항은, 첫 번째 조합원이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 또는 이월과세하고, 두 번째 법인소득의 원천에 따라서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하고, 세 번째 조합원·출자자에 대한 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의 원천에 따라서 배당소득세를 면제하거나 분리과세하고 있습니다.

다음, 55쪽입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의 면제 등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6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공통적으로 규정하면서, 정부안은 이에 더해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 중에서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법인의 경우에만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적용기한 연장과 관련해서는……

56쪽입니다.

최근 5년간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법인당 매출액 및 종사자 수는 감소 또는 정체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들 법인의 기업화 및 규모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세제 지원이 지속될 필요가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58쪽, 농어업경영정보 등록요건 신설과 관련해서는, 농어업경영체법은 농어업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농어업경영체 등록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생산수단, 생산물 등 농어업경영 정보를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경영정보 등록에 대한 유인체계를 마련하고 개별 법령에서는 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각종 재정사업,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 시행령도 또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이에 대해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판결에 따라서 시행령이 아닌 법에 경영정보를 등록하도록 요건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길 차관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대법원 판결에서, 지금 시행령에서 등록하도록 한 조합의 법인에 대해서만 이 감면 혜택을 주는 부분이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데 대법원에서 이게 위임의 근거가 없다 하는 부분 때문에 올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적용기한 연장하는 부분은, 아직 지원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3년간 연장하는 안을 준비했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양경숙 위원 정부안에 찬성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길 정부안으로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적용범위를 합리화하고자 하는 정부안입니다.

62쪽입니다.

현행법에 따른 동업기업 과세특례는 동업기업을 도관으로 보아서 동업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동업기업 단계에서는 과세하지 않고 이를 구성원인 동업자에게 귀속시킨 다음에 동업자별로 과세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63쪽입니다.

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은 인적회사 성격의 단체로서 민법상 조합, 상법상 합자·합명조합, 상법상 합자·합명회사 그다음에 전문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법인 등이 이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본시장법상의 기관전용 사모펀드(기관전용 PEF)는 동업기업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 자본시장법에서는 한 개의 기관전용 PEF가 다른 기관전용 PEF에 대한 재간접투자 방식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행 조특법에서는 이 경

우 두 개의 기관전용 PEF 모두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고 두 개 중 하나만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64쪽, 그런데 21년에 자본시장법 개정에서 기관전용 PEF가 다른 기관전용 PEF에 대한 재간접투자 방식이 허용되었고 이에 따라서 동업기업과세특례에서도 수직적 중복적용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정안은 기관전용 PEF에 한해서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중복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세특례가 허용되는 기관전용 PEF를 ‘상위 동업기업’ 그리고 상위 동업기업으로부터 출자를 받은 동업기업을 ‘하위 동업기업’으로 지칭하고 하위 동업기업 소득에 대해서 상위 동업기업인 기관전용 PEF의 출자자 단계에서만 소득·법인세를 과세하게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5쪽 그림에서 보시면, 출자관계에 있어서는 맨 위의 거주자 a들이 A PEF에 동업자로서 출자를 해서 A PEF가 동업기업이 되고 그 동업기업이 B PEF의 산하의 동업자로서 다시 참여하게 될 경우에 오른쪽과 같이 수익을 배분할 때 동업기업 과세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6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개정된 자본시장법 규정에 맞춰서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고 투자기구 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조치로 보입니다. 특히 지금 정책자금을 마중물로 해서 민간자금을 유치하여 구조조정 기업에 투자하는 정책펀드인 기업구조혁신펀드가 기관전용 PEF의 재간접투자 형태로 운용되면서 정책펀드가 향후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를 방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업구조혁신펀드 1호부터 3호 같은 경우에는 투자신탁 형태로 운용됐기 때문에 동업기업 과세와 문제가 없었지만 4호의 경우에는 재간접투자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해결하는 취지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길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전문위원이 취지를

충분히 잘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게 21년에 자본시장법 개정이 되면서 그동안 허용이 안 되던 재간접방식, 아까 모펀드·자펀드하고 비슷한 방식입니다. 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서 세법도 거기에 맞춰서 좀 조정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잠정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9번 금융기관의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시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정부안입니다.

신용회복목적회사란 금융소외계층의 신용회복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는 기재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으로 현재 국민행복기금과 새출발기금이 있습니다.

68쪽입니다.

국민행복기금은 저신용자에 대한 부실채권 매입, 금리·만기 조정, 지급보증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22년까지 채무조정 및 저금리전환사업을 통해서 약 143만 명을 지원하고, 햇살론 등을 통해 저신용자 등에게 3조 8964억 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함으로써 금융소외자의 극빈층 전락을 방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단의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부실 또는 부실우려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위해서 22년 10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23년 10월 말 기준으로 채무조정 신청인원이 4만 845명, 채무액은 6조 4306억 원 규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69쪽입니다.

현행법에서는 금융기관이 2009년 말까지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부터 잔여재산을 반환받아 신용회복목적회사에 출자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출자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금융기관이 자발적으로 출연한 실적은 미비해서 2021년에 캄코가 신용회복목적회사에 출연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손금산입 특례로 개편하였고 금융기관은 특례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습니다.

70쪽입니다.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신용회복목적회사가 손실보전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였을 때에 그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손실이 발생

한 경우 그 손실을 손실보전준비금과 먼저 상계하도록 하고 상계하고 남은 준비금의 잔액은 적립 15년 후에 익금 산입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해서 신용회복목적회사의 법인세 과세 문제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72쪽입니다.

그래서 국민행복기금은 14년간 총 1614억 원의 법인세를 이연해서 서민금융에 활용한 바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신용회복목적회사에 출연한 금액에 대한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대상에 캄코 외에 ‘금융기관’을 추가하고 신용회복목적회사의 손실보전준비금 계상을 통한 손금산입 특례의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 금융소외계층 지원의 정책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측면에서 타당한 조치로 보입니다.

최근 은행권은 취약계층 등을 위해 10조 원 이상의 자금을 출연하는 내용의 은행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발표하였는데, 출연금에 대한 손금 특례가 없을 경우 법인세 추정액만큼 차감되어 서민금융 지원 재원이 감소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73쪽입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출연금이 손금으로 인정될 경우 금융회사의 법인세 218억 원이 절감되고 이 금원을 정책서민금융으로 활용할 경우에 약 1744억 원의 보증재원으로 2만 2000명의 대출 지원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손금산입 특례의 취지를 고려할 때 신용회복목적회사의 안정적 운영 및 서민금융의 지속적 지원을 위해서 손실보전준비금 손금산입 과세 특례를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적용기한 연장 부분은 현재 계속 출연되면서 신용회복목적회사를 통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3년 연장할 필요는 있고요.

원래는 자산관리공사만 대상으로 돼 있다가 금융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은 금년부터 은행을 포함해서 금융기관들이 소위 사회공헌 프로젝트, 상

생금융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 차원에서 큰 규모의 자금들을 여기 출연을 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계상의 지원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해서 금융기관을 추가한 것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정부안으로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유동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동수 위원 지금 이게 신용회복목적회사, 신복위 얘기하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신복위는 아니지요.

○유동수 위원 어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로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지금 두 군데가 있는데……

○유동수 위원 어디요? 서금원?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과거의 국민행복기금 그다음에 새출발기금.

○유동수 위원 그게 다 서금원 밑에 있는 기금들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하나의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SPC……

○유동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기금들이 서금원 밑에 있는 거예요? 어디 있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캠프 밑에 있습니다.

○유동수 위원 캠프 밑에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열어 놓으면 어때요? 더 많은 데, 여기 말고도, 그러니까 캠프 말고.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그러니까 금융기관까지는 저희들이……

○유동수 위원 신복위이라든지 이렇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어디요?

○유동수 위원 신용회복위원회, 서금원.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신용회복위원회가 돈을 직접 자기 명의로 받아서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지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동수 위원 지금 현재 잘하고 있거든요, 거기가. 그러니까 이 기금을 받는 것을 캠프로 한정하지 말고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이렇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신용회복기금이 국민행복기금으로 전환된 것이고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그것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유동수 위원 그러면 확인해서 알려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소위원장 류성걸 이렇게 하시지요. 신용회복목적회사가 캠프 밑에 두 개, 국민행복기금과 새출발기금 이외에 다른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는 두 가지인데요, 말씀하신……

○유동수 위원 거기 말고 내가 보니까 서금원에서 본격적으로 이것을 하거든요, 채무조정이나 이런 것을.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서금원에다가 출연하는 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유동수 위원 그렇지, 은행이 서금원한테 넣을 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그 부분 아마 다른 지원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동수 위원 확인해 보고 연락을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소위원장 류성걸 나중에 확인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74쪽, 해외자원개발투자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제도입하고자 하는 양금희 의원님과 정부안이 되겠습니다.

75쪽, 해외자원개발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는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광업권 및 조광권을 취득하는 투자 또는 이를 위한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 등에 대해서 투자·출자 금액의 3%를 세액공제하는 제도입니다.

동 제도는 2007년 도입되어 지속적으로 적용기한이 연장되다가 2013년에 일몰된 바 있습니다.

한편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한 투자 위축으로 2014년부터 해외자원개발사업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해외자원개발투자액은 2021년에는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왔습니다.

76쪽입니다.

또한 최근 천연가스 및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자동차, 로봇 등 신산업에 필요한 소재·부품 확보를 위해

리튬·니켈·희토류 등 원료광물 자원수요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77쪽입니다.

그래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해외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투자 및 출자 금액에 대한 과세특례를 제도입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관련해서 첫째, 해외자원의 자원개발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광업권 및 조광권 취득이 필수적이지만 해외자원개발에 수반되는 높은 위험성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둘째, 과거 해외자원개발 과정에서 나타난 부실 투자 등의 문제는 자원개발이 공기업 주도로 이루어짐에 따라 발생한 것이나 동 특례를 제도입함으로써 해외자원개발을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 유럽의 핵심원자재법 등 핵심 광물 공급망을 재편하기 위한 각국의 자원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전기차·배터리·자율주행 등 첨단산업에 쓰이는 핵심 광물에 대한 자원개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78쪽, 다만 동 특례는 적용 대상 대부분이 외국법인에 대한 간접적 투자로서 해외자원 확보 효과가 미미하고 예산·금융 지원 등이 중복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적용기한이 종료되었다는 점, 그리고 현재도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각종 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개정안에서 현재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상생협력 투자세액공제와 같이 국가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의 연계성을 통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체 비용을 투자하는 기업과의 과세 형평성을 고려할 때 타당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특히 ‘다만’ 이후에 관련된 사항 위주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해서 세제상의 지원 몇 가지를 저희들이 이번에 다시 정부안으로 도입하는 것으로 들고 왔습니다. 그중의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지금 소위

공급망 위기라는 측면으로 봐서 우리가 해외에서 자원을 확보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공공 부문뿐만 아니고 민간 기업들도 같이 좀 찾아야 되겠다, 개발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비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다시 제안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에 관련해서는, 지금 적용 대상이 대부분 외국법인에 대한 간접적 투자로 해외자원 확보 효과가 미미하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 실패한 사례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의 상황 자체가 해외에서 어쨌든, 이게 과거의 자원개발이라 하면, 에너지 중심의 자원개발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이차전지나 이런 부분에 필요한 자원을 개발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우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개발을 찾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세제상의 지원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비판받았던 내용 중의 하나가 해외자원개발투자, 그러니까 다른 보조금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세액공제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이중적인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 그래서 이번에 새로 도입하면서 그런 비판을 수용해서 배제 대상에 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 그러니까 국가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경우는 이 해외자원개발투자의 세액공제를 받지 않도록 그런 보완장치를 넣어서 왔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정태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태호 위원 아까 설명 과정에서, 2013년에 폐지가 됐잖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정태호 위원 폐지 사유가 있었잖아요. 그 부분이 해소된 거예요? 아니면 사유에 대한 대책이 있는 건지?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그 당시에 해외자원개발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실패했다고 그럴까요, 손실이 많이 나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일률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세제상 또는 다른 지원상의 문제는 정리를 하자라는 취지로 13년에 이 제도가 종료가 됐던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이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관련해서 그 당시 비판의 포인트는 아까 제가 말씀드

렸습니다만 정부가 다른 쪽으로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을 주는데 또 이중으로 이것을 세액공제할 필요가 있겠냐 하는 부분이 많이 지적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치유가 됐느냐라고 한다 그러면 그때 비판받았던 부분은 보완해서 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정태호 위원** 그런데 본질적인 게 아까 전문위원님 발제에서도, 설명에서도 나왔듯이 광업권·조광권을 직접 매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외국회사, 외국법인에다가 투자하는 형식을 취했다라는 거지요. 이렇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광업권이나 조광권을 안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효과가 별로 없었다, 그리고 직접 투자하는 경우도 사례가 별로 없었다 이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현지 법인 방식으로 진행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내 회사가 현지 자회사를 만든다 이런 형식이 아니고 현지에다가 그냥 법인을 만들어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혜택을 못 받잖아요, 그 현지 법인은.

그러니까 실제로 법적으로 혜택을 받는, 법률상으로 혜택을 받는 회사와 실제 현장에서 진행되는 것은, 수혜 대상이 달라져 버린다라는 문제가 생긴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 추가적인 게, 지금 차관님 말씀처럼 다른 지원제도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이것까지 해야 되느냐 이 지적이 있었던 건데 여쭙어보는 것은 앞의 두 가지 이런 문제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결되냐 하는 것을 질문을 드리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그 부분 중에서 현지 법인을 세우면서 법상 투자자하고 공제 수혜자가 다른 부분은, 저희들이 어쨌든 세제 지원을 할 때 누가 과연 R&D를 했느냐, 누가 투자를 했느냐, 누가 고용을 했느냐 거기에 결국 수혜자하고 실제하고 같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위원님 지적 맞으시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실제로 조광권을 취득하거나 출자한 기업은 현지 법인이겠지만 그 현지 법인을 세우면서 이 자금의 어떤 결정, 이 위험에 대한 도전, 자금에 대한 조달·투자한 기업은 결국은 국내 모기업이거든요. 그래서 국내 모기업한테 그 세제 혜택을 줘야지 실질적으로 이 행위가 죽 일어날 수 있는 거지 어

쨌든 투자는 자회사가 한 것 아니냐 그렇게 따지시면 큰 틀에서는 맞는 말씀이지만 이 제도에 있어서는 국내 기업한테 주는 게 맞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실효성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들보다도 지금 산업부에서 이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담당자가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이야기를 직접 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산자부의 누가 나오셨지요?

직명하고 이름 말씀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자원안보정책과장 김재은** 산업부 자원안보정책과장 김재은이라고 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어차피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 아니냐, 그래서 지원 실효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해외자원개발이라고 하는 게 워낙에 규모가 크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경우란 거의 없습니다. 아예 없다고 보셔도 되고요. 어차피 지금 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우리 자원개발 사업들이 예를 들어서 지분 3%, 5% 가지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원개발이 그런 방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꼭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정부 의견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내국 법인세 체계를 통해서 지원할 바에는 해외 투자가 자회사가 투자하는 방식이 되더라도 모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통해서 전체적인 자원개발 효과가, 증진되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태호 위원님 말씀 다 하셨습니다?

**○정태호 위원** 제가 그쪽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진행되는 것은 전문성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법이 폐지·종료될 때 이런 사유로 종료가 됐다는데 그러면 이 문제는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해결되는 것인지를 여쭙어보는 거지요. 실제로 지금 자원개발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가 남아 있고, 그러나 핵심 광물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될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있는데 다시 옛날과 같은 실수를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법이 폐지되는 단계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이 지금 잘 정비가 돼서 이 법이 개정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점을 제가 지적

하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저희들이 산발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재정 지원과 세제 지원의 중복 문제,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 등의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하지 않겠다라고 그것은 정확하게 정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법상 투자자와 공제수혜자의 불일치 문제 그 부분은 당시 지적은 됐었지만 아까 산업부 과장도 말씀드렸고, 그것은 이 제도가 기본적으로 가지는 이런 스킴(scheme)일 수밖에 없다, 그것을 뒤집어 가지는 의미가 없다. 그리고 외국에서 내는 법인세를 깎아 줘 가지고…… 저희들은 깎아 낼 능력도 없고, 깎아 줄 방법도 없고. 결국 국내에서 투자하는 모기업한테 깎아 주는 것만이, 이게 만약 실효성이 있다면 그런 제도를 통할 수밖에 없고 그게 실효성이 확보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대기업에 편중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는 어쨌든 대기업·중견기업·공공기업 다 나가겠지만 그래서 지난번에는 공제율이 동일했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한테 좀 더 힘을 실어 주기 위해서 공제율을 최소한 차등해서 달리 가져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에 정태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과연 광업권을, 조광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이해가 되지만 지분투자하는 경우에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당시 지적 중의 하나가 간접투자자로 인한 효과성이 좀 약하다. 그런데 그 부분은 100% 맞는 지적이신 것 같고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가 는 아니지만 또 부처하고 여러 가지 소통을 하다 보면, 최대한 부처도 노력하고 산업부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현실이 그러니까 큰 의미가, 직접투자하는 것에 비해서는 일부 반감이 되니까 그러면 그냥 세제 지원하지 않고 손 놓고 있을 것이냐, 그것은 아닌 것 같고 현실이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좀 더 투자를 하고, 직접투자가 좀 더 유도될 수 있도록 다른 방법도 또 찾아야 될 거고. 그래서 꼭 필요하다라는…… 모든 면이 다 극복이 되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찾아서 새로운 안을 가져왔다고 말씀드립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제가 한 가지만 그 당시하고의 차이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2008년, 2009년부터 시작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사실은 유가가 오르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해외자원개발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사실 주 타깃은 석유나 이런 에너지였습니다. 그리고 손실이 나 가지고 문제가 됐던 데도 대부분 그런 것을 하는 공기업들이 문제가 많이 됐었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해외자원개발이 필요하다고 나오는 부분은 그런 부분보다는 새로운 산업에 필요한 리튬이나 이런 원자재를 확보하는 문제고 그것은 지금 기본적으로 민간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각자가 찾기 위해서. 그래서 당시와 지금의 상황은 그런 여건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고 이 부분에 그렇게…… 어찌 되었든 공급망 안정을 위해서, 다변화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길 양경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경숙 위원 이명박 정권의 해외자원투자 이런 부분들이 대실패를 하면서 박근혜 정권 초반에 이것을 일몰시킨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정태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광업권을 직접적으로 취득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지분이 무슨 50% 있는 것도 아니고 해외의 외국법인에 일정하게 출자하는 건데, 투자하는 건데 그러면 주도권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광업권을 개발하는 회사에 투자해서 돈 좀 벌면 그중의 일부 돈 벌어먹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대기업이 됐든 중소기업이 됐든.

그런데 중소기업은 그나마도 거의 못 하는 것이고요, 대기업만 거의 하고 있는 건데. 대기업이 돈 벌어먹는 것에, 대기업 투자에 세제 지원하는 거예요. 그 부자들, 대기업 지원하는 거지요. 이게 우리나라의 광업권을 확보하고 무슨 취득을 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기업 비중하고 중소기업하고 중견기업 비중이 어떻게 돼요? 지금 400건인가 그렇다고 했지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401건이던데, 21년도의 해외자원개발 진행사업 수가.

그러면 이 중에 대기업 몇 개입니까? 건수로만 한다 하더라도 몇 개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지금 해외자원개발

사업자 수로 보면……

○양경숙 위원 아니, 개발 진행사업 76쪽에 있잖아요. 그런데 2022년 것은 통계가 안 나왔고 21년도에 진행사업 수가 401개라고 돼 있잖아요. 이 중에 대기업이 몇 개냐고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이것은 자료를……

○양경숙 위원 산자부에서 오신 분 답변해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자원안보정책과장 김재은 산업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수로는 석유·가스가 100개 정도 되고 광물자원이 300개 정도 됩니다.

○양경숙 위원 그것은 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묻는 말을 정확하게 인식 못 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자원안보정책과장 김재은 사업으로 되어 있는 걸 사업자로 전환을 해야지 저희가 중소기업이 얼마인지 대기업이 얼마인지 중견기업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는데 석유·가스 55개 사업자 중에서 중소기업이 23개, 대기업이 14개, 중견기업이 8개입니다. 그래서 석유·가스의 경우에는 민간사업자 총 55개 중에서 중소·중견기업을 합친 게 숫자가 31개고요. 광물자원 같은 경우는 총사업자 280개 중에서 중소기업이 133개, 중견기업이 7개, 대기업이 17개, 나머지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따라서 석유·가스, 광물자원 공히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보다 훨씬 많은 수준입니다.

○양경숙 위원 그러면 광업권이 취득돼요? 여기 지분이 대부분 몇 % 정도 됩니까, 대기업은? 외국법인에 투자하는 게 대부분이지요? 그 지분은 몇 % 정도 돼요, 평균?

○산업통상자원부자원안보정책과장 김재은 석유·가스 같은 경우는 워낙 투자금액이 크다 보니까 평균 3~5% 정도, 많이 가져 봤자 10% 내외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지분의 50% 정도를 가지고 있는 사업도 일부는 있습니다.

○양경숙 위원 아주 극히 일부지요? 몇 개 되지도 않지요,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실제로 광업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거예요. 대기업이 됐든 중소기업이 됐든 중견기업이 됐든 간에 그냥 자기들 투자해 가지고 거기서 돈 벌면 일부 지분만큼 먹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국가가 세금을 지원해야 됩니까?

그리고 실패한 선택도 있잖아요. 실패한 선택도 많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명박 정권의 정책을 자원외교, 외국에 투자하는 것, 외국에 용역 많이 주는 것, 해외에 많이 다니는 것 이것이 큰 방향에서 다 지원이 늘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세계 지원, 실제 재정지원, 예산지원, 이것의 일환 아니에요. 5%에서 지분율을, 외국의 광물에 투자하는 것 낮춰 주기로 또 냈잖아요, 지금. 다 그런 것의 일환 아니에요. 해외 투자를 지원하는 것, 특히 대기업이 지원하는 광물자원. 취득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우리나라가 광물권, 취득권…… 광물 그것을 갖는 것도 아닌데 계속 대기업에 지원하고 큰 사업에 지원하는 거 그런 일환인데 저는 이것 문제 많다고 봅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효과도 거의 없고요.

○소위원장 류성걸 이렇게 하시지요.

이것 관련되는 사항은 아까 정태호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양경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고용진 위원 이것에 대해 정부에서 좀 설명을 해 보라고 그러세요. 산업부에서 오셨고 기재부 차관 계신데, 이런 거잖아요. 과거에 공기업 주도로 해서 에너지자원개발에 했던 선택도 일몰시켰는데 이제 어떤 상황적 변화가 생긴 것은 에너지 자원뿐 아니라 첨단산업에 대한 광물 확보 이런 것들이 국가적으로 공급망체계가 변하는 상황 속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정부가 민간기업이 투자하는 것을 도와주겠다 이런 건데 도와줘서 어떤 효과가 있을 수 있느냐.

예를 들어 지분이 적을 때, 니켈이라든지 아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보해서, 중요한 소재로 쓸 수 있게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느냐 등의 효과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라 이런 얘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자원안보정책과장 김재은 예, 알겠습니다.

○고용진 위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자원안보정책과장 김재은 산업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분을 예를 들어서 5% 가지고 있다고 해서 광업권은 외국계 회사가 가지고 있고 지분만 참여하는 게 아니고요, 지분 5%를 가지고 있으면 광업권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 점을 반드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분이 아예 1~2% 수준으로 매우 낮다고 하더라도 비상시에 도입할 수 있는 권한 이런 것들과 묶어 가지고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분이 1% 내외로 아주 적다고 하더라도 비상 상황에서 우리나라로 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양경숙 위원 그러면 최근 3개월 이내에 계약한 대기업의 계약서 가져와 보세요. 가져오세요, 자료.

○소위원장 류성걸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들 걱정 중의 1개는 단순히 지분 투자를 해서 배당이나 받고 하는, 혹시나 그런 걱정인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실물이란 말이지요. 핵심 광물을 우리나라에 도입할 수 있는 건가에 대한 그런 효과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정리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계속 심사하도록 하고, 그런 차원에서 설명 자료를 잘 정리해 주십시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79쪽입니다.

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대체취득에 대한 과세 특례를 확대하고자 하는 정부안이 되겠습니다.

80쪽입니다.

취약한 대학의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수익용 재산의 재구성을 통해 수익용재산 대체취득 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제도를 2007년 세법 개정을 통해 도입한 바 있습니다. 양도 대상 수익용기본재산은 기본재산 중 토지와 건축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수익용기본재산을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수익용기본재산을 취득할 경우 양도차익 중 대체취득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3년 거치·3년 분할 산입으로 과세이연하고 있습니다.

82쪽 하단입니다.

학교법인은 수익용기본재산 매각을 통해 양도차익 등을 다른 수익용기본재산 대체취득에 활용하려고 할 경우에 대체취득은 고유목적사업 외의 지출에 해당해서 익금에 산입되고 이자상당액을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현행법의 과세 특례를 활용하더라도 3년 거치, 3년 균분 익금

산입하도록 하고 있어서 과세이연의 기간이 짧고 실질적인 조세 부담 완화 효과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83쪽입니다.

개정안은 학교법인의 수익자산 대체취득에 대한 과세이연 기간을 대체취득 자산 처분 시까지로 확대하고 대체취득 시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동 내용은 대학재정 건전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적용 대상이 되는 자산의 범위를 토지와 건축물에서 유가증권까지 포함시켜 특례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에서 설명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대학의 재정건전화, 조금 더 크게 보면 구조조정 이런 측면을 위해서 대학 측에서도 많은 지원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고 해서 저희들이 세법에 담아 왔습니다. 정부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이것 관련해서 양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관련되는 자료는 배포가 돼 있습니다.

○양경숙 위원 본 개정안은 실질적으로 사학법인의 수익용재산에 대한 영구적인 법인세 감면을 해 주겠다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교육부의 대책 없는 사립학교 폐교 정책을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기재부까지 나선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입니다. 사립대학 먹튀 조장법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인데요. 보고 계시나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양경숙 위원 이 자료를 보시면, 학교명을 직접적으로 거론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2년간 대학 법인세 부과현황을 자료로 내라고 했습니다. A 학교는 수익용 부동산을 대체취득해서 취득금액보다 실제 처분금액이 무려 1153배가 넘는 수익을 올렸습니다.

보이지지요? 자료 보고 계시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양경숙 위원 B 대학교는 취득금액 대비 196배에 달하는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인세 안 내게 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대학이 학교 교육에 집중해야지 무슨 투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리고 세금도 안 내게 해 달라는 게 말이 됩니까?

C 대학교, 296억 원의 양도차익을 벌어들였습니다. B 대학교도 33억에 사서 267억에 팔았어요. 233억을 남긴 거지요.

그런데 세금 이연시킬 뿐만 아니라 앞으로 대체채산을 처분할 때까지는 세금 안 내게 해 달라, 대체채산을 30년 동안 처분 안 하면 30년 동안 안 내는 거예요. 그사이에 학교 폐교하고 나가면 세금 안 내는 거예요. 1원도 안 내고 나가는데 거지요, 학교 재산 챙겨 가지고.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폐교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당연히 내야 됩니다.

○양경숙 위원 그때까지는 안 내는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폐교할 때는 냅니다.

○양경숙 위원 그러니까 40년 후에 하면 그때까지는 안 내는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학교를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안 냅니다.

○양경숙 위원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예.

○양경숙 위원 그래서 이렇게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고, 지금 교육부에서 낸 자료에 의하면 어느 한 학교도, 손해가 났거나 수익률이 낮은 법인은 1개도 없어요. 보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엄청난 양도차익을 벌어들이고 있는데 법인세를 내지 않겠다는 것은 학교법인의 부도덕함과 과도한 욕심을 기재부까지 나서서 채워 주겠다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립대학의 절반 이상이 자녀들에게 세습시키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알고 계세요?

교육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요. 어느어느 학교인지 제가 다 열거해 볼까요?

죽벌체제로 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가족기업이나 마찬가지로요.

기재부가 4년제 대학 이상 현황 파악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주세요, 꼭.

이것은 너무 큰 특혜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교육부가 사립학교 폐교를 전제로 대학 재산의 정리를 손쉽게 하는 조치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사립학교에도 국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원금을 포함해서 자산을 취득하고 축적한 경우도 많아요, 지원금에 기반해서. 물론 등록금이나 학비도 받았겠지만. 그런데 폐교 시점이 오니까 한 톨도 손해 안 보고 재산 정리해서 가지고 가겠다 이것하고 뭐가 다르나요? 사학재단들이 그것을 요구하니까 정부가 나서서 재단 손 들어 주겠다라는 법안 아닙니까?

유가증권까지 사겠다고요? 유가증권 그러면 계속 사고팔고 하는 것, 그것도 다 용납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만 관심 많이 가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100억어치 부동산 팔아 가지고 유가증권 사서, 그런 것도 다 용납하고 수시로 사고팔고 하다가 거기에만 관심 있고 교육에는 소홀하면 그것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그리고 나중에 학교가 운영이 잘 안 돼서 정리해야겠다, 세금 안 내고 다 챙겨서 가겠다.

그리고 작년에 유희교육용 재산을 수익용으로 변경하는 허가 기준도 시행령으로 완화시켰습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교육부에서 오신 분?

○교육부대학경영지원과장 최용하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교육부의 누구시지요?

○교육부대학경영지원과장 최용하 교육부 대학경영지원과장 최용하입니다.

저에게도 발언의 기회를 주시면……

○소위원장 류성걸 잠깐만 기다리세요.

○양경숙 위원 아직 질문하지 않았어요.

해당 재산의 시가에 상당하는 대금을 교비회계에 보전해야 하는 조건을 면제해 주기까지 했습니다.

2008년 이후에 폐교된 사립학교 총 19개 교가 폐교와 법인 해산 과정에서 재산 처리 지연으로 채무 처리가 장기화되고 교직원 임금 체불하고 기존 학생 편입학 문제 등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는 거 교육부는 너무 잘 알 겁니다. 기재부도 파악하십시오.

그래서 사학법인 먹튀 논란에 대한 방지책도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특혜를 주는 거 반대합니다.

그리고 제가 국회 교육위원회에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들한테도 상세하게 물어봤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사립대학 재정위기 해소를 위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사립대학 구조

개선 지원법 제정 이후에 세제를 어떻게 할 건가 검토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먼저, 교육부에서 오신 누구 시라고요?

○교육부대학경영지원과장 최용하 대학경영지원과장 최용하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양경숙 위원님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기재부에서 답변하실 사항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지요.

○교육부대학경영지원과장 최용하 참고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도차익이 많이 발생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립대학의 경우 실제 토지나 땅을 갖고 있던 부분들이 30~50년 지나고 난 이후에 판매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다는 거 설명드리고요.

○양경숙 위원 어느 학교가 그렇지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각 학교마다 다 얘기해 보세요.

○교육부대학경영지원과장 최용하 제가 발언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말씀 계속하세요.

○교육부대학경영지원과장 최용하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라서 용도변경을 하고 거기 대체를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그거는 대법원 판례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입법 미비된 부분을 시행령으로 고쳤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전 정부에서 이미 대법원 판례가 나왔고 그때 당시 전 정부 감사원에서도 시행령의 입법 미비를 완화하라는 그런 통보가 있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법이 개정돼야 된다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교육부 같은 경우에 대학들이 있습니다. 대학들은 지금 국가정책에 같이 발맞추기 위해서 10년 동안 등록금을 동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학생 수 급감으로, 사실 실질적으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서 많은 대학들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실제 통계에 따르면 2011년의 경우에는 재정적자가 나는 대학교가 21개교였으나 2021년의 경우

에는 94개교로 적자가 나는 대학이 4.5배나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내일모레 임금도 주지 못하는 대학들이 32개교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학의 재정수입을 본다면 학생등록금이 있고 그다음에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이익이 나는 부분을 학교에 투자하는 그런 수입이 있습니다. 지금 대학의 수익용재산의 통계를 보면 토지가 8조 8000억, 그다음에 건물이 2조 2000억, 유가증권이 1조 8000억입니다. 대부분의 수익용기본재산이 수익이 나지 않는 토지나 산이나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는 그런 토지들을 수익이 안 나니까 수익이 나는 고수익 재산으로 용도변경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그 수익용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가지고 학교 교육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연에 대해서 저희가 개정안을 낸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경숙 위원 아니, 이연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소위원장 류성걸 잠깐만요. 양경숙 위원님, 발언권 얻고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그러면 한 가지 여쭙어볼게요.

이 양도차익은 전부 다 교육 목적으로 다시 대학에 지원이 되는 이런 형태로 활용을 할 겁니까?

○교육부대학경영지원과장 최용하 예, 그렇게 하도록 법에 돼 있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그러면 좀 전에 양경숙 위원님 말씀하셨던 이 양도차익이 전부 대학 교육에 지원이 됐습니까?

○교육부대학경영지원과장 최용하 수익용기본재산이 있습니다. 수익용기본재산은 양도차익이 발생을 하면 그게 다시 수익용기본재산에 편입이 되는 겁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그러면 그 돈 갖고 뭐 하는 거지요?

○교육부대학경영지원과장 최용하 그래서 거기에서 수익이 발생을 하면 그 수익금의 100분의 80에 해당되는 부분을 학교교육에 재투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그걸 담보하기 위해서, 대학의 기관평가인증에 6개 지표가 있는데 거기에서 1개의 지표로 대학에 재정을 얼마만큼 투입했는지 법인의 책무성 지표 조항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알겠습니다. 됐어요.

제가 알겠는데, 지금 왜냐하면 양도차익이 이렇게 났다는 게 마치 개인이나 사학재단을 위한 게 아니냐 그런 취지의 이야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새로이 대체해서 수익용재산을 많이 해서 그게 결국은 최종적으로 교육 지원을 해 주는 이런 형태가 되면 문제가 없을 건데 이게……

○교육부대학경영지원과장 최용하 그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그래서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이지요?

○교육부대학경영지원과장 최용하 예, 맞습니다. 교육부의 재산과……

○소위원장 류성걸 잠깐만요.

유동수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유동수 위원 수익용 재산을 매각하면 이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입한 돈을 교육용으로 사용하면 세금을 안 내요.

그런데 이거는 수익용재산을 계속 수익용재산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육용재산과 수익용재산이 분리돼 있고, 수익용재산을 매각해서 다른 수익용재산을 취득했을 때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저는 양경숙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보는 게 대학이 무슨 부동산 투자나 투기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용 재산을 매각할 때는 고유목적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교육용으로 쓸 돈이 필요할 때 매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걸 무슨 투자하듯이 이걸 팔아서 또 다른 걸 투자하고 또 다른 걸 투자하고 이렇게 대학이…… 그러한 투자 행태를 열어 주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거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만약에 기재부에서 이걸 하려면 거치기간과 익금산입기간을 좀 늘려 주면 되는 거지 이걸 대체취득 시까지 전부 다 그냥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겠다, 이연해 주겠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기업이 지방에 이전하거나 아니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합병, 분할 이런 걸 할 때 저희들이 3년 거치, 3년 분할로 단순하게 이연을 해 줄 것인가 아니면 기본적으로는 대체 자산을 다시 팔 때까지 항구적으로 이연해 줄 것인가 부분이 사실 매번 고민스러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합병, 분할 등과 같이 순수한 기업의 형태의 변화 그런 경우에는 항구적으로 이연하는 게 당연하고 형태의 변화가 아닌 뭔가 재무구조 개선, 새로운 사업의 확장 등의 경우에는 일정 기간만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인데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아까 교육부 과장이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정부 정책을 쫓아오는 과정에서 상황이 많이 변한 게 있었고요.

거기다가 학교법인에 이걸 허용해 주는 이유가 부동산 투기를 하라, 주식을 반복적으로 사라는 뜻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수익성이 거의 없는 유가증권이나 기부받은 유가증권 또 아니면 옛날부터 있었던 임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게 가만히 가지고 있어 봐야 아무런 수익성이 안 나오니까 굉장히…… 자산은 많으면서도 뭔가 거기에서 수익성이 나와야지 그다음에 학교에 계속 그 수익금을 입금시켜서 학생들의 복지나 교육 발전에 쓸 텐데 이걸 좀 바꾸어 달라, 바꾸어 주는데 워낙 물가가 많이 올랐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오래된 재산이고 팔고 나면 그중의 4분의 1, 5분의 1을 세금으로 다 내 버려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새로운 수익자산을 사서 거기에서는 이익이 나겠지요, 좀 더 의미 있는 부동산을 살 테니까.

그렇더라도 어쨌든 기업이 새롭게 구조조정하고 자산 구조를 바꾸는 데 있어서 상당히 애로가 많으니까 대학에 있어서만은 일정 기간 동안 뭔가 좀 배려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여러 가지 공익기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이게 필요하겠다고 저희들이 교육부와 협의를 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오늘 교육부에서 오신 분, 추가적으로 설명하실 거 있나요? 말씀하십시오.

○교육부대학경영지원과장 최용하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립대학의 수익용기본재산 보유 현황을 보면 토지를 75%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토지에 대해서는 전혀 수입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갖고 있어 봐야 학교교육에 절대로 투자가 안 되는 금액이니까 교육부에서는 계속 그걸 팔고 건물이나 아니면 수익이 나는 재산으로 대체취득을 하고 거기에서 나온 수입을 학교교육에 투자를 하라고 계속 하는데 대학들은

그 법인세 부담이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땅이나 토지나 이런 재산을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리고 대학의 경우에 지방이나 이런 데 보면 학령인구가 너무 감소해서 실제 투자를 해서라도 수익이 많이 발생해서 학교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게, 열어 줘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대학에 이런 식의 어떤 혜택을 안 주면 10년 동안 거의 한 30개씩 대학들을 폐교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유동수 간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동수 위원 이걸 대학만 열어 주는 이유가 됩니까? 고등학교 사립학교법인도 있고 중학교·초등학교 학교법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기본적으로는 초·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제가 거기 전문가가 아닌데 지금 드는 생각은, 어쨌든 초·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특히 중·고등학교, 그래서 아예 자율형 사립고로서 정부 재정을 지원 안 받는 곳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사립고는 공립고와 똑같이 재정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무상교육도 시켜 주고요.

○유동수 위원 그게 이런 거예요, 실장님. 이런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교원들에 대해서 4대 보험료를 재단에서 내 주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학교는 굉장히 재정이 튼튼한 학교고요. 대부분은 못 내 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대학이라고 차별을 두는 건 좀 문제가 있어요. 지금 학령인구 감소로 해서 중·고등학교도 분명히 닥칠 거거든요. 나중에라도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자, 이렇게 합시다.

이 부분은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양도차익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정리를 해 주시고 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이 양도차익을 일부 넣을 수 있는지 그거하고 또 최종적으로 봐서는 수익이 나는 자산으로 대체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팔아서 너무 많은 양도차익이 났는데 마치 이게 재단이든지 아니면 재단을 운영하는 개인이든지, 개인적으로 또는 재단 차원에서 쓸 수 있겠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립학교의, 대학의 어려운 교육재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했다는 이런 내용을 좀 정리해 주

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태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태호 위원 시행령을 고쳐서 유가증권을 집어넣은 이유는 뭐예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어쨌든 학교라는 게 기부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 기부받은 주식 중에는 또 비상장기업의 주식들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비상장주식이라는 게 굉장히,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높은 배당률이 있을 수도 있는데 또 배당률이 굉장히 낮은 경우도 많고요. 그걸 가지고 있어 봐야 아무런 도움이 안 되니까 그걸 팔고서 의미 있는 건물이나 이런 걸 사고 싶다, 그런데 어쨌든 비상장주식도 오래 있다 보면 결국은 다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기업 자체가 아주 엄청나게 나빠지지 않는 이상은 정상적으로만 죽 굴러가도 그 가치라는 건 10년 있으면 두 배가 되고 20년 있으면 네 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파는 순간 그 전액이 거의 양도차익에 가까워지니까 그런 면에서 토지, 건물뿐만 아니라 유가증권도 필요하다라는 게 교육부의 입장입니다.

○정태호 위원 아니, 이런 상상을…… 일각에 이런 지적도 있어요. 토지나 건물 팔아서 주식 투자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결국은 주식 투자하다가 법인 수익, 재산 다 날려 먹고 결국 그러면서 학교 전입금은 더 줄어들고 그 위험성이 있다라는 지적이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실제로 2020년 국정감사에서 대학 적립금으로 투자했는데 손실액이 63억 원이었다는 거거든요. 그 위험성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유가증권을 집어넣고 또 법적인 편의를 봐주는 게 과연 우리가 원하는 대학의 재정건전성에 도움이 되겠냐 그 지적이 현실적으로 있는 거고, 결국 대학이라는 게 그 공공성이 더 강화돼야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더 사적으로 활용된다는 그 지적이 교육계에는 있는 거거든요. 그 지점을 한번 잘 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그런 지점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저희들이 교육부하고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유가증권의 경우에 사는 경우도 있고 파는 경우도 있을 텐데 어쨌든 연간 사는 횟수, 파는 횟수 그런 제한을 좀 둘 수도 있을 거고요. 또 대학설립·운영 규정 자체에 유가증권

같은 아주 위험한 고위험 투자를 못 하도록 기본적인 규정은 있긴 한데 그 규정이 좀 더 엄격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라든지 어쨌든 전체적인 틀은 만들면서도 계속해서 특정한, 예를 들면 배터리 주식, 반도체 주식 이런 걸 사고 파는 그런 것 자체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보완방안도 같이 협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알겠습니다.

조해진 위원님 말씀하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조해진 위원 제가 큰 틀의 의견 개진만 짧게 하고 싶은데요.

재단을 비롯해서 사학비리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이중, 삼중의 감시·규제 장치들이 있어서 옛날같이 그렇게 황당한 비리들이 공공연하게 저질러지고 그런 시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사학들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인데 등록금을 자율 보장을 안 하고 사실상 강제적으로 동결시킨 지 벌써,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 대신에 정부 재정으로 장학금을 지원한다든지 또는 지금처럼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메꾸 준다고 하는 건데 등록금 자율성 보장이 됐을 때, 사학의 재정구조에는 턱없이 못 미칩니다. 그 구조 자체도 잘못된 거지만 그런 식으로 정부가 딱…… 그게 결국은 사학을 쥐고 흔드는 수단으로 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냥 놔두면 학부모, 학생, 학교가 서로 걱정하게 협의해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또 학부모, 학생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등록금이 책정될 텐데 그걸 정부가 못 하게 해 놓고 정부가 지원한다고 하면서 그걸 가지고 사학을 틀어쥐고 그리고 책임도 못 져 주고 재정은 계속 악화되고 막다른 곳에 몰리게 하고.

막다른 곳에 몰렸으면 출구라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출구도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정리하고 폐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지금 계속 교육위에서 논의만 되고 있고 안 만들어져 있으니까 사학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냥 가는 건데 결과적인 피해는 학생들, 교육의 질이 툭 떨어져 버리지요, 투자가 전혀 안 되니까, 시설부터 해서 모든 면에서. 그다음에 교직원들,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생계난에 허덕이는 상황이 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 무책임하고, 국가는 무책임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율적으로 하게 두든지, 그러면 책임도 사학이 질 텐데. 못 하게 해 놓는 정부가 책임을 제대로 안 져 주고. 그렇다고 그 한계에 몰려서 정리해야 될 상황이면 정리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만들어 주고.

그래서 정부는 등록금 자율을 보장해 주든지, 원래는 그게 맞는 거지요. 그걸 강제로 못 하게 하는 거 자체가 저는 헌법체계에 안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보장해 주든지, 그걸 꼭 움켜쥐고서 제한하고 하려면 그에 해당하는 지원을 충분히 합당하게 해 주든지, 그래도 구조적으로 지금 안 되는…… 학령인구 감소라든가 해서 결국은 문 닫는 학교들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러려면 출구를 제도적으로 마련해 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면 자율을 보장해 주고 출구전략을 마련해 주고. 이것도 저것도 안 해주면서 사학을 옥죄면 결국은 말씀드린 대로 사학도 힘들지만 학생하고 교직원들이 힘듭니다, 피해가.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정부, 국가가 규제를 하는데 대한 책임을 다하는 차원에서, 그 관점에서 제도에 접근해야 되고 세법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교육부대학경영지원과장 최용하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잠깐만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아주 근본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관님께서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서 본래의 취지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 주시고요.

혹시 교육부에서 오신 분, 추가적으로 발언할 게 있습니까?

○교육부대학경영지원과장 최용하 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예.

○교육부대학경영지원과장 최용하 재산이 개인 비리나 아니면 이렇게 빼돌려질까 봐 가장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교육부에서 재산 관리는, 어떤 재산이든 간에 재산 처분을 위해서는 학교법인에서 이사회 심의 의결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이사회 심의 의결을 하고 교육부의 허가를 받습니다. 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팔고 나면 그

처분 결과를 또 교육부에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공시를 통해서 매년 모든 걸 오픈해서 재산현황을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도 개인적인 어떤, 일부 설립자나 아니면 운영자나 이런 사람한테 개별적으로 그 재산이 흘러들어 갈 수 없게 저희 교육부는 철저하게 재산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일반적인 말씀이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경숙 위원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짧게 한 말씀 하십시오, 양경숙 위원님.

○양경숙 위원 이 법안의 핵심은 수익용재산을 매각해서 양도차익이 남았을 때 법인세를 부과할 거냐 말 거냐입니다. 그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관련되는 사항을 잘 정리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84쪽입니다.

12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의원안과 정부안이 되겠습니다.

85쪽입니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시 소득·법인세 세액감면제도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고 국내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2011년부터 도입·시행되고 있으며 이후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등 유턴 활성화를 위한 세법 개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87쪽입니다.

최근 3년 동안 73개사가 국내에 복귀하는 등 전 세계적인 경제성장 둔화, 고금리 등 어려운 대내외 투자환경 속에서 복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2년에는 24개사가 복귀하였고 14년 이후로 누적 126개사가 국내로 복귀한 바 있습니다.

89쪽입니다.

개정안은 국내에 복귀한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현행보다 확대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선 완전복귀나 수도권 밖으로 부분복귀하는 경우에 현행은 5년 100%, 2년 50% 감면하는데 정부안의 경우에는 7년 100%, 3년 5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내 부분복귀의 경우에는 정

부는 현행과 같은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고 국내투자 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복귀기업의 투자계획 규모는 2014년 745억 원에서 22년 1조 1089억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국내복귀기업의 총고용계획 규모 또한 14년 685명에서 22년 1794명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91쪽입니다.

둘째, 국내 자체 공급망 확보를 통하여 코로나 19 확산 등에 따른 예상치 못한 글로벌 공급망 충격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대응조치로서 의미가 있겠습니다.

다만 세액감면을 및 지원기간이 다른 세액감면 대비 높은 수준인 점 그리고 지원 대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된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행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해주는 것은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 제주투자진흥지구 그다음에 기업도시 등 다른 세액감면제도와 비교해 볼 때 높은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리쇼어링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요. 각 나라들이 리쇼어링을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최근에 한국의 기업들도 그런 의향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수도권 내 부분복귀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좀 더 확대해 주자 하는 의견을 내셨는데 정부는 일단 균형발전 차원에서 완전히 복귀하는 경우 또는 수도권 밖으로 부분복귀하는 경우에 한해서 그 지원을 좀 더 늘리는 그런 안을 제안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 없으시면 정부안으로 잠정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13번 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

한 대여금 등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를 규정하고자 하는 윤영석 의원님과 조해진 의원님, 진선미 의원님과 정부안이 되겠습니다.

93쪽입니다.

내국법인이 해외 영업활동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외지점을 설치하는 방법과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으로 나누어지며 이에 따라서 세법상 규율도 달라지게 됩니다.

기업들이 현지법인의 형태인 자회사로 진출하는 이유는 중동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서는 법규제도상 현지법인 설립이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점 형태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의 사업이 어려워져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모회사의 손금으로 산입이 가능하지만 자회사 형태의 경우에는 자회사에 손실이 크게 발생해서 자본잠식 등이 발생하더라도 모회사가 지급한 대여금 등은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등을 통해 손금으로 산입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95쪽입니다.

한편 2010년대 주요 건설기업의 해외 현지법인 은 모회사로부터 대여금을 받아 공사비 등에 사용하였으나 이후 현지 사정 등으로 인해 공사손실이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경우가 발생하였고, 모회사의 대여금은 청산·파산 전에는 대손처리가 불가능하게 되어서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3년 상반기 국내 건설기업의 해외사업 수주 실적은 17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4% 늘었지만 미청구공사 금액은 21년 10조 9712억 원에서 지난해 13조 1415억 원으로 증가한 바 있습니다.

또한 모회사가 자회사에 대여한 금원에 대한 이자를 받지 않거나 법 규정이 정한 이자율보다 적게 받을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소정의 이자율만큼 모회사에 이자수익이 생긴 것으로 보아서 익금산입되므로 모회사는 대여금 이자에 대한 법인세 부담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97쪽입니다.

4건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외자회사에서 손실이 발생해서 모회사에서 대여한 금전 등의 회수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채권 평가금액에 대한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내용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안과 윤영석 의원님, 조해진 의원님, 진선미 의원님 안 같은 경우에는 해외자회사에 90% 이상의 지분을 출자한 해외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윤영석 의원님 안은 이에 더해 해외자원개발사업자를 적용 대상으로 추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윤영석 의원님 안은 대여금, 미수이자 외에 용역대가를 특례적용 채권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손금산입 요건과 관련해서는, 윤영석 의원님 안은 '10년 이상의 자본잠식 상태일 것' 그리고 조해진 의원님과 진선미 의원님 안은 '대여금을 제각해서 대손금을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와 그 직전 10년간 자본잠식 상태일 것', 정부안은 '회수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사업연도 말 자본잠식 상태일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손금산입 방식과 대손처리와 관련해서, 윤영석 의원님 안은 대손금과 손금산입 상당액을 상계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고, 조해진 의원님과 진선미 의원님 안은 회수곤란 대여금 등을 제각해서 바로 손금산입함으로써 사실상 대손 효과가 바로 나타나도록 하고 있는 반면에, 정부안은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서 대손 발생 시 충당금 적립금과 상계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적용 시기와 관련해서는, 윤영석 의원님 안은 26년 말 이전까지의 손금산입분부터 5년간, 진선미 의원님 안은 제각한 사업연도부터 5년간, 조해진 의원님 안은 손금산입하는 사업연도부터 5년간, 정부안은 24년부터 10년간 매년 10%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기업이 해외진출을 하면서 해외지사 형태와 자회사 형태에 따라 동일한 손실에 대해서 손금 인정, 인정이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달라지지 않게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조세평등주의와 과세 형평에 부합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 해당 제도의 도입으로 현지법인을 통한 해외진출에 대한 기업 리스크가 완화되어 사우디 네옴시티,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등 초대형 해외 건설사업이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국내 기업들이 적극적인 수주 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100쪽입니다.

다만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째, 장기간 자본잠식 상태의 회수가 곤란한 대여금 등의 채권이라 하더라도 해외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 개별기업의 판단에 따라 투자한 것이므로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손금산입의 특례를 규정할 경우에 기업경영책임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둘째, 대여금의 범위와 관련해서 윤영석 의원님 안은 대여금과 미수이자 외에 용역제공 대가를 포함하고 있는데 해외건설 전문인력에 대한 고용 주체가 해외자회사일 경우에는 국내모회사에서 대여금 형식으로 이를 지급하고 고용 주체가 국내모회사일 경우에는 자회사에 대한 용역채권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대여금과 용역제공에 따른 대가는 실질이 유사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손금산입 방식과 관련해서 정부안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안에 대해서는 대여금 등에 대해 사실상 대손을 인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사업폐지, 청산 등 법률상·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세법상 대손금과는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넷째, 회수 곤란한 채권의 요건과 관련해서 조해진 의원님과 진선미 의원님 안에서는 대여금을 제각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해당 금액만큼 자회사의 익금에 계상돼서 현지에서 법인세가 과세될 우려가 있습니다.

다섯째, 특례의 적용 대상과 관련해서 진선미 의원님은 26년 말까지 회수 곤란한 대여금 채권으로 하고 있고 정부안은 22년 말 이전에 지급한 회수 곤란 대여금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정부안은 이미 정해진 적용 대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특례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여섯째, 대여금 등을 손금에 산입하는 기간과 관련해서 정부안은 10년의 기간에 걸쳐 총당금과 상계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3개 안은 5년간 손금산입하도록 돼 있는데 이는 세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 일곱째, 윤영석 의원님 안은 부당행위계산부인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데 국내모회사와 해외자회사는 특수관계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에 관한 규정은 특례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전문위원 말씀 주신 것, 100페이지 ‘다만’에 지적된 부분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금산입의 특례를 규정할 경우에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뒤에도 좀 나옵시다라는 앞으로 생기는 부분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22년 말 이전에 있던 것에 대해서 한정해서 해 주겠다 하는 제도를 들고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지의 법률 때문에 자회사 방식으로 징수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굉장히 누적된 손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청산이나 이런 부분을 못 함에 따라서 이걸 손금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두 번째, 윤영석 의원님 안의 용역 제공에 따른 대가와 대여금이 그 실질이 유사한 측면이 있다 하는 부분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용역대가 부분을 굳이 따로 적어야 될 거냐 하는 데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대여금 부분을 설명할 때 이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처리하는 여러 가지 방식을 제안 주셨는데, 정부는 대손으로, 손금으로 바로 터는 방식하고 제각하는 방식,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금융기관으로 따지면 일종의 부실채권입니다. 그러니까 부실채권에 대해서 일단 대손충당금을 쌓게 하고 그게 대손이 나면 거기서 정리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이 채권의 성격으로 봐서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간과 관련해서는,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세수감이 제법 큼니다. 그래서 이걸 5년 상각을 하게 되면, 한 해 세수감 효과 등등을 감안할 때 한 10년 정도로 분할해서 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정부 입장, 정부안을 그런 생각으로 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에서 이 대여금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은 누가 판단을 하지요? 누가 판단을 하나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정부안에 따르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은 결국 현재 5년 이상 돈을 못 받고 있다는 객관적인 사실과 마지막에는 또 회계법인의 확인 등등까지 거칠 예정입니다. 객관적인 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와……

○소위원장 류성걸 그래서 못 받고 있는 게 적극적으로 받을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받고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 하는 척하면서 못 받고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아예 안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물론 아까 부실채권이라고 해서 대손충당금을 쌓을 수도 있는데 이게 자의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포함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안을 제안하신 분들이 다 여기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실까요? 윤영석·조해진·진선미 위원님 순서대로 하실까요?

아니면 조해진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지요.

○조해진 위원 방금 존경하는 위원장님 질의 사항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지금 생각이 떠오르는 게, 채권 회수 불능 판단을 하는 데는 몇 가지 근거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현지법인의 사업실적, 수주 상황 또 수익, 수입 상태 이런 것도 판단할 수 있고 자본잠식 상태 유무 그것도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하고, 또 현지 국가들이 지금까지는 청산이……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 중의 하나가 사실상 청산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현지 국가들에 청산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가지고 청산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도 문제인데, 일부 국가에서는 청산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행정적인 진행은 전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청산 제도가 마련돼 있는 국가 같은 경우에는 현지법인이 청산 신청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보면 회수 가능한지 불능인지 또 이게 진정한 건지 부진정한 건지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정부안은 대손충당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그런 경우에는 아직 채권이 살아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이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예, 그렇습니다.

○조해진 위원 법적으로는 살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회수 불능인 상황인데, 그 채권이 살아

있다고 하면 계속 이자는 계산이 되고 대여금 청구권도 살아 있다는 걸로 되고 그런데 실제로 회수는 불가능한 상황이고, 그러면 그렇게 접근하면 문제 해결하는 데 좀 충분하지 못하지 않을까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그것만 좀 설명드리면,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려해서 충분히 해결은 되지만 그런 문제점을 최소화하고자 저희들이 정부안을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해진 위원 절충적으로?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예.

어쨌든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받기 힘들다라는 것은 객관적인 요건으로 회수기일이 5년이 지났다, 회사가 자본잠식 상태다, 돈이 없다는 게 명백하게 대차대조표로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걸 회계법인의 확인이나 외부감사까지 받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정말 이 기업이 노력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일단 하고, 그다음에는 그렇다고 해 가지고 완전히 이 채권을 소멸시켜 주지는 않고 여전히 살아 있는 상태에서 일단은 사실 소멸시키는 것과 동일한 손금에 산입시켜 주고, 그런데 손금에 산입시켜 줬더라도 채권은 여전히 남아 있으니까 다음에 혹시 이 기업이 다시 살아난다든지 아니면 어쨌든 여러 가지 경우에 다시 그것과 상계를 시킬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손금산입 효과는 100% 동일하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자가 계속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차피 이자가 발생하는 부분은, 결국 이자는 익금에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여금은 그냥 채권이지만 이자는 수익이지 않습니까? 수익이 돼서 매년 이자가 발생해서 또 수익이 발생하고, 그런데 그 부분을 다시 또 손금으로 빼 주기 때문에 그 이자 부분은 계속 발생하더라도 수익과 비용이 그해 그해에 똑같은 금액이 서로 상계가 돼 가지고 그냥 계속 쌓여 있는 충당금의 크기만 커지는 거지, 법인한테는 완전히 소각시켜 주거나 계속 이자가 쌓여 가지고 충당금의 크기가 크게 해 주나 실질적인 효과는 똑같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이자는 대손금으로 완전히 소각을 시켜 주면 어쨌든 상대방 기업한테는 법적으로는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진출해 있는 기업들이 갑자기 몇백억,

몇천억의 채무이익이 발생해 가지고 자본잠식 상태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그 나라에서 세금을 내라라고 할 위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충당금 방식이 가장 적정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조해진 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게 좀 궁금한 부분인데 그 국가의 제도를 확인해 가지고 실제로 법인세 부과가 어느 정도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그건 확인이 안 되나요? 그냥 단순 추정으로 우리가 해야 되나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이걸 적용받을 수 있는 기업이 몇 개나 있는지 완벽하게 조사를 하려면 결국은 해외건설협회를 통해서 저희들 안을 주고 걸려 있는 기업들을 전수조사를 하고 회계법인을 통해서 그 나라들의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과세 가능성을 다 조사해야 되는데 중요한 몇 개 나라는 조사는 할 수 있겠지만 전수조사를 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을 거고요.

그리고 좀 죄송한 말씀이기는 하지만 저희들 안으로도 충분히, 어쨌든 굉장히 원칙에…… 위원장님 당연히 생각하시겠지만 전문위원도 지적했듯이 이게 기본적인 조세체계의 큰 틀에서는 분명히 예외적인 제도입니다. 예외적인 제도에서 그나마 그래도 가장 부작용이 작고 세수 감소가 작은 방법을 저희들이 찾은 건데 그걸 해외의 전수조사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좀 더 문제의 소지가 클 가능성이 있는, 의원님들이 제기하신 좋은 안에도 불구하고 그 안으로 따라갈 특별한 실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해진 위원** 전수조사까지는 안 하더라도 예를 들면 사우디라든가 우크라이나라든가 대표적인 몇 나라가 현실적으로 문제일 테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그런데 그 부분을 차치하더라도, 만약 그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어쨌든 저희들은 정부안이 대원칙에서 좀 덜 벗어난, 문제가 덜한 법안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진선미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진선미 위원** 예.

아마 이 사안이 굉장히 오래된 거지요. 그래서 이미 전문위원님께서 앞에 정리를 해 주셨던 것처럼 그 대표적인 사례를 언급해 주셨는데 그런 상황들이 벌써 한 10년쯤 진행이 돼서……

그러니까 실제로 회수 불가능한 여부를 판단하

는 것 자체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요. 이것을 적용할 때 그런 걸 다 심사하는 거잖아요, 자료도 내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 논쟁이 됐던 거고, 특혜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기업이 특정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규모도 어느 정도는 커야 해외에 진출해서 건설도 할 거니까요. 그래서 특혜로 보이지 않고 또 악용될 수 있는 여지를 최소화하는 것 이게 늘 고민이어서 저희가 법안을 만들 때도 거기에 되게 집중했던 건데요.

그래도 정부 쪽에서 조금 긍정적으로 시각을 변환하고 또 그것에 맞춰서 정부안을 냈다는 것이 저는 조금의 진전이라고 보여서 우리 안을 막 강요 내지는 계속 이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 논의할 부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10년을 하고, 5년을 하고……

그러니까 몇 가지들은 조금 더 세밀하게 전문위원님 쪽하고 저희 의원실들 쪽하고 정비를 해서 수정안을 만들어 보면 어떤가 이런 제안을 해 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윤영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영석 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지금 에너지 등 자원 확보 상황이 상당히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자원개발사업자도 이 대상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이 법안 발의한 취지고요.

그다음에 채권 범위에 용역대가를 포함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조금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 용역채권이 대여금하고 유사한 성격도 있지만 좀 다른 측면이 있거든요. 용역채권 대부분이 지금 인건비 관련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해외자회사가 현지에서 경영활동으로 발생한 채권채무 성격이 짝기 때문에 조금 구체적으로 용역대가에 대한 부분을 규정할 필요도 있다 하는 취지에서 제가 이걸 발의한 건데 잘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그것 좀 설명을 드릴까요?

**○소위원장 류성걸** 예, 설명하십시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해외자원개발사업자하고 용역대가 부분은 윤 위원님이 제기하신 취지, 현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어쨌든 일반적으로 해외자원개발의 경우에는 보증이나 융자 방식으로 자회사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구상채권이 라는 것이 굉장히 문제가 돼서 저희들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해외자원개발과 관련해서는 구상채권에 있어서 일부…… 저희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구상채권에 대한, 보증에 대한 아주 강한 세법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과거에 문어발식 확장을 억제하자는 차원에서 보증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이익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보증, 구상채권에 대해서는 좀 선진국 수준으로 일반적인 규정을 적용하자 해서 보완을 한 적이 있었어요.

두 번째, 그래서 해외자원개발사업자까지…… 건설사업자처럼 중동에 나가 있는 분들하고 다르게 실질적으로 아주 큰 문제가 없는데 여기까지 확장하는 것은 저희들은 신중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용역대가의 경우에도, 대여금이나 미수이자나 용역대거나 큰 틀에서 보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다만 대여금의 경우에는 저희 현행 세법 체계상 어떻게 움직일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계속 끌고 가는 수밖에 없는데 용역대가의 경우에는 어쨌든 그게 용역이나 상품의 대가로서 받는 채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현행 세법상으로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역보험공사나 이런 관련 법에 의해서 회수 불가능이라고 인정을 받으면 그걸 손비로 댈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방법을 이용하면 되지, 여기 예외에다가 또 그걸 확장하는 것까지는 좀 신중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이 부분은 세 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고, 이게 사실은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가 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또 투자를 할 때 투자국의 법제라든지 관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충분히 검토를 했을 거예요.

또 이걸 전부 다 해 줄 게 아니라 일부를 손금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대손충당금은 어차피 쌓아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쌓았다 하더라도 손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중에 또 일부를 해서 한다면지 하여튼 여러 가지 방식이,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

은 아까 진선미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대안을 추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조해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해진 위원** 존경하는 윤영석 위원님 말씀하신 용역채권 같은 경우에 지금 그런 문제가 있다면 시행령에 위임해 가지고, 정부가 그때그때 상황을 판단해서 시행령을 통해서 반영하든지 안하든지 그렇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지금 시행령 자체에 있습니다. 용역채권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절차와 요건이 있습니다. 기존 세법을 가지고 해결하면 된다는 게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조해진 위원** 정부가 판단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시행령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아니요, 지금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조해진 위원** 용역채권이 들어와 있어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이미 기존 세법에 있습니다.

**○조해진 위원** 용역채권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아니, 이번 세법 개정안 말고……

**○조해진 위원** 아니요, 시행령에 그게 대상으로 들어와 있는 겁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예.

**○소위원장 류성걸**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4시 4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회)

**○소위원장 류성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다음 항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자료 102쪽입니다.

14번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하는 류성걸 의원님과 정부안이 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2건의 개정안은 기업이 전통시장 안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기본한도 외에 추가로 10%의 손금산입 한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류성걸 의원님은 24년 말까지고 정부안은 25년 말까지입니다.

참고로 현재 문화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20%를 추가로 손금산입을 하고 있습니다.

105쪽입니다.

전통시장에서의 소비를 촉진하려는 것으로서 전통시장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세제상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저희들이 소비·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이번에 법안에 담았고요. 적용기한과 관련해서, 류성걸 의원님 안이 24년 12월 말 그리고 정부안은 25년 12월 말입니다.

유사한 조치로서 문화접대비에 대해서 25년 말까지 지금 한시적으로 하고 있어서 이 기한을 맞추어서 저희들이 정부안을 제출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유동수 위원 넘어가시지요.

○소위원장 류성걸 의견 없으시면 정부안으로 해서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106쪽, 15번 국가전략기술 대상 분야를 추가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등과 관련한 10건의 의원발의 법률안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4쪽입니다.

12건의 개정안은 각각 항목별로 일곱 가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는 그 표를 정리해 놓았습니다.

116쪽입니다. 각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토지와 건축물을 추가하고자 하는 정일영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은 사업용 유·무형자산으로 규정하되 토지와 건축물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예외 없이 인정되지 않으나 건축물의 경우에 물류업의 창고, 관광진흥법상 숙박시설 등의 건물, 기계·장치 등 설비에 필수적이고 전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

니다.

하지만 토지와 건축물은 제조시설을 지을 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이며 초기 시설 투자에 해당하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117쪽입니다.

다만 국가전략기술 제도의 도입 취지 및 지나친 세수 감소 등을 감안할 때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기술이 아닌 토지·건축물을 적용 대상으로 추가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에 따르면 토지를 추가함에 따라서 법인세는 24년에 2495억 원 등 연평균 2495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계한 바 있습니다.

다음 118쪽, 새로운 세액공제율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친환경자동차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사업화시설에 대한 공제율을 추가하고자 하는 양기대 의원님과 홍영표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자동차생산시설에 대한 별도의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하면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수도권 소재 친환경자동차 사업화시설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양기대 의원님은 30% 세액공제율을 신설하고, 홍영표 의원님 안은 대·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 세액공제율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다만 별도의 개별시설을 규정하는 것은 통합투자세액공제의 도입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고 정부가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서 개정안의 취지가 일부 반영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는 무관하게 세액공제가 적용되도록 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위한 제도 도입의 취지에 부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친환경자동차의 사업화시설을 신설·증설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하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는 기존 자동차 사업장을 친환경적 자동차로 전환하는 경

우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친환경버스 제조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공제율을 추가하고자 하는 김영선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최근 국내 버스보다 중국산 전기버스의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전기버스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상향 등 관련 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120쪽입니다.

최근 3년간 신규 등록된 전기승합자동차 현황을 보면 중국 제작 자동차는 20년 352대에서 22년 873대로 증가해서 점유율이 35%에서 42%로 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이에 개정안은 친환경버스 제조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국가전략기술과 유사한 40%의 세액공제율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현행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는 기술 유형에 따라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로 차등 지원하고 있으므로 특정 기술에 한정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것은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친환경버스 제조기술에 대한 상향된 세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신성장·원천기술이나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는 방안이 체계상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22쪽, 항공안전투자 사업화시설에 대한 박상혁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2019년 항공교통사업자가 항공 안전의 증진을 위해서 안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지출 또는 투자를 얼마나 하였는지 세부내역을 공시하도록 하는 항공안전투자 공시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2년간의 시범공시기간을 거쳐서 23년 7월 20일 처음 공시되었는데 22년도 안전투자 규모가 21년 대비 39.6% 증가한 4조 2387억 원으로 확인돼서 항공산업계의 자발적인 안전투자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쪽, 개정안은 항공안전투자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이에 대해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투자한 경우에 대해서도 조세감면 배제 대상의 예외를 인정하려는 것으로서 항공안전투자 공시제도와 함께 항공안전투자에 대한 자발적 노력을 유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시설별 차등을 두지 않고 포괄적·일관적인 지원을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개편하는 방향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항공안전의 범위가 항공기 및 부품, 항공기 운항 및 공항시설 등 항공사의 투자행위 중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어서 이에 따른 세수 감소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셋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에 대해서 항공업에 대해서만 예외를 적용할 경우에 타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지방기업의 경우 5%p의 추가공제를 하는 구자근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에 따른 지방기업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기준보다 5%p 상향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을 꾀하려는 입법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는 지역별이 아닌 기술별 차등지원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둘째, 현재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지방기업에 차등적으로 공제율을 상향하는 것이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쪽 다, 국가전략기술에 새로운 분야를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로봇과 원자력 분야를 추가하고자 하는 구자근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되어 있는 로봇과 원자력을 국가전략기술로 법률에 직접 규정해서 국내 로봇 및 원자력 산업의 투자 및 전환을 촉진하고 산업의 진흥과 고용 창출을 도모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로봇 산업은 매출액 기준으로 2019년 5조 3350억 원에서 21년 5조 6083억 원으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글로벌 로봇 산업이 서비스 로봇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여전히 제조 로봇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제조 로봇은 전체 로봇 매출액의 5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27쪽입니다.

다음으로 원자력 산업을 보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에너지 공급망의 불확실성 증가, 기후변화에 따른 저탄소 에너지에 대한 요구 확대로 전 세계적으로 원전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전기술 선도국들은 미래 원전시장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소형모듈원자로 등 차세대 원전기술 확보에 세계 주요 국가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 정부도 23년부터 6년간 약 27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혁신형 SMR 표준설계를 위한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며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하나로 차세대 원자력을 포함시켜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8쪽, 인공지능 분야를 추가하고자 하는 유의동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신성장·원전기술로 지정되어 있는 인공지능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여 인공지능 분야의 민간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겠습니다.

다음 쪽, 주요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GDP 대비 AI 투자액이 저조하고 AI 분야에 대한 투자 비중이 낮은 상황이므로 민간 기업의 AI 분야 연구개발 및 교육 투자 증가를 유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3번 바이오산업을 추가하고자 하는 정일영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백신을 포함한 바이오를 국가전략기술로 법률에 직접 규정해서 국내 바이오 산업의 투자 및 전환을 촉진하고 산업의 진흥과 고용 창출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국내 바이오의약품 시장 규모는 21년 7조 111억 원으로 20년 대비 112%가 증가하는 등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8월 시행령 개정으로 바이오의약품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131쪽, 4번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추가하자는 이정문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서 올해 9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132쪽, 또한 조특법 통합투자세액공제에서는 7개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있으나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12개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부처별 기준이 상이해서 합리적인 세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33쪽, 이에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을 조특법에서 규정하는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추가하려는 것으로서,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국민경제 발전을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134쪽,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소수의 기술 및 시설에 집중 지원한다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의 도입 취지와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국가전략기술’이라는 용어를 선제적으로 도입하였다 하더라도 과학기술을 담당하는 소관 위원회에서 제정한 법률에서 국가전략기술이라는 분야가 도입된 이상 세제 지원에 있어서도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법체계적 정합성에도 부합하고 향후 일관된 국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재부는 조특법과 국가전략기술법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은 제·개정의 취지와 기술 분야, 지원 대상, 제공혜택 및 적용요건 등이 모두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해서 통합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136쪽 라 번,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의 환급 및 제삼자 양도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김상훈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현행법에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지원 방식으로는 투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한 산업에 대한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법인세 세액공제는 이익이 발생해야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첨단산업의 경우 초기 대규모 투자를 해도 실제 이익이 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려서 적기에 세액공제를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투자세액공제를 온전히 적용받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 쪽, 반면 글로벌 경기침체 상황에서 각국은 법인세 세액공제 외에 기업의 투자에 대해 현금으로 돌려주는 직접환급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제정하면서 세액공제의 직접환급과 미사용 공제액의 양도를 도입하여 투자활성화를 위한 유인책을 마

련한 바 있습니다.

IRA에서는 정부기관 및 비영리법인에게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공제액의 직접환급과 미사용 공제액의 양도를 일반기업에 일부 허용하도록 국세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직접환급은 3개의 세액공제를 대상으로 하고 미사용 공제액의 양도는 6개의 세액공제를 대상으로 허용되는데 미사용 공제액의 양도는 직접환급이 허용되지 않는 세액공제 부분 또는 직접환급의 신청기간이 경과해서 직접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 다른 기업으로부터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쪽, 캐나다 역시 23년도 예산안에서 청정전기투자세액공제, 청정기술제조투자세액공제, 청정수소투자세액공제 등을 제안하면서 이에 대해서 15%를 환급 가능하도록 규정한 바 있습니다.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대한 직접환급 및 양도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서 해당 분야의 투자를 촉진하고 확보된 재원을 통해 기술·인력·시설 등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하겠습니다.

다음 쪽, 현행법에서는 세액공제의 양도와 관련한 입법례는 없지만 환급과 유사한 구조의 근로장려금 제도와 자녀장려금 제도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 관련해서, 세액공제의 환급 및 양도 제도는 세부담 형평성, 재정 확보 측면에서도 도입된 최저한세 제도를 배척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 투자 촉진의 인센티브로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그다음에 수도권 외에 공장을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정책적 차원에서 최저한세 적용의 예외가 일부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연도에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최대 10년간에 걸쳐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140쪽, 또한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환급 및 양도 제도는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법인세 감소와 환급·공제 규모 증가로 인한 재정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미국 IRA와 캐나다의 연방예산안에서 규정한

직접환급 제도는 친환경 산업 제조역량 확보를 위해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서 현행 국가전략기술 7개 분야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과도한 것은 아닌지 정책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쪽 마 번,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김상훈 의원님과 이정문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24년 말로 규정되어 있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율의 적용기한을 26년 말까지 2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24년에 이루어질 조세특례 심층평가를 거쳐서 적용기한의 연장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바 번,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구자근 의원님과 양기대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올해 말까지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26년 말 또는 28년 말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2쪽입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23년의 불투명한 투자 전망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한시 적용을 결정한 것으로서 정책효과 및 세수 감소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도입되었던 임시투자세액공제에서도 상시적으로 제도가 연장됨으로써 기업 투자에 대한 단순한 보조금으로 인식되어 투자 유인 효과가 떨어지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적용시기가 재연장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될 경우에 투자를 앞당길 유인이 위축되고 정책신뢰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 144쪽, 마지막으로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이정문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기재부·산업부·과기부가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법률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 내용 및 운영 주체를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현행 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신성장·원천기술이나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와 관련 시설 인정 여부 등은 기재부와 산업통상부장관이 공동으로 운영하여 심의하고 있습니다. 과기부가 국가전략기술 지원체계에서 소외돼서 법률에서 공동으로 심의

위원회를 운영함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만 기재부는 현재 과기부도 당연직 위원 자격으로 심의회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현행 체계하에서도 국가전략기술이나 신성장·원천기술 및 사업화시설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 과기부가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입법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분량도 많고 또 여러 가지가 같이 논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먼저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내용이 많아서 그냥 검토의견 순서 항목대로 간단간단하게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토지 및 건물을 추가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시설투자, 그러니까 소위 투자세액공제를 하면서 토지와 건물을 안 넣는 것이 일관된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유지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액공제를 신설 부분과 관련해서, 친환경자동차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사업화시설에 대한 공제를 추가 부분인데, 특히 여기 관련해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대한 부분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자는 부분인데 이것은 지방균형발전 이런 측면까지 감안해서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시켰다는 점을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친환경버스 제조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공제를 추가하는 부분은 검토의견에서 나왔습니다만 특정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를 만드는 것 자체는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안전투자 사업화시설과 관련해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좀 해 달라 하는 건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부분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항공안전투자와 관련해서는, 이게 기본적으로 항공사들이 법에 따라서 해야 될 투자인데 이 부분까지 우리가 세제 지원을, 이렇게 별도로 세액공제까지 혜택을 줘야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조금 조심스러운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기업의 경우 5% 추가공제 하자는 부분은, 지금 현재 통합투자세액공제 자체가 기술을 기준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다시 지방과 차이를 두는 것은 좀 그런 것 같고요.

다만 저희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아니다 이런 정도만 있는 건데 또 지방기업에 대해서 추가하자는 부분은 체계를 너무 복잡하게 한다는 전문위원의 의견과 같이합니다.

그리고 국가전략기술에 새로운 분야를 추가하자, 로봇·원자력 분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또 바이오, 인공지능 그리고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추가하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뒷부분부터 말씀드리면, 과기부의 법률 중에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세법상 지원하고 있는 국가전략기술보다는 범위가 좀 넓습니다.

사실 이것을 맞춰서 가는 것이 혼란도 적고 하는 방향에는 저희들도 동의를, 기본적으로 공감은 합니다만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법률의 경우는 예산이라든지 규제를 푼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육성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조금 더 앞서가는 부분이 있고, 세제상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이다 보니까 세제 부분은 그 기술들 중에서 정말로 국가전략기술로서 정부가 세제의 대폭적인 지원까지를 통해서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점검하면서 확대하는 게 필요하더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부분에 부분부분 늘려 달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지금 계속적으로 세제상 지원이 되는 국가전략기술 대상을 늘려 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으로 출발을 했다가 지금은 미래형 이동수단 그리고 수소, 바이오의약품 이렇게 단계적으로 계속 저희들이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구하시는 부분들은, 이게 선도적인 기술이고 앞으로 커 나갈 산업이기는 한데 우리가 과연 이게 한국의 전략산업으로, 전략기술로 육성할 정도, 진짜 의미가 있고 육성할 정도의 기술 수준에 왔느냐 또는 그 정도 지원의 가치가 있느냐 하는 부분들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의 환급 및 제삼자 양도 제도 도입인데 검토의견에도 있었습니다만 미국, 캐나다, 심지어는 EU까지

지금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 유치를 위해 가지고 과감한 환급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로서도 사실 이런 경쟁에서 뭔가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이 제도도 사실 고민은 좀 해 봐야 되는데 우리 재정 여건상으로 대규모 금액을 환급해 주는 것까지 하기에는 지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 하는 점도, 저희들이 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삼자 양도도 아마 그것 연계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은 검토의견에도 좀 있습니다만 효과가 어떨지 하는 부분도 조금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1년간 한시적으로 하는 이유가 사실 내년에 할 것을 최대한 올해 당겨서 하라는 취지가 있는데 연장을 할지 말지에 대한 판단도, 하여튼 최대한 올해 이 제도를 통한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시점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들 정부의 기본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길 분량도 많고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홍영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영표 위원 상당히 방대한 내용인데요.

저는 전체적으로, 앞으로 국가의 미래경쟁력을 위해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 중의 하나가 투자세액공제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참 아쉬운 게 작년에도 우리가 조세·재정 소위를 할 때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어요.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것과 민주당 다수의 위원들은 이런 투자세액공제 같은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자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결론적으로 보면 저는 그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투자를 유도하고 그걸 통해서 미래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고용도 창출하는 이런 방향이 맞지 인심 쓰듯이 법인세 그냥 나누어 주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몇 가지 타당하지만 우리가 지금 재정 여력이 없다 이거 아십니까? 법인세 감면해 주는 거 그거만 가지고 이 투자세액공제 적용해도 효과는 훨씬 달랐을 거라고 저는 봐요. 하여튼 그런 아쉬움을 제가 지적하면서……

저는 우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시설투자에 대해서 우리가 그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지 않

습니까?

그런데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친환경자동차로 전환을 하고 있어요. 저도 이번에 중국에 갔더니, 중국의 지금 전기차 수준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몇 년 전에 갔던 것하고 또 다르게……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친환경차에서의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 어떤 경쟁력을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도 기존 내연기관 차량의 공장들을 빨리 이렇게 전환해 가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수도권에서는, 제 지역구에는 한국GM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게 1950년대에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지금까지 거의 한 70~80년을 그 지역에서 자동차 생산의 전문기관, 공장으로서 해 왔고……

그런데 내연기관차는 지금 계속 축소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게 수도권에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 경기도 광명 소하리에 있는 기아공장이라든지 수도권 대상에 들어가는 공장을 전기차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들이 많지는 않아요. 한두 군데인데.

저도 수도권 과밀억제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어떤 공장을 새로 신설한다든가 새로 짓는다든지 이런 건 반대합니다. 그러나 기존에 수십 년 동안 그 자리에서 자동차 공장을 유지해 왔던 회사들이 친환경차로 전환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당연히 지역경제라든지 지역의 고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시행령도 바꾸고 했는데, 제가 한국GM의 관계자들을 만나 보면 정부가 이런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자기네들도 이걸 전기차로 전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조항에 걸려서, 그러니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해당하다 보니까 어떠한 혜택도 줄 수 없는 겁니다, 현재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존에 있는 공장을, 전기차로 전환한다는 게 인원도 많이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고 또 공장의 시설도 사실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축소된 형태로 갈 텐데 그거는 적어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좀 예외 규정을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런 공장이 있던 지역들이 요즘 구도심이 되고 그런 데가 더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그 규정 때문에 어렵다 그러는데 그거는 정부가 다시 판단을 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그 시설을 그대로 전기차로 전환할 때에 한해서, 그거는 좀 예외 규정을 뒤서 허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소위원장 류성걸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되는 사항이고요. 사실 우리 제도가 조금 복잡하고 여러 가지 세법의 기본 구조가 좀 복잡하다 보니까 일어나는 일인데 다른 위원님들한테 참고로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홍영표 위원님은 그 공장이 50년 이상 되었다,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그 전에 대우가 하던 공장이니까. 똑같은 차를 생산하고 있는, 그래서 GM이 인수해서 하고 있는 건 100% 사실이고요.

그런데 세법상의 구조로는 이게 단순한, 대우를 그냥 GM이 주식을 사서 계속 운영을 했다면 지금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주주만 바뀐 것에 불과하고, 그리고 회사 이름을 바꿨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그런데 또 여러 가지 경영적인 판단에 의해서 주식을 사는 방식을 안 하고 자산을 인수하는 방식, 그러면 노동자도 당연히 상당 부분 같이 쫓아가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세법적으로는, 큰 틀에서는 그 부분도 좀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형식적으로는 당시에 대우라는 회사는 사라지고 대우가 쓰던 공장을 GM이 다시 인수를 해서 GM이라는 회사가 그 이후에 새롭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 위치에서. 그래서 우리 세법적으로는 GM이라는 부품공장이 만들어진 지가 50년이 된 게 아니고 이제 한 20년, 십몇 년 이렇게밖에 안 된 거거든요. 거기서 우리 세법의 규정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역사적인 배경, 취지 그거하고 충돌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되는 영역이고요.

하여튼 거기서 문제는 어쨌든 이 수도권 배제와 관련해서 과연 전기차 하나만 풀어 주는 게 합리적인 것인가, 또 그러면 전기차 외에 배터리로 전환하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백신으로 전환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또 국가전략을 전체 풀어 주는 게 맞는 것인가 아니면 신성장까지 풀어 줘야 되나 아니면 전체 투자에 다

풀어 줘야 되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고 답이 잘 안 나오는 부분이 어 가지고, 하여튼 저희들도 계속 고민이 많은 영역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자, 이렇게 합시다.

이게 양이 많기 때문에 아까 전문위원이 설명한 그 순서 또 차관님이 답변하신 그 내용대로 하고 또 홍영표 위원님 말씀은, 그거는 또 홍영표 의원님이 직접 발의하셨기 때문에 더 논의를 하도록 하면서, 먼저 국가전략사업화시설의 공제 범위 중에서 토지와 건축물을 포함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관련되는 사항부터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토지·건물 관련되는 사항은 아까 차관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이렇게 포함을 한다면 우리 전체 틀이 어긋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거기에 대해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혜영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개별적인 사안만 가지고 얘기를 하려면 이 전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 언제 합니까?

○소위원장 류성걸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홍영표 의원님이 발의하셨기 때문에 홍영표 위원님 말씀을 하고…… 전체적인 것도 해야 되지요.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정리를 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안했던 내용에 대한 것을 할 건가 말 건가 이야기지 전체적인 사항에 대한 거는 뭐 나중에 이야기를 또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일단……

○장혜영 위원 저는 전반적으로 다 반대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번 얘기해야 될까요?

○소위원장 류성걸 그러면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시고 개별적인 건 이야기를 안 하시든지요.

○장혜영 위원 예.

○소위원장 류성걸 그러면 전반적인 이야기 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장혜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혜영 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차라리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하나하나 반대를 하면 더 길어질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일정 부분 정부하고 생각을 같이하는데요. 이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에 있어서는 확장을 얘기할 때가 아니라 평가가 먼저 필요한 시기다라고 생각을 함

니다.

우선 차관님, 이 국가전략기술 임시투자세액공제 포함해서 올해분만으로도 세금 감면 추정액이 3조 정도 되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장혜영 위원 예, 맞아요.

그런데 올해 삼성 설비투자가 증가했나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위원님 아시다시피 투자라는 게 꼭 하나의 요인만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장혜영 위원 증가하지 않았지요. 예년 대비 감소하는 것으로 가트너에서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어떤가요? 설비투자 증가했습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SK는 연초부터 올해는 좀 증가하기 힘들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장혜영 위원 예, 맞습니다. SK 입장에서 발표를 아예 했었지요. 예년에 비해서 투자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말씀처럼 반도체 설비투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세액 감면, 거의 3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의 세액 감면이 있지만 그보다는 경기 사이클, 그보다 외부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라라고 지금의 상황을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행의 설비투자 추이를 봐도 올해 1분기·3분기 다 동기 대비 마이너스가 나왔고요.

그런데 올해 국가전략기술 심의 신청 현황을 보면 반도체가 97.4%를 차지하고요 이차전지가 2.5%, 나머지 다 합쳐도 0.1% 수준입니다. 말하자면 여기에 어떤 업종을 어떻게 집어넣느냐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 업종에서의 설비투자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한 또 다른 방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 투자를 확대하고 다변화하기보다는 이미 기업이 하겠다고 결정한 투자에 대해서 세금을 감면해 줌으로써 어떻게 보면 시장경제를 더 활성화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시장 지배자들의 우위를 굳혀 주는 방식으로 이 제도가 이용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타이밍은 국가전략기술 대상 분야를 추가하거나 세액공제를 연장하거나 이런 종류의 조치들을 부가하기보다는 현행 세제 혜택들을 냉정하게 좀 평가를 해야 되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다른 외국의 국가전략 투자세액공제

혹은 보조금 지급과 비교를 할 거라면 우리는 오히려 세금, 세제 혜택만 주지 그에 대한 사회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당장 미국의 IRA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사회적인 의무들을 부과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거액의 세액 감면을 하는 만큼 어떤 사회적 의무를 부과할 것인지를 정부 측에서도 고민하셔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아까 방식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건건이 하는 것보다도 위원님들께서 관심 있는 분야 또는 전반적인 것 이렇게 해서 논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해진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조해진 위원 저도 존경하는 장혜영 위원님처럼 큰 틀의 고민을 좀 해 봐야 된다는 게, 국가전략기술을 지정하고 그에 대해서 특별한 지원을 하는 거는 일종의 선택과 집중 전략,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기술 발전이라든지 또 경제성장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시너지 효과가 높은 기술을 전략적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특별한 지원을 하는 제도로 우리가 도입한 건데 예를 들면 이명박 정부 때 녹색성장 사업도 그랬고 문재인 정부 때 뉴딜 사업도 그랬고 국가가 국가정책적으로 딱 선정을 해서 선택과 집중, 지원을 해 주겠다고 되면 거기에 이래저래 참여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 가지고 녹색성장인데 탄소성장이 들어오고 뉴딜에 올드딜이 들어오고 이런 일이 벌어져 가지고 제도의 취지가 상당히 희석되는, 그래서 나눠 먹기처럼 가 버린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제출된 법안들도 보면 일단 기술이 아닌데, 기술과 관련된 여타 파생 투자인데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기술은 기술이지만 전략기술이라고 하기에는, 국가의 선택과 집중의 대상이 될 그런 전략기술이라고 하기는 어려운데 들어오는 것 또 이것도 저것도 아니지만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고 지원의 대상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다 나름대로 이유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소요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라서.

그런 개별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는 고민은 하되 이 제도 속의 체계…… 체계라고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제도의 정체성이 희석돼 버리면 곤란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기술에 국한하고 그리고 기술이지만 국가전략기술로 규정되지 않은 것은 일단 거기에 들어오는 게이트를 먼저 통과하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그다음에 기술이 아닌 여타 부대 투자지만 기술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예를 들면 좀 전에 토지라든가 건물 이런 것도 그 부분에서 투자 비중이 크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그러면 거기에 포함시킬 것인가를 또 제도적으로 정비를 하고 해야지 이렇게 그냥 막 우후죽순으로 하게 되면 이 제도 자체의 취지가 몰각되고 효과가 안 날 가능성이 있어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일단 좀 심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또 다른 위원님들.

고용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용진 위원 차관님께서 우리 국가전략기술의 연혁을 죽 얘기를 해 주신 게 있잖아요. 2021년에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이 3개 분야였다가 2월에 디스플레이 되고 4월 법 개정하면서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이렇게 해서 법률로 상향했잖아요. 저는 법률로 상향한 이유가 국가전략기술이라는 개념 자체에 있다고 봐요.

그래서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4월에 이렇게 법률로 입법 상향한 것은 이런 기술에 대해서 내용을 예측할 수 있게 하고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게 하고 또 포괄위임 금지에 부합하게 한 이런 취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여기 쪽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법률에다 개정을 해 달라고 올라온 것이고.

그런데 바이오의약품 산업은 8월에 시행령하고 시행규칙 개정으로 넣은 거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예.

○고용진 위원 그것은 왜 법률로 안 합니까? 그렇게 우리가 쪽 해 온 연혁도 있고 그 의미나 여러 가지 연혁으로 볼 때 법률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입법 취지하고 연혁은 위원님이 워낙 기재위에서 오래 저희들 기재부하고 같이 논의하셔서 정확하게 잘 정리를 해 주신 거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거기에서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시에 법률로 6개를 올리고 그러고 나서, 당시에 약간의 논쟁은 있었지만 어쨌든 시

행령으로 마지막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달라고 저희들은 부탁을 드렸었고 국회에서 그렇게 최종 결정을 해 주셨고요.

그러면 그 큰 틀의 취지는 저희들이 계속 지켜나가되 뭔가 상황 변화, 여러 가지 대응, 필요성 이런 것에 따라서는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 자제하고 법률로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겠지만 어쨌든 저희들은 그런 판단을 한 겁니다.

○고용진 위원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러 긴급하게 해야 될 필요도 있고 그렇기는 한데 이게 세제 지원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예.

○고용진 위원 그리고 타 산업들이 거기에 형평성 문제 제기…… 왜 거기는 해 주고 우리는 안 해 주냐, 이게 쪽 들어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세제 지원의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평가 분석도 해야 되고 또 여기에 진입하게 될 때 예측도 충분히 하고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되니까 저는 가능하면, 구체적인 기술을 정하는 것은 시행령으로 하시되 이런 분야를 정하는 것은 입법으로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더군다나 제가 예정처 분석 보니까 세수감이 1000억이 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은 국회에서 논의를 해 주셔라 이런 얘기 드립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유념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양경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경숙 위원 세제실장님이 뭘 착각하시든지 아니면 잘못 알고 계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요.

그때 법안 논의할 때 제가 이 법안을 발의했었습니다, 바이오 쪽도 추가하자. 그런데 법안에서 그것은 수용을 하지 않았어요, 정부가. 그래서 바이오 쪽이 빠졌던 겁니다. 시행령으로 하겠다 그런 얘기 없었고요. 법안이 발의됐는데도 정부가 수용하지 않았어요. 아까 답변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예.

○소위원장 류성걸 관련된 사항 중에 저도 한 가지 여쭙볼게요.

사실 지난번에 국가전략기술을 당초에 논의할 때 이게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법에다가 규정

을 하고, 국가전략기술은 법으로 개정을 하고 하자 이런 취지로 했다가 최종적으로는 정부에서 그래도 시행령에, 대통령령에 일부 위임을 해 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했는데 사실 법제화가 됐으면 기본은 법을 고쳐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아까 몇 분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행정부에서 분명히 입법 취지의, 개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한 그런 정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 법이 먼저 되었습니다만 국가전략기술이라는 게 우리 법뿐만 아니라 산자위에 제출되고 통과되었던 그 법에 의해서 국가전략기술이 지금 두 개가 있습니다.

물론 아까 정부에서는 외부에서 이야기하는 국가전략기술이 세제 지원을 받으려면 당연히 우리 세법에 규정이 되어야 된다,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의 추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국가전략기술이라 하면 당연히 지원이 똑같아야 되는데 지금 신성장 동력 사업하고 또 일반기술하고 일반시설들하고 이렇게 전부 다 이원화되는 부분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분명히 잘 인식을 하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뒤에 다른 내용보다도, 우리 기재위원장입니다만 김상훈 의원이 제안한 이 사항들은 사실은 우리 세제의 기본 틀을 바꾸는 정도의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일부 하고 있다는 하지만 그것은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했던 그런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해서, 지금 환급도 그렇지만 세액공제 관련되어서 이것을 재산권으로 보는지 뭘로 보는지 모르지만 제삼자에 양도하는 식의 이야기가 있다면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양도와 관련되면서 만일에 그게 재산권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면 개인간에 사고팔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세법에다 넣는 부분에 대한 것을 정부 차원에서, 다른 나라에도 지금 그런 추세가 있는 부분이니까 정부 차원에서 용역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형태든지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관련되는 사항들은 또

위원님들이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개별 사항은 제가 아까 이야기드린 대로 지금 현재 7개가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심의위원회 관련된 사항 그 부분도……

지금 현재 심의위원회가 내부적으로 따로 있지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소위원장 류성걸 그래서 그 부분 관련되어 갖고 말씀을 하시고, 추가적으로 논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마지막은 제가 정부 입장을 말씀 못 드렸는데요.

현재도 심의회가 있고 그 심의회에 기재부·산업부·과기부를 넣어 달라는 제안인데 지금 심의회는 기재부하고 산업부가 공동위원장이고요, 과기부도 정규 멤버로 들어오게 운영을 하고 있어서 실제 운영은 법안에 제안된 것과 같이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이 사항은 계속해서……

○홍영표 위원 하나만 짧게 좀……

○소위원장 류성걸 홍영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영표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실장께서 한국GM은 지금 회사가 주인이 바뀌어서 그 정체성 때문에 지원하기 어렵다고 그러는데 나는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간에 주인이 몇 번 바뀌었어요. 예를 들면 쌍용자동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주인 때문에 이 기준을 세워서 적용하기 어렵다, 이것은 내가 납득하기 어려운데요. 외국회사니까 아니면 뭐 이래서 못 한다는 게 무슨 뜻으로 말씀하신 건지……

○기획재정부제실장 정정훈 그 뜻이 아니요. 저희들 현재 세법이 현실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취지를 제가 100% 공감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세법과 실제 적용상에 좀 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수도권 내에 조그만 가게가 하나 있다, 미장원이 하나 있다 그러면 그 미장원이 예를 들어서 법인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랬을 때 그 미장원의 주인이 계속 바뀔 겁니다. 바뀔 때 여의도미장원의 주인이 계속 주주가 바뀌면 그러면 그냥 계속 여의도미장원인 겁니다. 거기서 주주가 바뀌면서 그 사람이 여의도미장원으로 이름을 지었다가 그다음에는 한국미장원 그다음에 국회

미장원, 아무리 이름이 바뀌어도 법인은 하나의 인격이 있는 거니까 그 법인은 30년 된 법인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누군가 한 명이 ‘나 그 법인 마음에 안 들어. 역사가 마음에 안 들어’ 또는 마음에 안 들고와 전혀 관계없이 그냥 나는 뭔가 새로운 이유가 있어서 그냥 그 법인 해산시키고 거기 미장원에 있는 의자와 책상과 직원들을 일부는 고용하고 일부는 연결하고 일부 자산은 팔고 그렇게 사업장을 인수를 했다, 그래 가지고 똑같은 미장원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창업을 한 겁니다, 거기서. 그게 지금 우리 세법의 해석입니다, 원칙이고.

그것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저희들도 100% 공감하는 지원의 필요성하고 충돌이 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뽀족한 수를 못 찾아 가지고 고민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것 때문에 못 해 드리겠다, 하면 안 된다 그런 게 아니고요.

○홍영표 위원 그런데 너무 과도한 확대 해석이 고요.

제가 보면, 이것은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 공장을 친환경차로 전환할 때만 적용하자는 겁니다, 증설한다든가 이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딱 특징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친환경차를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세법상 법인의 어떤 정체성 문제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게 여전히 납득이 잘 안 돼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위원님, 이 부분은 다른 분들도 같이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다 아시겠지만 현행 제도가 수도권 규제가 들어오면서 법이, 그러니까 89년 이전에 사업을 개시했으면, 그러니까 친환경차로 바꾸든 어쨌든간에 대체투자는 기업 규모 관계없이 허용됩니다. 세제 지원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90년 이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는 그때는 수도권 규제가 들어온 이후에 투자를 한 것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체투자에 대해서 세제 지원을 합니다만 대기업에 대해서는 대체투자를 안 해 주는 것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세제실장이 얘기한 취지는, 그러면 지금 GM대우가 89년 이전에 사업 개시한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90년 이후에 사업을 개시한 거냐 이 해석에 있어서 그냥 주식

을 취득한 방식이었으면 세법상 기존 해석해 온 것으로 보면 89년 이전에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면 되는데 이것을 자산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가니까 지금까지 해석해 온 것으로 보면 인수할 당시에 사업을 개시한 게 되는 모양이 되니 현실과 그동안에 해석을 적용해 온 것과 괴리가 있어서 굉장히 고민스럽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홍영표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89년도에 수도권과밀억제 제도가 생겼으니까 그것을 이해를 하는데 하여튼 해석의 문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이것을 어떻게 의미를 받아들이고 해석할 것이냐의 문제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라 이 말이에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16번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자 하는 진선미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스포츠 대회를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서 그 비용의 10%를 세액공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8쪽입니다.

국내 이스포츠 산업 규모는 19년까지 매년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지만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20년부터 산업 규모가 축소되었고 21년도에도 전년 대비 12.9% 감소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게임단 예산이 606억 원으로 전체 산업 규모의 5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2년 기준 국내 이스포츠 종목은 전문종목 4개, 일반종목 10개, 시범종목 1개로 총 15개입니다.

150쪽입니다.

2021년 이스포츠 대회는 총 125개가 개최되어서 전년 대비 40개가 감소하였지만 전체 상금 규모는 190억으로 2020년 132억 원 대비 43.6%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스포츠 대회 운영비용은 국제대회, 국내대회 여부 등의 편차가 있지만 문체부가 주관하는 대통령배 이스포츠 대회와 한중일 이스포츠 대회는 각각 약 4억 3000만 원, 13억 원이 소요되었고 민간이 주최하는 전 세계적인 대회 중에는 100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51쪽입니다.

21년 종목사들이 방송·대회 제작 및 운영을 위해 투자한 금액은 526억 원이며 그 밖에 선수·게임단 192억 원, 인프라 21억 원 등 총 838억 원을 국내 이스포츠 산업에 투자하였지만 수익은 투자금액의 39% 수준인 329억 원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152쪽입니다.

이스포츠 산업은 유튜브 등 디지털플랫폼 산업과 연계되어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하고 21년 글로벌 이스포츠 산업 수익은 1조 5140억 원에 달하며 22년 아시안게임의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는 등 그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 고유의 이스포츠 종목을 육성하고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나 현재 정식종목으로 선정된 게임물 중에서 외국 기업의 게임물이 상당한 실정으로 국내기업 위주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둘째, 종목사는 대회를 개최하는 데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게 되며 이는 종목을 유지하기 위한 투자에 해당하므로 지속적인 대회를 개최하여 종목을 유지하고 이스포츠 산업을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이스포츠 대회는 해당 게임의 종목사가 홍보 등의 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세계 지원 시 개별 회사 제품의 홍보에 대한 세계 지원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둘째, 현재 대한체육회에 단체경기 비용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10% 한도로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있을 뿐 운영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이스포츠 대회 운영비용의 10%를 세액공제하는 것은 다른 체육 분야와 비교했을 때 과도한 측면이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대회 운영하는 비용은 기본적으로 손금으로 인정을 해서 비용으로 털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비용을 다시 세액공제를 하는 것은 상당한 이유가, 지원의 필요성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스포츠가 각광을 받고 있고 최근에 또 대회가 열려 가지고 관심도 많이 받고는 있지만 운영비용이라는 게 주로 홍보성 이런…… 운영기관들, 운영회사가

하는 건데 거기에 세액공제까지 지원을 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나 또는 다른 데하고의 차별을 뒤야 될 이유를 저희들은 찾지는 못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진선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진선미 위원 너무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가지고……

그런데 실제로 지금 이스포츠가 올림픽 대회에도 정식종목으로 채택이 된 상황이고 차관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월드컵 그게 시청자가 4억 명이래요. 그리고 광화문에 별도의 응원을 하게 만들었는데 거기에 5만 명 정도가 들어왔고.

페이커라는 그 친구가 10년 동안 정상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한 것은 다 게임 쪽에서 어렵게어렵게 추진해 왔던 거잖아요. 그런 결과가 누적이 돼서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고 그것이 대외적인 대한민국의 신인도도 높여지고.

그런데 이걸 단순히 어떤 회사에 대한 홍보다 이렇게 보는 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는 게 우리나라 기업이 만든 게임이 아니래요. 대부분이 외국 기업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그리고 선수단도 거의 14%인가가 해체되고, 실질적으로 이것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불규칙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터라서 이번에 이런 기회에 지원을 확대한다면 여러 가지로 긍정적인 효과가 날 것 같다 이런 취지로 저희가 한 거라서, 이 금액도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금액 대비 얻을 수 있는 효과는 훨씬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하나 여쭙보고 싶은 게요, 이 법안을, 제가 법 조문을 안 봐서 그런데 이 대상이 이스포츠 대회를 운영하는 기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맞으신가요?

○진선미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한 게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이 되더라도 이게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노하우나 축적된 이런 것들을 인정해 주자는 취지입니다.

그것 바꾸면 뭐가 가능성이 있나요? 그런 건 아니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제가 아는 지식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했던 운영 기업이 특정 기업인데 이게 아아……

○전문위원 김경호 미국 회사고요, 리그 오브 레전드는 원래 미국 회사였는데 중국이 인수를 했고요. 우리나라 것으로 하면, 운용사라고 하면 배틀그라운드 정도가 될 텐데, 그러니까 그 회사가 이 배틀그라운드 스포츠 대회를 운영한다고 하면 그 운용사에 대한 비용 세액공제 이렇게 되고 나머지 이 룰 같은 경우는 세액공제해 준다 하면 미국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할 때 그 비용이라서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거고 그럴 것 같습니다.

○진선미 위원 그러니까 월드컵 그것을 지원하자는 취지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조그맣게 계속 대회들을 유지하고 추진해 왔던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자는 취지입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다음, 배준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배준영 위원 차관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조금 이견이 있는 부분은, 특정 회사의 제품 홍보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보면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 자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개별 기업에서 운동부를 하는 게 홍보 차원에서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여기도 세액공제해 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생각이 있고.

또 하나는, 진선미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좀 일리가 있어서, 지금 이게 정식 종목으로 됐고 또 지원할 필요가 있고 또 우리나라가 이렇게 예지 있는 분야에서 계속 발전할 수 있다고 그러면 지원을 해도 나쁘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고, 유경준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대표발의를 하셨다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제가 아까 대상이 어디냐고 여쭙은 게, 지금 보시면 현재도 이스포츠 경기부를 운영하는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는 3년간 지원을 합니다. 기업이 스포츠부를 운영하고 거기에 소위 게이머들을 고용하고 채용하고 해 가지고,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으로 있는데 이 대회를 운영하는 기관까지 이렇게 세액공제를 해 줘야 되느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렇습니다.

○배준영 위원 말씀하신 취지는 저도 이해가 가

고요, 그러니까 여러 각도에서 지원을 한다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조해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해진 위원 전문위원님, 그 지원 대상은 둘다 그냥 기업인 거지요? 법인인 거지요?

○전문위원 김경호 예, 그렇습니다.

○조해진 위원 이스포츠 운동부를 운영하는 기업이 대상인데 차관님 말씀대로 지금은 일단 운영비용이 지원 대상이 되는 거고 지원항목이 되는 거고 3년 동안 10%, 그러니까 그동안에 대회를 했든 안 했든 관계없이 그냥 스포츠부를 운영하면 3년 동안 10% 이내로 지원해 준다는 건데 지금 개정 법안은 그 대회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지요?

○전문위원 김경호 예, 맞습니다. 운동부를 각 기업에서, 그 게임회사에서 선수들을 같이 채용하고 있으면서 그러다가 그 게임 갖고 전국대회를 한다고 하면 그 대회 개최 비용 그것에 대한 세액공제해 달라는 개정안입니다.

○조해진 위원 그러면 이게 이중으로, 이중이라기보다도 현행 지원은 그대로 유지되고 플러스 대회 운영 지원되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현행법에서는 이스포츠뿐만이 아니라 장애인 운동경기부하고 일반 운동경기부도 다 지원이 되는데 이것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만약에 큰 대회를 치를 경우에는 그 기업들은…… 그러면 일반 운동부하고 장애인 운동부 운영하는 기업들이 대회를 했을 때 거기는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겁니까?

○전문위원 김경호 그건 세제 지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해진 위원 아니요, 개정 법안에서.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개정 법안에 없습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개정안은 이스포츠만 되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아마 현실적인 차이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면 운동경기부를 가지고 있는, 특정 기업을 말하면 어떤 생명, 무슨 전자 이런 기업들이 직접 대회를 개최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수요가 적지 않나 싶고요.

그런데 이스포츠의 경우에는 운동선수부를 가지고 있는 회사, 예를 들면 어떤 통신사가 운동

선수부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운동선수부 유지에다가 대회 할 때 비용마저 도와 달라, 아니면 게임을 직접 만든 회사가 개최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나 게임 개최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 게임을 판을 키워야 되는데 거기다 내가 대회 한번 할 테니까 10% 세금을 빼 달라’라는 지원의 필요성이고.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게임의 중요성 또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 과급력을 생각하면 모든 세계 지원이 다 당위성과 필요성은 인정이 되겠지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스포츠 유지를 위한, 거기서 선수들을 고용하고 월급을 주고 훈련을 시키는 비용에 대해서는 그나마 지원을 해야 되지만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 선수들을 이용해 가지고 대회를 개최하거나 게임제작사가…… 아까 차관이 홍보라고 말씀드린 것은 게임제작사가 개최한 대회는 홍보 목적이 굉장히 크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운영의 목적이나 홍보의 목적 등등까지 다 포괄된 그런 대회 개최까지 과연 일반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한 것이냐, 정말 그게 급한 것이냐 그런 것에 대한……

○조해진 위원 효과 측면에서, 지원했을 때 대회 횟수를 더 늘려서, 더 자주 대회를 연다든지 대회 규모를 더 크게 해서 연다든지 하는 그런 효과에 대한 전망은 좀 보셨습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10% 깎아 주면 10%만큼 크게 할 수는 있겠지요.

○소위원장 류성걸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운동경기부에 관련되는 것은 비용으로 전부 다 하면서 세액공제를 해 주고 있고……

장혜영 위원님도 하실 말씀 있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장혜영 위원 그런데 사실 한국이 진짜 이스포츠 종주국이라는 하잖아요. 그리고 이번 월드컵은 정말 국제적으로 화제가 된 하나의 굉장히 큰 스포츠 이벤트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보도 같은 것을 보면 16~18일, 3일 동안 8만 1500명이 축제에 방문했다 이렇게 추산을 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올림픽이 가지고 오는 경제적인 효과, 월드컵이 가지고 오는 경제적인 효과 이런 것들이 국가경제에 어떻게 이바지하는지에 대해서는 분석을 하는데 이런 이스포츠 행사들이, 이스포츠 대회들이 어떤 경제적인 과급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진지한 분석을 한 적이 있나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의문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 월드컵을 벌써 세 번째로 주최한 나라기도 하니까 단순히 육성 차원에서의 지원이라기보다 이런 행사를 국제적으로 안정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국가, 경제적인 과급력까지를 고려한 세액공제, 반드시 세액공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국가적인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전문위원 김경호 참고로 아까 일반 운동경기부 같은 경우는 축구, 배구 이런 게 아니라 비인기 종목의 운동경기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조해진 위원 시행령에서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전문위원 김경호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이 내용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운영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간사님하고 간사 간 협의를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조세소위에 관련된 사항은 법률안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고 또 행정부에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11월 30일까지 이 법안에 대해서 의결이 되지 않으면 국회의장님께서 세입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을 해서 본회의에 바로 부의를 하신다면 작년과 같은 그런 결과가 있을 겁니다.

물론 다른 차원에서 보면 지출예산에 관련된 사항, 이건 세입예산이니깐 그렇습니다만 지출예산에 관련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진행이 우리 조세소위원회와는 조금 다른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안이다 보니까 이런 내용은 간사 간 협의를 계속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11월 30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오늘 4권을 마쳐야 그 속도에 맞는 진도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유동수 위원 아니, 6시인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소위원장 류성걸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시간에 관련된 사항보다도 진도에

관련된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동수 위원** 그러면 토요일에 나와서 하시든지요.

위원장님, 생각해 보세요. 10시부터 6시까지 몇 시간을 잡아 놓고 오늘 또 10시 반에 회의 시작하시고 6시까지 잡아 놓고,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저는 또 내일 회의도 진행해야 되는 데, 재정소위를.

○**소위원장 류성걸**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회의중지)

(18시53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류성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정부 측에서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정 관련해서 유동수 간사님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조금 소요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금요일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조세소위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계획대로 하되 계획에 조금의 변동이 있을 것 같으면 간사 간 협의를 거쳐서 추후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까지는 7권까지, 필요하다면 8권까지 일독을 다 하는 것으로 간사 간 합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금요일 오전 10시에 소위를 열어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과 또 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직원 그리고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4분 산회)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기획재정부

제 1 차 관

세 제 실 장

조세총괄정책관

소득법인세정책관

재산소비세정책관

국제조세정책관

관 세 정 책 관

|   |   |   |
|---|---|---|
| 김 | 병 | 환 |
| 정 | 정 | 훈 |
| 박 | 금 | 철 |
| 조 | 만 | 희 |
| 이 | 용 | 주 |
| 정 | 병 | 식 |
| 이 | 형 | 철 |

## ○출석 위원(13인)

강 준 현    고 용 진    류 성 걸    배 준 영

양 경 숙    유 동 수    윤 영 석    정 태 호

조 해 진    주 호 영    장 해 영    진 선 미

홍 영 표

## ○출석 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 경 호